

주제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고용분야』
201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2010. 10.

주 의

1. 이 보고서는 통계청에서 수행한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
용역사업 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통계청이 소유하며, 통계청은 정책상
필요시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0 정기통계품질진단(고용분야)”
연구용역 과제의 최종 연구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0년 10월 19일

(재)한국통계진흥원장 이동명

연구진

책 임 연 구 원 옥 우 석 (인천대학교 교수)

연 구 원 전 병 유 (한신대학교 교수)
 오 민 홍 (동아대학교 교수)

연 구 보 조 원 이 준 협 (현대경제연구원)
 임 부 루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차 례

제 1 장 개요	1
제 1 절 주제 및 연구의 범위	1
제 2 절 진단 목적 및 필요성	4
제 3 절 연구방향	10
제 2 장 주제 영역 체계	13
제 1 절 통계작성체계	13
1. 고용 통계의 정책적 의미	13
2. 통계작성 조직기반	20
제 2 절 주제 분야의 해외 사례	28
1. 고용통계의 국제기준	28
2. 외국의 통계작성체계	42
제 3 장 통계현황 및 역할 분석	67
제 1 절 고용분야 진단대상 통계의 일반적 현황 및 작성개요	67
1. 고용동향 조사	67
2. 고용구조 조사	77
제 2 절 국제기준과의 비교	86
1. 적용범위	86
2. 국제기구 자료 제공 및 미제공 자료의 분석	88

제 3 절 통계의 역할, 정책과의 연계성 및 한계	94
1. 고용통계의 역할	94
2. 정책과의 연계성 및 통계 간 관계	100
제 3 절 통계별 용어와 항목의 비교	126
1. 통계별 용어의 비교	126
2. 조사 항목의 비교	132
제 4 장 발전방향	138
제 1 절 진단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138
1. 충족성	138
2. 효율성	146
3. 이용편의성	151
4. 신뢰성	155
제 2 절 고용분야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전전략	158
1. 통계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고용분야 통계시스템 발전전략	158
2. 통계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고용분야 통계시스템 발전전략	174
3. 협력 및 통계관리방안	181
제 3 절 고용분야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	182
부록	185
참고문헌	188

표 차례

[표 1.1] 고용분야 진단대상 통계현황	2
[표 2.1] 기관구분별 작성 현황(2010.10.01 현재)	21
[표 2.2] 통계부문별 작성 현황(2010.10.01 현재)	22
[표 2.3] 고용통계 작성기관별, 통계구분별 현황	23
[표 2.4] 고용분야 개별통계 현황(진단 대상 통계)	24
[표 2.5] ILO 노동통계 발간물 및 조사항목	38
[표 2.6] 캐나다 경제활동인구조사	46
[표 2.7] Eurostat 대상 국가	50
[표 2.8] 한국과 EU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변수정의	53
[표 2.9] 미국 노동통계국의 노동력 저활용 대체지표	54
[표 2.10] 청년층 대상 외국의 패널 조사	55
[표 2.11] 대졸자 대상 외국 조사	61
[표 2.12] 대학과 기술 프로그램의 9개 전공분야 및 코드	66
[표 3.1] 경제활동인구조사	68
[표 3.2] 지역별고용조사	70
[표 3.3]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고용동향 통계현황	71
[표 3.4] 여성관리자패널조사	72
[표 3.5] 이공계인력국내외유입및유출실태 조사	73
[표 3.6] 강원도취업여성실태조사	74
[표 3.7] 방송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	74
[표 3.8]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75
[표 3.9]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	76
[표 3.10]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77
[표 3.1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79
[표 3.12] 사업체노동실태현황	79
[표 3.13]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80
[표 3.14] 한국노동패널조사	81
[표 3.15]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83
[표 3.16] 청년패널조사	83
[표 3.17]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84

[표 3.18]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85
[표 3.19] 이공계인력 육성 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86
[표 3.20] 주요 지표의 조사 기준	87
[표 3.21] 주요 국가의 노동력 개념 비교	88
[표 3.22] OECD의 주요 고용 관련 조사 항목	88
[표 3.23] ILO의 주요 고용 관련 조사 항목	90
[표 3.24] 미국 OES와 한국의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비교	93
[표 3.25] 고용정책과의 관계에 따른 23개 진단 대상 통계의 분류	96
[표 3.26] 고용동향 및 구조 분석을 위한 고용통계	105
[표 3.27] 인력수급분석 및 전망을 위한 통계	108
[표 3.28] 국내 청년층 대상 조사 비교	114
[표 3.29] 가구조사와 사업체조사의 취업자 차이	127
[표 3.30] 종사상 지위에 대한 조사 방법의 차이	128
[표 3.31] 고용형태에 대한 조사 상의 정의	129
[표 3.32] 근무형태에 대한 대한 조사 상의 정의	130
[표 3.33] 주요 고용통계 조사항목의 비교	133
[표 3.34] 중앙 및 지방정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내용	135
[표 3.35] 인력수급관련 사업체조사들의 조사항목 비교	137
[표 4.1] 고용통계의 충족성	146
[표 4.2] KOSIS 통계별 메타정보 및 조사표 제공 유무 현황	152
[표 4.3] 통계별 통계자료 공표 여부 및 경로	153
[표 4.4] ILO "Decent Work" 지표	167
[표 4.5] UNECE "Quality of Work" 지표	168
[표 4.6] 고용분야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	184

그림 차례

[그림 1.1] 고용분야 진단 방향	12
[그림 2.1] 고용정책의 흐름	17
[그림 2.2] 진단대상통계 작성조직기반	25
[그림 2.3] 고용 통계의 제도 - 수요와 공급, 프로세스	27
[그림 3.1] 이공계인력정책을 위한 고용통계의 구조	112
[그림 3.2] 청년고용관련 통계의 구조	117
[그림 3.3] 여성고용정책관련 고용통계의 구조	120
[그림 3.4] 비정규직관련 고용통계의 구조	123
[그림 3.5] 기타 근로취약계층 고용정책	125
[그림 3.6] 표준직업분류와 고용직업분류에서 직능유형(skill-type)과 직능수준 (skill-level)	131
[그림 4.1] 고용분야 통계시스템 로드맵의 작성	183

제 1 장 개요

제 1 절 주제 및 연구의 범위

이 핵심주제 통계진단 보고서의 주제는 고용통계다. 고용분야 주제별 진단은 경제활동인구조사 등과 같은 고용통계를 대상으로 개별통계의 정확성이나 효율성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총괄하는 고용통계 전반에 대한 비교 분석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상 통계들의 주제별 진단과는 구분된다. 다시 말하면 통계별 품질진단은 통계가 작성되고 공표되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과정인 반면, 주제별 진단은 개별 통계의 품질 향상을 기반으로 국가통계의 종합·상호 역할 조정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통계들을 그룹화 하여 주제 영역별로 분류하여 실시하는 진단이다. 이는 주제 영역에 대한 발전 방향은 하나의 통계를 검토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주제 영역별 통계를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계청, 2010).

전체 인구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자신과 가족의 생활비를 임금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완전고용의 달성은 경제성장, 물가안정 및 국제수지균형과 더불어 국가경제의 주요 정책목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정한 고용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관련정책을 강구하는데 필요한 통계자료를 필요로 한다. 고용통계는 한 나라의 노동력 규모와 취업자 및 실업자 실태를 파악하게 해 주는 매우 중요한 국가통계의 하나이다. 고용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통계는 고용현황 및 구조, 임금, 노사관계, 산업안전, 직업훈련, 생산성 등 다양한 통계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이번의 진단에서는 고용현황 및 구조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다.

2010년 주제별 고용분야 진단은 총 23개의 통계를 포함하고 있다 (표 1.1). 이들 23개 통계는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여성과학기술

인력활용실태조사,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청년패널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1) 이공계인력국내외유입및유출실태조사,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강원도취업여성실태조사, 경기도시군별고용조사, 경상남도창원시경제활동인구조사, 대구경북여성인적자원개발실태조사,2) 군산시경제활동인구조사, 전주시경제활동인구조사,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 방송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3) 등을 포함한다.

[표 1.1] 고용분야 진단대상 통계현황

분야	기관구분	통계명칭	기관명칭	작성방법	주기
고용구조 (9종)	중앙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조사	1년
	기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1년
	중앙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고용노동부	가공	1년
	중앙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지식경제부	조사	1년
	기타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1년
	중앙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교육과학기술부	조사	1년
	중앙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교육과학기술부	조사	3년
	기타	청년패널조사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1년
	기타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1년
고용동향 (14종)	지방	경기도시군별고용조사	경기도	조사	분기
	중앙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조사	월
	협회	정보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조사	1년
	중앙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고용노동부	보고	월
	기타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	한국고용정보원	보고	월
	중앙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조사	1년
	지방	경상남도창원시경제활동인구조사	경상남도 창원시	조사	분기
	지방	군산시경제활동인구조사	전라북도 군산시	조사	반기
	지방	전주시경제활동인구조사	전라북도 전주시	조사	분기
	지방	강원도취업여성실태조사	강원도	조사	4년
	지방	대구경북여성인적자원개발실태조사	경상북도	조사	3년
	중앙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여성가족부	조사	2년
	중앙	이공계인력국내외유입및유출실태조사	교육과학기술부	조사	3년
	중앙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조사	1년

1) 2010년부터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작성기관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변경되었다.

2) 대구경북여성인적자원개발실태조사는 2010년 4월 23일자로 중지되었다.

3) 방송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는 2010년 7월 7일자로 정보통신부문인력실태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들 고용통계는 작성 방법에 따라 조사통계, 보고통계 및 가공통계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조사통계는 수요에 의해 직접 조사를 통해 작성하는 통계를 의미한다. 보고통계는 행정이나 정책의 필요에 의하여 법에서 제도화하여 관련 승인, 허가 및 신고의 결과로 작성된다. 마지막으로 가공통계는 기존의 통계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표나 지수를 작성하여 공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고용통계는 제공 통계의 성격에 따라 크게 고용동향에 대한 통계와 고용구조에 대한 통계로 분류할 수 있다. 진단 대상 통계 중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및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 등 2종의 통계가 보고통계에,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이 가공통계에 속하며 나머지 20종의 통계는 모두 조사통계이다.

작성기관별로 볼 때 고용통계는 매우 다양한 기관에 의해 작성되고 있다. 진단 대상 총 23개 통계의 작성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11종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3종, 고용노동부가 4종, 여성가족부가 1종, 지식경제부가 1종, 통계청이 2종을 작성하고 있다. 지방자치체가 작성하고 있는 총계는 5종으로 강원도, 경기도, 군산시, 전주시, 창원시가 각 1종씩 작성하고 있다.(중지된 1종 제외) 기타기관으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5종을 작성하고 있으며, 그리고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및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1종을 생산하고 있다.

진단대상 고용분야 23개 통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고용구조통계 9종과 고용동향통계 14종으로 나눌 수 있다. 고용동향통계는 전국 혹은 지역 단위에서 노동력 규모, 취업자 및 실업자의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이며, 경기도시군별고용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방송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경상남도창원시경제활동인구조사, 군산시경제활동인구조사, 전주시경제활동인구조사, 강원도취업여성실태조

사, 대구경북여성인적자원개발실태조사,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이공계인력국내외유입및유출실태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고용동향통계가 노동력의 규모에 초점을 둔다면 근로자 특성별 일자리의 특성 및 수급과 관련해서는 고용구조통계가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청년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등이 고용구조통계에 포함된다.

제 2 절 진단 목적 및 필요성

우리가 보통 통계라고 하면, 그것은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에 대하여 숫자로 계량화된 정보' 또는 '조사를 통하여 획득된 수량 데이터'를 가리킨다. 통계는 사회 현상 또는 자연현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국가의 제도적 틀의 설정과 유지, 사회구성원의 합의 도출 및 이에 근거한 일관된 국가 정책의 기획·실천을 포함하는 국가운영의 하부구조(infrastructure)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통계는 경제사회구조가 복잡·다양해지고, 정책결정과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감에 따라 그 역할이 점차로 증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수요가 있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통계를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 또는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라고 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생활의 불확실성에 직면하여 통계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기초 자료로서 국가의 비전 제시,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정보임과 동시에 기업 및 개인의 전략수립과 의사결정에 있어 기초 정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개발은 현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이루어질 때 적절한 방향성과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으며, 정책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그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가 확보될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통계는 국가체계의 유지와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통계는 그 자체가 갖는 가치중립성·객관성·계량성의 기본적인 속성으로 인해 사회현상에 대한 인식기능, 계획수립기능, 사후평가기능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통계는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국가조직이나 개인 및 기업에 있어서 불가결한 정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통계의 역할 증대와 함께 통계의 전반적 품질에 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품질은 경영학에서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 또는 속성'라고 간단히 정의된다. 통계의 좋은 품질이란 얼마 전 까지도 흔히들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를 의미하였는데, 이것은 '품질의 전통적 의미가 단지 오래 쓰고, 질기고, 튼튼한 것 등 품질의 물리적·객관적 특성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제품의 좋고 나쁜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온 것처럼 전통적 의미의 품질 개념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 산업사회의 발전과 함께 경영자들이 점차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전략적 품질의 개념에 관심을 갖게 됨으로써 품질의 주관적 특성들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통계의 품질이란 단순히 통계의 정확성, 신속성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가 얼마나 이용자에게 이용하기 적합하게 작성 및 제공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통계품질을 결정하는 차원(dimension)에 따라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측정하고 각 차원의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실시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통계품질의 품질차원에는 관련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시의성/정시성(timeless/punctuality), 비교성(comparability), 일관성(coherence), 접근성/명확성(accessibility and clarity) 등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 중 통계의 현실반영 정도를 나타내는 정확

성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통계가 작성되는 모든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 이 외의 요소들도 최근 고객 지향적 정부행정이 강조되는 추세에 따라 모두 중요시 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계품질관리(Quality Management for Statistics)의 개념을 정리·요약하여 보면 “통계 이용자들에게 사용상의 최대 만족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한 통계를 획득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는 정부·기업·개인 등 모든 국가구성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한 기본정보로 이용되므로 오히려 역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부정확하거나 관찰대상인 현사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통계 이용자의 입장에서 요구되는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마침내는 통계작성기관은 물론 통계 자체에 대한 공적 신뢰도에 치명상을 주게 된다.

고용통계도 위에서 언급한 통계 일반의 품질진단 필요성에 대한 예외가 될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나라 국가통계시스템의 통계 대분류에 나오는 고용·임금, 물가·가계소비, 보건·사회·복지, 환경, 농림·수산, 광공업·에너지, 건설·주택·토지, 교통·정보통신, 도소매·서비스, 경기·기업경영, 국민계정·지역계정, 재정·금융, 무역·외환·국제수지, 교육·문화·과학 통계에 대해서도 핵심주제 통계분석이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총인구 중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노동시장의 변화와 경기변동의 영향 등으로 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경제에 있어 적정한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실업을 줄이는 일은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고용통계는 이러한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 나라의 노동력 규모와 취업자 및 실업자 실태를 파악하게 해주는 중요한 국가통계 중의 하나이다. 특히, 일자리의 절대적 양의 측면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고 인력부족이나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정도가 고용문제의 핵심의제였던 고도 성장기에 비하여 성장 동력의 약화와 함께 고용탄력성도 감소하는 경향이 발생하

면서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고용 통계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통계는 국제적 기준에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점에서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고용통계는 그 작성기관이 매우 다양하여 통계생산에서의 유사성 및 중복성이 존재하며, 작성기관들 사이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취약하여 조사결과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조사결과의 다차원적 활용에도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는 통계 활용 및 생산 비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국가통계의 부적확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통계가 생산되는 경우 해당 통계의 수집목적, 수집방법 및 개념상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발표하거나 개별 이용자들에게 의해 이용됨으로써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⁴⁾

둘째, 우리나라의 고용관련 공식통계들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체감하는 바와 괴리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며, 이데 따른 공식통계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속한 세계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경제에 심대한 구조변화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고용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동안 비중이 컸던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의 고용통계가 반(半)실업 또는 부분 실업 상태에 놓인 근로자 계층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고용통계조사의 고용정책 수립에 대한 기여도가 미흡하고 전체 국민과 통계 이용자들 사이에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통계청에서는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경제적 사유의 추가취업희망자 등을 바탕으로 체감할 수 있는 유사실업지표를 작성·공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부족하여 각종 언론 등에서 유사실업자를 자의적으로 정의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4) 예를 들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고용노동부)의 경우 전자는 가구조사이고 후자는 사업체조사이므로 양 조사에서 조사방법 상의 차이로 인해 월평균임금의 차이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데 이러한 차이의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없이 조사결과가 차이가 난다는 점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성장잠재력 약화, 저출산 및 고령화, 청년실업의 증가, 비정규직 및 자영업의 구조조정 등 2000년대 들어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속에서 효과적인 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새로운 고용통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고용의 주요 문제는 경제성장 잠재력의 감소로 인한 고용창출능력의 저하를 제외한다면, 한국의 노동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일자리의 양보다는 일자리의 질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는 고용정책의 방향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향으로 이동하여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노동통계는 주로 고용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위주로 작성되고 있으며, 고용의 지속성이나 안정성 등 “일자리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른 한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심화됨에 따라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한 취약계층 관련 통계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반면 현행 통계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아직까지는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를 들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특정계층에 대한 심도 있는 데이터 생산이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고용노동부의 통계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통계가 생산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넷째, 4대 사회보험이 구축되고 외환위기 이후 고용보험 적용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관련 행정자료가 DB 형태로 구축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도 정책 수요에 맞는 다양한 행정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자료의 활용 및 자료 공유는 응답자의 응답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사통계의 비용을 감소시키고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만 현실에서는 행정자료의 체계적인 구축과 활용은 저조한 형편이다. 현행 고용 통계의 조사항목을 늘리거나 세부계층별 통계적 대표성을 높임으로써 현재 고용통계가 지닌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것도 증가하는 고용

관련 정책 수요에 대한 통계적 대응의 하나의 방안이지만, 이 방법은 많은 준비와 재원을 필요로 하며 통계 생산의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은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통계의 즉시성을 제고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공무원연금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상 전체 임금노동자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들 데이터베이스는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듯 고용노동부 및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 시스템으로부터 부가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행정자료 이용의 중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행정업무 과정에서 축적되는 방대한 분량의 행정자료를 통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가공할 경우, 매우 유용한 행정통계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관련 통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용통계와 행정자료 사이의 대체가능성을 검토하여 통계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 고용통계와 행정자료 간의 연계 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통계수요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국제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자료(통계자료)와 비교하거나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선진국의 예를 벤치마킹하거나 올바른 정책적 교훈을 얻는 데 활용하여야 할 필요성 증대하고 있다. 고용통계는 국가마다 역사적 배경이나 사회·경제적 맥락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고용분야의 통계가 작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ILO, OECD, EUROSTAT 등 국제기구들은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의 고용통계는 일차적으로 우리나라 고용문제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생산되어야 하지만, 가능한 한 최대한 국제비교 가능성을 제고하여 통계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통계작성의 경험이 많은 국가의 통계를 벤치마킹하여 고용통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만드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제 3 절 연구방향

류제복·유정빈·김선웅(2003)과 통계청(2010) 등은 통계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이용자 적합성(Fitness for Users)”을 들고 있다. 이용자 적합성을 결정하는 요소(차원)들은 많이 있으나 관련성(Relevance), 정확성(Accuracy), 시의성/정시성(Timeliness/Punctuality), 비교성(Comparability), 일관성(Coherence) 및 접근성/명확성(Accessibility/Clarity) 등 6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차원)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6가지 요소는 개별적인 통계의 진단에는 매우 유용한 개념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특정한 분야의 통계시스템의 체계 속에서 해당 분야 통계의 포괄성, 일관성 및 효율성을 검토하는 것이 목적인 주제별 진단에서는 약간 수정된 기준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진단에서는 주제별 진단의 주요 요소를 크게 충족성, 효율성, 이용편의성 및 신뢰성의 네 가지로 설정하고 진단을 진행한다.

첫째, 충족성은 개별통계진단에서 관련성(Relevance)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관련성(Relevance)은 통계 이용자에게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 유용한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관련성이란 사회적으로 필요한 통계를 어느 정도 공급하고 있는가, 즉 사회적인 통계수요에 대하여 통계의 생산·공급이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통계정보를 충분히 공급할수록 통계의 관련성은 높아지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통계의 양적 충실도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용분야 통계의 진단에서 충족성의 문제는 해당 분야 통계의 정책과의 관련성 및 역할을 기초로 정책수요가 요구하는 통계들이 빠짐없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진단한다.

해외 선진국의 통계작성 사례나 국제기관의 수요 등을 우리나라의 통계작성실태와 비교하는 것도 우리나라 고용통계 시스템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국가마다 배경이나 환경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용분야의 통계가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작성되는 것은 아니며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국내 고용정책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국제기구나 통계작성의 경험이 많은 국가의 벤치마킹을 가미하여 고용통계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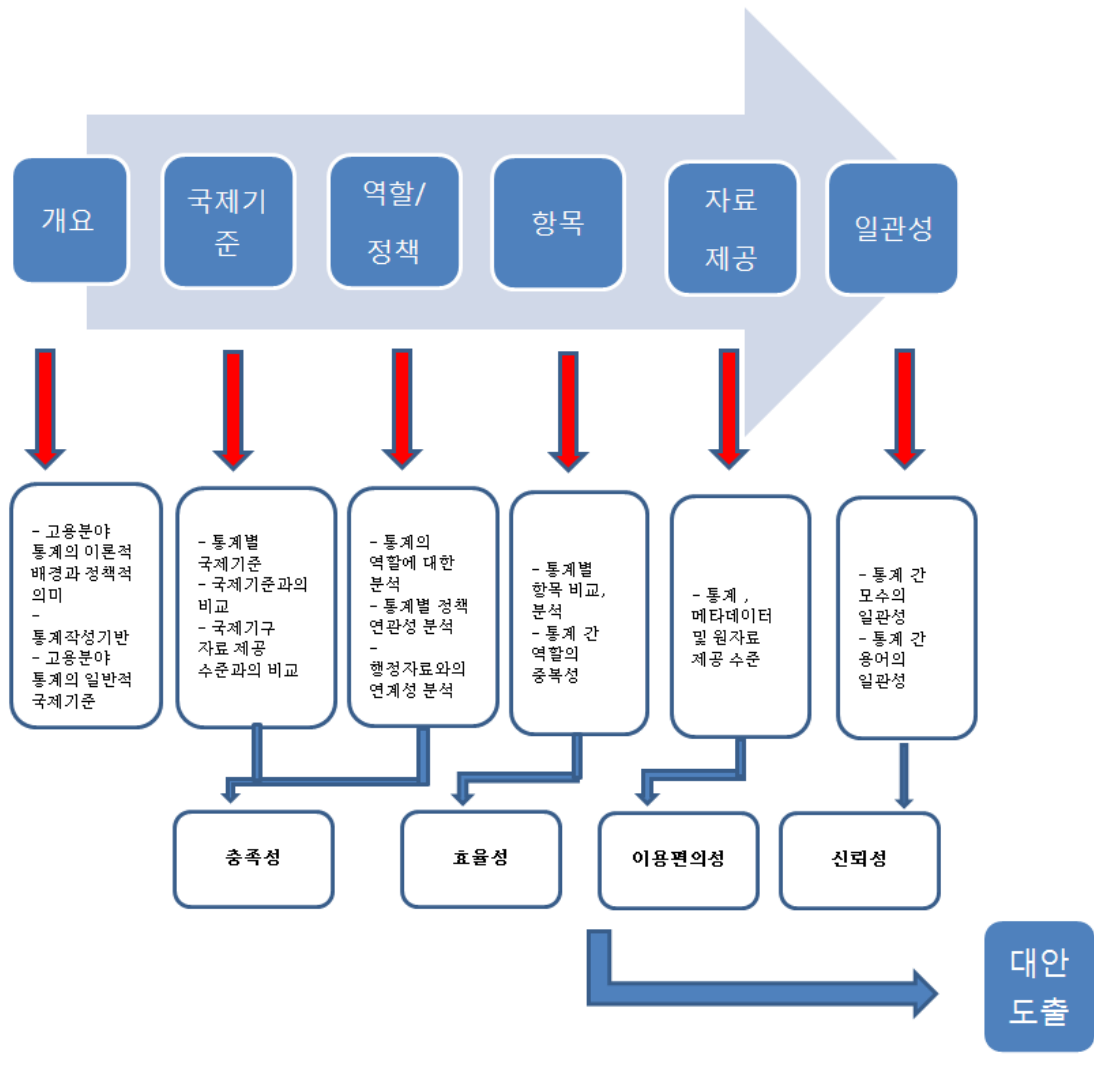
둘째, 효율성은 개별통계진단과 달리 해당 분야 다양한 통계들 사이의 역할과 조사내용 사이에 중복성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중복성이 개별 통계의 역할에 비추어볼 때 허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계 간 조정 및 통폐합을 통하여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동일한 통계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이 있다. 이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개별 통계의 정책과의 관련성 및 역할과 표본의 크기와 정시성(Timeliness) 사이에 존재하는 상충관계 등의 요소들이다.

셋째, 이용편의성은 개별통계진단에서 접근성/명확성(Accessibility/Clarity)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접근성은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통계자료의 DB화, 간행물 및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시, SMS 속보전송 등의 통계자료 제공, 검색기능 추가 등을 통하여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명확성(Clarify)은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이며,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 자료이용방법, 마이크로데이터 이용방법, 통계 이용상의 조언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자료 제공을 통하여 명확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신뢰성은 개별통계진단에서의 비교성(Comparability) 및 일관성(Coherence) 요소와 관련이 있다. 비교성(Comparability)은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통계자료가 동일한 개념, 분류, 측정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서로 비교가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일관성(Coherence)은 동일한 경제·사회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된 통계자료들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주제별

진단에서 신뢰성은 주제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통계들 사이의 모수의 일치 문제, 그리고 용어의 통일성 등 통계이용자들이 통계를 활용하고 이러한 활용이 대중들에게 받아들여짐에 있어 얼마나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통계들은 전체적인 통계시스템이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이다. 따라서 주제별 진단에서는 개별통계진단에서의 중요 요소로 집단의 참값과 표본의 추정값이 어느 정도 가까운가를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되는 정확성(Accuracy)에 대한 진단은 제외한다.

[그림 1.1] 고용분야 진단 방향



제 2 장 주제 영역 체계

제 1 절 통계작성체계

1. 고용 통계의 정책적 의미

가. 이론적 배경

고용이란 경제의 전반적인 동향이나 제도적 환경의 영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고용정책을 넓은 의미에서 정의하면 노동시장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생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교육 및 훈련, 자원 및 에너지, 국제 경제 환경, 물가 동향 등 고용정책과 관련되지 않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배무기(1981)는 고용정책을 “고용의 유지, 안정 및 확대는 물론, 실업자에 대한 생계의 보조, 실업자의 재취업 등에 관련되는 일련의 정책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며, 김수곤·이주호(1989)는 고용정책을 광의로 보면 완전고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시경제정책으로부터 시작하여 노동시장정책, 인력개발정책, 미시적 인력정책, 임금정책은 물론 노사관계 내지 노동복지에 이르는 광범한 문제들까지도 포함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렇듯 고용정책은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 산업, 기업, 교육, 복지 등의 분야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통계들은 직간접적으로 고용정책과 관련이 없을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진단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고용관련 국가승인통계들은 고용정책과 관련된 모든 통계들을 망라하는 것은 아니며, 고용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계들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용정책은 경제정책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물론 고용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경제성장이다. 그러나 1980년대 OECD 각국이 경험한 바와 같이,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성장이 반드시 고용의 증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잠재적인 경제성장 동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주어진 잠재성장률 하에서 마찰적 요인에 의한 실업을 최소화하고 실업이 발생할 경우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특정 근로자 집단이 '빈곤의 늪(poverty trap)'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노동시장에서의 격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rence)을 유지하는 것이 노동시장정책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고용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노동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거시경제 수준에서 생산과 성장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시키고, 그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노동시장이 형성되고 이들이 마찰비용을 최소화한 수준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 존재하는 사회·경제 제도상의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그 유동성과 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고용의 지역적, 직업적 패턴의 변화에 대하여 원활한 적응을 도모하게 해 준다.

둘째, 고용정책은 또한 장기적인 인력수급에 대한 예측을 통하여 경제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경제가 원활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지식을 갖춘 노동력이 순조롭게 공급되어야 한다. 고용정책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를 추정하고, 양성훈련, 재훈련 등의 훈련에 대한 수요를 파악해 내며 사양 산업에 대해서는 작업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적절한 인적자원의 개발을 지원한다.

셋째,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 고용정책은 다양한 실업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급작스런 고용의 파괴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을 완화함과 동시에 실업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경제적 혹은 제도적 요인으로 인하여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근로자 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응집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한다. 아울러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통하여 실업기간 중의 최소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실직기간을 단축시키고 재취업의 가능성을 제고한다.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고용이 본격적으로 사회적 쟁점의 주된 영역이 되기 시작하였다. 외환위기 이전 노동시장의 문제는 고용보다는 임금에 있었다. 노동시장에서 공식적인 실업률은 2%대를 나타내고 있어 구조적인 실업보다는 마찰적인 실업 정도만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에서 고용의 문제는 인력부족이나 인력수급불일치 정도로 한정되어 있었다. 사실상의 완전고용 상태였다. 오히려 문제는 부족한 노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있었다. 부족한 노동력은 여성으로 보완할 것인가 아니면 외국인노동자로 보완할 것인가가 논쟁이 되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고용과 일자리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노동시장의 문제들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일자리의 부족이나 실업으로 한정되지 않고, 성장과 고용, 고용과 빈곤, 고용과 교육, 비정규직, 인력수급 불균형, 청년실업, 여성고용, 고령화, 외국인노동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제 국민들의 관심은 단순히 성장이 아니라 고용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고용의 문제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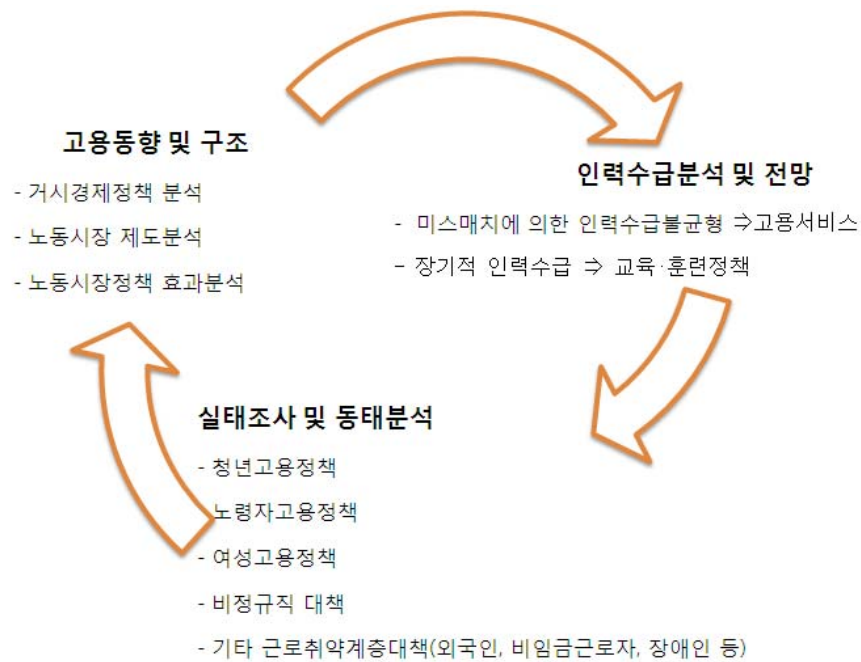
외환위기로 인한 기업 전략과 제도의 변화도 노동시장 변화를 야기한 중요한 원인이었지만, 고용의 문제를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게 만든 것은 경제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제 환경 등의 변화 그리고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등이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새로운 영역에서 새로운 형태의 고용이 나타나고 있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의 변화도

고용 구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중국의 성장으로 인한 기업의 해외이전이 일자리 변동을 가속화하였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도 세계 최저 출산율이 지속되면서 빠르게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관련 정책들도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고용정책도 외환위기 이전에는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노동시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외환위기 이전에 고용보험제도가 1995년에 도입되었지만,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이다. 또한 1998년에 대규모의 실업대책이 시행되었고, 이때의 경험들을 이어받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즉 고용정책들이 하나씩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실업과 고용의 문제를 일찍부터 경험한 OECD 주요 국가들의 정책들을 학습하여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일자리창출정책, 고용안정정책, 그리고 근로빈곤정책 등 매우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되었다. 당연히 관련 예산도 크게 확대되었다. 고용관련 정책과 예산이 크게 확대되고 다양해지면서, 고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동시장정책 특히 고용정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 노동통계는 구직자와 구인자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일자리와 경력 개발을 위한 그리고 다양한 경제활동을 위한 판단의 기준이 된다. 정확한 노동시장 정보는 경제 주체들의 합리적인 행동을 유도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개인, 가계, 기업, 산업 그리고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노동시장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림 2.1] 고용정책의 흐름



나. 정책적 의미

고용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좀 더 정확하고 정교한 통계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고용과 관련된 조사가 크게 확대되었다. 기존 노동 관련 통계 조사에 노동시장의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들이 추가되었으며, 특정 정책을 위한 부가조사나 실태조사가 많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고용 통계가 확대되었음에도, 이러한 고용통계들이 노동시장 참여 주체들과 정책 담당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였는지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첫째, 노동시장의 변화와 관련된 통계에 대한 정책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 통계가 확대되었음에도 고용통계는 여전히 부족하다.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대응해

야 하는 통계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빈곤, 자영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소멸, 인력수급, 지역고용통계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문제나 고용안정성, 수입과 복지혜택, 근로조건 등 고용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일자리 창출이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고용통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자영업에 대한 통계, 사회서비스 부문에 대한 통계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용정책이 국가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이전되는 세계적이고 현대적인 추세에 따라서 지역 수준의 고용 통계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지역 통계 수준은 매우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자기 나름대로 고용통계를 생산하고 있지만, 통계의 생산 방법이나 통계 지표가 신뢰성을 얻기에는 아직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고용통계가 많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그것이 효율적으로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과 관련한 많은 실태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패널조사도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의 고용통계들이 서로 중복되고 연계되지 못함으로써 고용통계 생산과 유통에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통계는 크게는 통계청과 고용노동부, 그리고 지자체와 기타 부처 등이 독자적 필요에 의해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조사 방법이나 대상에서 차이가 있고 동시에 유사성과 중복성의 문제도 가지고 있다. 중복된 조사로 인하여 응답자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통계 활용과 생산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

둘째, 고용통계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하거나 조사통계에 결합하여 사용함으로써 정책의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거나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 또한 세계적인 추세이다. 최근 4대보험이 추진되고 다양한 노동시장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행정자료가 많이 축적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고용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고용정책에서 선진적인 많은 국가들의 경우 정책의 집행과 정책의 평가에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행정자료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조사통계와 행정자료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조사통계와 행정자료가 서로 독립적으로 생산되는 과정에서 중복의 문제와 연계 부재의 문제도 등장하기 시작하고 있다.

셋째, 최근 고용정책에서는 국가 간 비교 지표들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실태와 성과를 국가 간에 정확히 비교함으로써 고용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률, 실업률과 같이 일반적 고용통계나 고용지표들은 ILO 권고안에 따라 다른 나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용통계는 ILO나 OECD의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추어가는 추세이다. OECD의 고용전망보고서(Employment Outlook)에서도 한국의 통계 수치들이 이제 거의 빠지지 않고 반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주요 OECD 국가들이 생산하고 있는 통계들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종종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LFS(유럽), CPS(미국)에서는 손실근로시간을 파악하는 문항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조사되지 않고 있다.

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경제주체들의 행동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동시장과 고용구조도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정확한 고용 실태에 대한 파악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고용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고용 통계에서 OECD 선진국에 크게 뒤쳐져 있지는 않지만, 경제성장이 빨랐고 외환위기라는 큰 변화를 단기간에 겪었으며 외국시장에의 개방의 정도가 매우 큰 만큼 노동시장에서 고용구조도 그만큼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고용 통계에 대한 정책수요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용통계에 대한 수요 확대가 실제로 고용 통계의 체계화와 기반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행 고용 통계가 제대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증대되는 고용정책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고용통계는 확대되어야 하며, 고용통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고용통계의 생산과 활용이 매우 효율적이며 성과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2. 통계작성 조직기반

가. 국내통계 작성현황

2010년 10월 1일 현재 통계법 제18조(또는 제20조)에 의거 승인받은 통계는 총 844종으로서 지정통계 90종, 일반통계 754종이다.([표 2.1] 참조) 2009년에는 지정통계 90종, 일반통계 865종으로, 2010에는 2009년에 비해 일반통계 부문에서 111종(12.8%)의 감소가 있었다. 작성방법별로는 조사통계는 340종, 보고통계는 446종, 가공통계는 58종이다. 마찬가지로 2009년과 비교했을 때 조사통계는 21종(5.7%), 보고통계는 59종(11.5%), 가공통계는 19종(25.3%)의 감소가 있었다. 작성기관을 정부기관과 지정기관으로 구분하여 볼 때 정부기관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는 통계는 696종(통계청은 52종)이며, 지정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148(149)종이다. 2009년에 비해 정부기관 작성통계는 87종(10.9%), 지정기관 작성통계는 12종(7.4%)의 감소가 있었다. 이와 같이 작성기관별, 작성방법별 통계작성 중에 있어서 2010년은 2009년에 비해 전반적인 감소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표 2.1] 기관구분별 작성 현황(2010.10.01 현재)

기관구분	작성 기관수	작성통계수	통계종류별		작성방법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계	376	844	90	754	340	446	58
○ 정부기관	298	696	74	622	246	405	45
- 중앙행정기관	38	324	58	266	157	145	22
통계청	1	52	41	11	42	2	8
이외기관	37	272	17	255	115	143	14
- 지방자치단체	260	372	16	356	89	260	23
○ 지정기관	78	148(149)	16(17)	132	94(95)	41	13
금융기관	8	24(25)	7(8)	17	12(13)	6	6
공사/공단	23	42	3	39	18	22	2
연구기관	16	23	2	21	18	3	2
협회/조합	25	39	4	35	33	4	2
기타기관	6	20	-	20	13	6	1

※ ()는 복수기관 공동통계(『가계금융조사』,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가 포함된 수치임

또한 우리나라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국가통계의 종류를 모두 16개 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분류에 따른 통계 작성 현황은 [표 2.2]와 같다. 구성비에 있어서 기타를 제외하면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통계가 15.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7.3%를 차지하는 경기·기업 경영 분야의 통계이다.

[표 2.2] 통계부문별 작성 현황(2010.10.01 현재)

통계부문	작성통계수		통계종류별		작성방법별		
	통계수	구성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계	844	100	90	754	340	446	58
인구	28	3.3	3	25	4	21	3
고용.임금	37	4.4	6	31	30	7	-
물가.가계소비(소득)	15	1.8	10	5	14	1	-
보건.사회.복지	134	15.9	7	127	89	42	3
환경	25	3	1	24	9	15	1
농림.수산	53	6.3	11	42	34	18	1
광공업.에너지	33	3.9	4	29	21	9	3
건설.주택.토지	40	4.7	3	37	14	20	6
교통.정보통신	48	5.7	5	43	24	22	2
도소매.서비스	18	2.1	8	10	16	2	-
경기.기업경영	62	7.3	21	41	46	4	12
국민계정.지역계정	21	2.5	4	17	-	-	21
재정.금융	18	2.1	-	18	3	15	-
무역.외환.국제수지	10	1.2	2	8	1	4	5
교육.문화.과학	45	5.3	3	42	32	12	1
기타(시도기본통계포함)	257	30.5	2	255	3	254	-

나. 고용분야의 국가 통계, 작성기관 부서

위의 승인된 국가 통계 중 고용분야의 통계는 총 29종(3.4%)이다. 이는 위의 고용·임금 분야에서 임금 분야를 제외한 수치이다. 고용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임금분야는 8종으로 0.9%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업 경영 분야의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은 고용분야와 일부 관련이 있으며 따라서 본 품질 진단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작성되고 있는 고용분야 29종의 통계를 작성기관 및 작성방법에 따라 분류한 현황은 아래의 [표 2.3]과 같다. 작성기관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높은 비율인 48.3%를 작성하고 있으며 단일기관으로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작성방법별로는 조사통계의 비중이 79.3%로 보고통계 혹은 가공통계에 비해 많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고용통계 작성기관별, 통계구분별 현황

통계작성기관		통계구분	통계종수	종류
중앙행정	교육과학기술부	조사통계	3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이공계인력국내외유입및유출실태조사,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조사통계	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고용동향조사,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지역별임금근로시간조사
		보고통계	3	고령자고용현황,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장애인의무고용현황
	여성가족부	조사통계	1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지식경제부	조사통계	1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통계청	조사통계	2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지방자치	강원도	조사통계	1	강원도취업여성실태조사
	경기도	조사통계	1	경기도시군별고용조사
	전라북도 군산시	조사통계	1	군산시경제활동인구조사
	전라북도 전주시	조사통계	1	전주시경제활동인구조사
	경상남도 창원시	조사통계	1	경상남도창원시경제활동인구조사
기타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조사통계	3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청년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보고통계	2	고용보험통계, 위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
협회 / 조합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조사통계	1	정보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
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사통계	2	사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보고통계	1	장애인구인구직및취업동향

위와 같이 고용분야로 분류되어 작성되고 있는 통계는 총 29종이나 본 품질진단에서는 총 23종의 통계를 진단한다. 이 23종의 통계 중에는 최저임금 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임금 분야), 사업체노동실태현황(기업경영 분야)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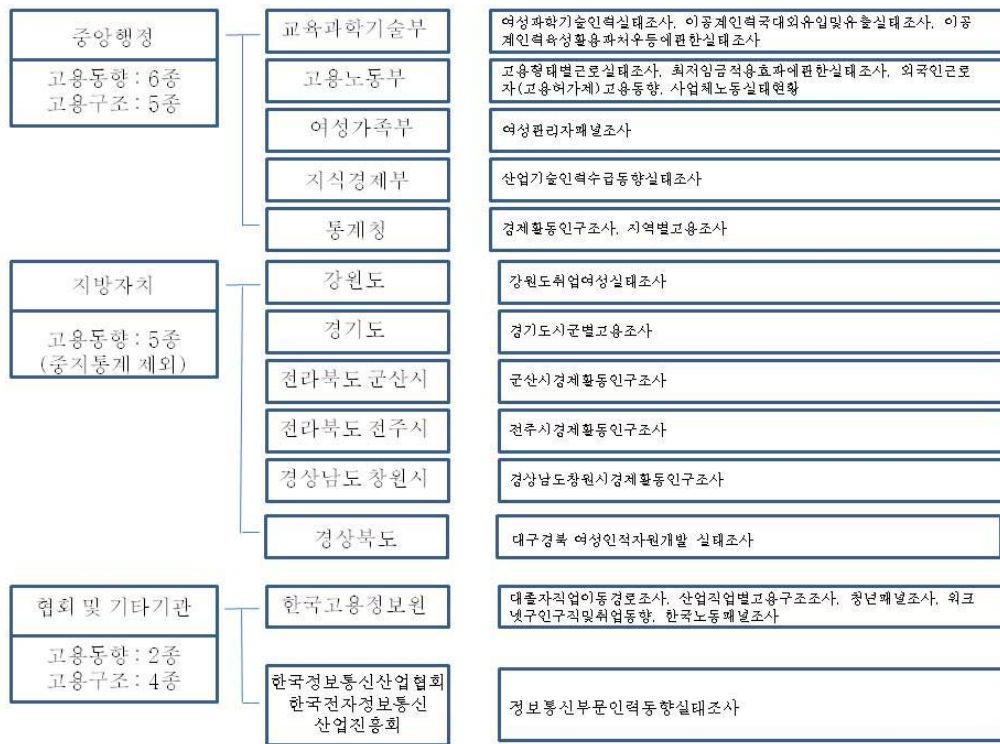
같이 통계청 분류에서 고용 분야 통계로 분류는 되어 있지 않으나 고용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통계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장애인 관련 통계 등을 포함한 8종의 고용분야 통계는 제외되어 있다. 진단의 대상이 되는 개별 통계의 현황은 [표 2.4]와 같다. 작성이 실시된 연도를 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포함한 2건의 통계를 제외하면 모두 2000년 이후에 작성이 시작되어 각각의 통계 작성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음을 볼 수 있고, 이는 해당 분야의 통계 작성에 있어서 종합적인 품질 진단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표 2.4] 고용분야 개별통계 현황(진단 대상 통계)

통 계 명	작 성 기 관	통계종류	승인번호	시작 연도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교육과학기술부	조사통계	10503	2005
이공계인력국내외유입및유출실태조사	교육과학기술부		11215	2006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교육과학기술부		10505	2006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11820	2000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11840	2007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여성가족부		15410	2008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지식경제부		11516	2005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10104	1963
지역별고용조사	통계청		10167	2006
강원도취업여성실태조사	강원도		21105	2003
경기도시군별고용조사	경기도		21006	2007
군산시경제활동인구조사	전라북도 군산시		71202	2008
전주시경제활동인구조사	전라북도 전주시		71103	2006
경상남도창원시경제활동인구조사	경상남도 창원시		79101	2006
대구경북여성인적자원개발실태조사 (중지)	경상북도		21608	2008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한국고용정보원		32704	2006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한국고용정보원		32701	2001
청년패널조사	한국고용정보원		32705	2001
정보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	한국정보통신 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 산업진흥회		92003	2002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고용정보원		33601	1998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고용노동부	보고통계	11827	2006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	한국고용정보원		32703	2002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고용노동부	가공통계	11821	2003

또한 진단대상통계가 작성되고 있는 조직 기반은 [그림 2.2]와 같다. 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계의 성격에 따라 고용동향과 고용구조로 나누었을 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는 고용동향 통계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고, 협회 및 기타기관에서 작성하는 통계는 고용구조에 보다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 진단대상통계 작성조직기반



다. 주제영역의 제도 통계 체계

고용분야의 통계에 대한 수요 및 그에 대한 공급, 그리고 각 영역별 프로그래밍과 연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분야 통계에 대한 수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고용/노동 분야의 거시경제적 현황 파악 및 분석이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해 전국단위로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역단위로 작성된다. 둘째는 각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정책시행의 효과 파악이다. 이는 근거 법령이 제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이 되며 작성된 통계에 의해 현황이 파악되어 이를 기초로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된다. 또한 시행된 정책에 대한 효과 또한 관련 통계에 의해 파악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용/노동 분야의 학술연구를 위한 자료 제공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정기적으로 공표 혹은 자료 제공이 되면 이를 바탕으로 각종 학술대회가 개최되거나 논문이 발표되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수립에 반영되기도 하고 관련 통계의 질을 높이거나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에 반영되기도 한다. 이러한 수요 요인에 대해 현재 작성되고 있는 통계는 이에 맞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현황은 다음의 [그림 2.3]과 같다.

[그림 2.3] 고용 통계의 제도 - 수요와 공급, 프로세스

수요 요인	프로세스 및 내용	관련 통계 공급 현황
고용/노동분야의 거시경제현황 파악 및 분석	전국단위	경제활동인구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 사업체 노동실태현황
	지역단위	지역별고용조사, 경기도시군별고용조사, 군산시경제활동인구조사, 전주시 경제활동인구조사, 경상남도창원시경제활동인구조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정책시행의 효과 파악 (저출산/고령화 문제, 청년실업,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 취약계층 관련, 고용과 교육의 연결성, 인력수급 불균형, 여성고용과 처우, 외국인 노동자,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근로빈곤, 지역고용통계)	근거 법령 제정→관련 통계 작성→현황 파악 →정책 수립 및 시행→ 정책시행의 효과 파악	여성인력정책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관리자패널조사, 강원도취 업여성실태조사
		교육-고용 연계성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청년패널조사
		청년실업 청년패널조사
		이공계 인력 육성 이공계인력국내외유입및유출실태조사(국가 과학기술경 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이공계인력육성 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국가 과학기술경쟁력 강 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최저임금, 비정규직, 취약계층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 조사,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방송통신무분인력동향 실태조사
		외국인노동자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인력수급불균형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 사
학술연구를 위한 자료제공	통계작성→학술대회 및 논문발표→통계작성에 반영 및 정책 반영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관리자패널조사(여성관리자패널 학술포럼), 한국노 동패널조사(노동패널 학술대회),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대졸자직업이동 경로조사, 청년패널조사

제 2 절 주제 분야의 해외 사례

1. 고용통계의 국제기준

국가 간 비교 가능한 고용통계를 제공하는 국제기구는 대표적으로 ILO, OECD 및 EU를 들 수 있다. 이들 통계 중 국제 비교를 위하여 가장 많이 활용되는 통계는 ILO와 OECD의 데이터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기관의 고용통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필요한 경우 EU의 통계체계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가. ILO 기준

노동통계에 관한 국제기준은 두 가지 형태가 있다. 그 중 하나는 국제노동회의(International Labor Conference)에서 채택된 협약(Conventions)과 권고(Recommendations)이며, 다른 하나는 국제노동통계전문가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에서 채택된 결의(Resolutions)와 가이드라인(Guidelines)이다.⁵⁾ 노동통계에서는 두 개의 협약이 존재하는데, 이들 협약은 국제노동기준(International Labor Code)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첫 번째 협약(제63호)은 임금과 근로시간 통계와 관련된 것으로 1937년 제5차 국제노동통계전문가회의에 이어 개최된 1938년 국제노동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관련 통계의 비교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약 34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두 번째 협약(제160호)은 1985년 협약 제 63조를 대체하여 도입되었다. 이 협약은 기본적인 노동통계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이 협약에 가입한 모든 나라들은 매년 자국에서 협약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ILO 통계국(Bureau of Statistics)은 현 상태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실시

5) http://www.ilo.org/global/What_we_do/Statistics/standards/lang-en/index.htm

하고, 그에 기초하여 “협약 및 권고의 적용에 대한 전문가 위원회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는 관련 국가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총 45개국이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다.

국제노동회의는 또한 1985년 권고(Recommandation) 제170호를 채택하였다. 이 권고는 구속력이 있는 조항은 아니며, 데이터 수집, 통계의 분류수준 및 국가통계인프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국제노동통계전문가회의의 결의(Resolutions)는 다양한 노동통계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데 있어서 개념틀, 정의 및 측정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구속력은 없다. 결의의 목적은 국가노동통계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국제비교성을 제고하기를 원하는 나라들에 대하여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이드라인(Guidelines)은 특정한 관심영역에 관련된 보다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1) 1985년 협약 제160호⁶⁾

1985년 협약 제160호는 크게 일반조항, 기본노동통계, 의무의 수락 및 최종조항 등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노동통계와 관련된 국제기준 및 그 의무이행에 관한 조항은 앞의 두 부분이며 의무의 수락 및 최종조항 부분은 가입국의 의무, 협약의 발효 및 수정 등과 관련된 조항이다.

협약 제160호 제1장 일반조항은 제1조에서 제6조까지를 포함하여, 노동통계가 포괄해야하는 기본적인 분야들에 대하여 정의하고 고용통계시스템의 설계 및 변경에 있어 회원국들이 지켜야할 의무를 정의하고 있다. 제1조에 정의된 노동통계의 기본 분야는 (a)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 (b) 경제활동인구의 구조와 분포, (c) 평균소득과 근로시간, (d) 임금구조와 분포, (e) 노동비용, (f) 소비자물가지수, (g) 가계지출, (h) 산재사고 및 산업재해, 그리고 (i)

6) <http://www.ilo.org/ilolex/cgi-lex/convde.pl?C160>

노사분규 등을 포괄한다.

협약 제160조 제2장 기본노동통계는 제7조에서 제15조까지 9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고용통계와 관련된 것은 제7조와 제8조인데, 제7조는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과 관련된 통계는 전국에 대한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함을, 그리고 제8조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구조와 분포에 대한 통계가 전국에 대한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 1985년 권고 제170호⁷⁾

1985년의 권고 제170호는 제1항과 제2항에서 고용통계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제1항에서는 경제활동인구 및 고용과 관련된 현행 통계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작성하고, 기본적으로는 성별 분류를 제공하며 가능한 경우 연령별, 산업별 분류가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구조와 분포에 대한 통계를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작성하며, 최소한 성별, 연령별, 직종 혹은 숙련수준별, 산업별, 지역별 및 종사상 지위별 분류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1985년 권고 제170호의 제16항에서 제20항까지는 통계인프라에 대한 조항들이다. 제16항에서는 회원국들이 적절한 국가통계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그 주요 요소들로 (a) 샘플 선택이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으며, 포괄적이고 업데이트된 사업체 및 기업의 등록부, (b) 사업체 혹은 기업의 서베이나 센서스를 수행하기 위한 조율시스템, (c) 지속적이고 조율된 전국 수준의 가계 혹은 개인 서베이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 (d)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장치를 갖춘) 통계작성을 위한 행정기록 활용 가능성 등을 꼽고 있다. 제17항에서는 회원국들이 적절한 국가분류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분류시스템을 모든 관련기관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조율할

7) <http://www.ilo.org/ilolex/cgi-lex/convde.pl?R170>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18항에서는 회원국들이 다른 출처와 다른 기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ILO 권고에 따라 작성한 통계들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harmonize)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밟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3) 결의⁸⁾

국제노동통계전문가회의에서 채택된 결의 중 고용통계와 관련된 것은 1982년 10월 제13차 회의에서 채택된 “경제활동인구, 고용, 실업 및 부분고용 통계에 관한 결의(Resolution concerning the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1993년 1월 제15차 회의에서 채택된 “종사상 지위 분류에 대한 결의(Resolu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ICSE)”, 같은 회의에서 채택된 “비공식부문 고용통계에 대한 결의(Resolu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employment in the informal sector)”, 1998년 제16차 회의에서 채택된 “부분고용 및 부적합고용상황 측정에 대한 결의(Resolution concerning the measurement of underemployment and inadequate employment situations)”, 그리고 2003년 10월의 “국제표준직종분류에 대한 추가 작업에 관한 결의(Resolution concerning further work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등이 있다. 여기서는 고용통계의 핵심인 경제활동인구, 고용 및 실업을 다루는 “경제활동인구, 고용, 실업 및 부분고용 통계에 관한 결의(Resolution concerning the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와 이 중 일부를 보다 최근에 대체한 “부분고용 및 부적합고용상황 측정에 대한 결의(Resolution concerning the measurement of underemployment and inadequate employment situations)”를 살펴본다.

8) http://www.ilo.org/global/What_we_do/Statistics/standards/resolutions/

(1) “경제활동인구, 고용, 실업 및 부분고용 통계에 관한 결의”

“경제활동인구, 고용, 실업 및 부분고용 통계에 관한 결의”는 이들 지표가 거시경제 모니터링, 인적자원개발계획, 고용정책 및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필요한 고용, 소득 및 기타 사회경제적 특징들 사이의 관계의 측정 등을 위하여 가용 노동시간과 인적자원 및 사용되지 않은 노동시간과 인적자원을 측정할 필요를 충족시켜줄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제안하고 있다.

가장 먼저 “결의”는 제2항에서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 통계는 경제의 모든 부문과 근로자그룹을 포괄하고 다른 경제 및 사회 통계와 가능한 한 최대한의 조율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통계가 상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작성되어 단기적인 목적에 충실한 동시에 보다 긴 기간을 통하여 심화분석과 벤치마킹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통계와 그 구성요소들은 경향과 계절적 변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따라서 일년에 두 번 이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의”는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통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설명을 제공하고 가능하면 국가기준 및 국제기준을 모두 계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개념과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경제활동인구

미국 국민계정체계에 의해 정의된 경제적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위한 노동을 공급하는 모든 남녀들을 포함한다. 경제활동인구 개념은 예를 들어 1년과 같이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통상활동인구(usually active population)”와 1주 혹은 1일과 같이 짧은 기준 기간을 사용하는 “경상활동인구(currently active population)” 혹은 노동력(labor force)의 두 가지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 통상경제활동인구는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이전 12개

월 혹은 전년도)에 몇 주 혹은 몇 일 동안의 주된 활동상의 지위가 다음에 정의되는 바에 따라 고용 혹은 실업 상태로 정의될 수 있는 사람들 중 특정한 연령을 초과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한다. 노동력 혹은 경상활동인구는 이후 정의되는 바에 따라 고용 혹은 실업상태를 충족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괄한다.

나) 고용

“고용”은 특정한 연령 이상의 사람들 중 특정기간(1주 혹은 1일) 동안 “유급고용(paid employment)”이나 “자영업(self-employment)”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유급고용”이란 기준기간 동안 임금(wage)이나 봉급(salary)을 받는 “현직(at work)”과 해당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직장에 공식적 소속되어 있는 “휴직(with a job but not at work)”을 포함한다. 공식적 소속은 국가별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데, 임금 및 봉급을 계속 수령하는 경우, 현 상황 종료 후 직장 복귀가 보장된 경우 혹은 복귀 기한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로 정의될 수 있다. “자영업”은 “기준 기간 동안 이윤이나 가족 소득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현업(at work)”과 기업을 소유하고 있지만 기준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휴업(with an enterprise but not at work)”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제적 적용에서 “어떤 일”이란 최소 한 시간으로 해석된다.

다양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들이 공식적 소속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고용으로 간주한다. 고용주, 독립근로자(own account workers) 및 생산자조합원들은 자영업으로 간주된다. 무급가족근로자들은 기준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자영업으로 분류한다. 특정한 이유로 최소 근로시간을 설정하기를 원하는 나라들은 설정된 시간 이하로 근로한 사람들을 별도로 분류하여야 한다. 스스로 혹은 가구의 소비를 위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생산이 가구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

지하는 한 “자영업”으로 분류한다. 보수를 받는 견습생들은 유급고용으로 간주한다. 학생, 가정주부 혹은 해당기간 중 비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위에서 정의된 “유급고용” 혹은 “자영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고용으로 간주한다. 군인들은 유급고용에 포함된다.

다) 실업(unemployment)

“실업”은 일정 연령 이상으로 기준 기간 동안 “직장이 없고(without work)” - 위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유급고용이나 자영업 상태가 아니고 - , “현재 일을 할 의사가 있으며(currently available for work)”, “구직상태인(seeking work) - 유급고용이나 자영업을 구하기 위하여 최근의 소정 기간 동안 특정한 절차를 밟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결의“는 이러한 절차들의 예를 나열하고 있지만, 예의 구직수단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노동시장이 비조직화되어 있거나 협소한 경우, 노동흡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혹은 노동력의 대부분이 자영업인 경우 구직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실업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준 기간 이후 유급고용이나 자영업을 시작할 예정인 사람들은 실업으로 간주한다. 공식적 소속 없이 일시적으로 직장에서 이탈한 사람들 중 현재 일할 의사가 있으며 구직상태인 사람들은 실업자로 간주한다. 학생, 주부 및 기타 비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위에서의 실업에 대한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실업으로 간주하고 가능하다면 별도로 분류한다.

라) 고용과 소득의 관계

고용과 소득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국은 고용, 고용으로부터의 소득 및 가구소득에 대한 데이터를 작성하여야 한다. 고용과 소득에 대한 포괄적 지표를 얻기 위하여 고용, 고용으로부터의 소득 및 가구소득 지표는 장기적인 기준 기간(예를 들어 1년)에 대하여 인구의 직업 경험을 보아야 하며, 주된 직장뿐만 아니라 부차적인 직장이나 기타 소득원도 고려하여야 한다. 고

용으로부터의 소득은 임금(wage), 봉급(salary) 및 기타 유급고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혹은 현물소득과 자영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소득을 포함한다. 고용과 임금에 대한 통계는 근로시간, 가구규모, 소득원의 수, 자산 및 기타 인구학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특징들과 결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마) 데이터 수집

ILO는 경제활동인구, 고용, 실업 및 부분고용 통계에 대하여 자료취합, 출판방식(tabulation) 및 분석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특별 주제에 관한 데이터

“결의”는 후반부에서 특정 주제들에 대한 통계를 추가적으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 주제들은 (a) 취학 및 경제활동참가와 관련된 청소년에 대한 정기적 통계, (b)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과소추정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론, (c) 가족 및 가구 단위의 정기적 통계, (d) 복수 직장 및 한계 직장 등에 관한 통계, (e) 비공식부문에 관한 통계, (f) 장애인에 관한 통계 등을 작성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부분고용(underemployment)” 및 “부적합고용”과 관련된 권유는 1998년 “부분고용 및 부적합고용상황 측정에 대한 결의(Resolution concerning the measurement of underemployment and inadequate employment situations)”에 의해 대체되었다.

(2) “부분고용 및 부적합고용상황 측정에 대한 결의(Resolution concerning the measurement of underemployment and inadequate employment situations)”

“부분고용 및 부적합고용상황 측정에 대한 결의”는 완전하고 생산적이며

자유롭게 선택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장단기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통계 작성을 목표로 한다. “결의”는 “부분고용(underemployment)”을 “고용인구의 생산력을 과소 활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혹은 지역의 경제시스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기서 제공된 권고내용들은 부분고용을 시간과 관련된 것에 한정하고 있다. “부적합고용(inadequate employment)” 지표는 직능별 숙련의 활용, 경제적 위험의 정도와 유형, 근로스케줄 및 통근, 직업안전 및 건강 및 일반적 근로조건과 관련된다.

근로시간 관련 부분고용은 근로시간이 해당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다른 직장과 비교하여 충분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다. 부분고용은 고용 상태에 있는 근로자들 중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다.

가)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즉 총근로시간을 늘리기 위하여 현재의 직장에 더하여 다른 직장을 원하거나,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원하거나, 혹은 앞의 두 경우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할 의지”는 추가 근로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환경 속에서 의미가 있는 활동을 통하여 표현되어야 한다.

나) 추가적인 근로시간을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소정의 향후 기간 동안 추가근로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많은 시간을 근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다) 기준근로시간(threshold)보다 적게 일하고 있어야 한다. 이 때 기준근로시간은 전일제와 시간제의 경계, 근로시간 중앙값, 법제 등에 규정된 근로시간 기준, 단체협약, 근로시간 및 노동관행에 대한 협약 등에 근거하여 설정

될 수 있다.

근로시간에 대한 분석적 유연성을 제공하고 국제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들은 기준기간 동안 실제 근로시간과는 무관하게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모든 근로자들을 식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적합고용”은 기준기간 동안 어떤 이유에서든지 현재의 근로조건 및 환경을 바꾸고자하는 근로자들이다. 그 이유들은 직능별 숙련의 괴리 (mismatch), 낮은 근로소득, 초과근로시간, 직장 불안정성, 부적합한 작업도구, 장비 및 훈련, 사회서비스의 불충분, 통근곤란, 불규칙적이고 불편한 근로시간, 원자재 및 에너지 수급불안으로 인한 작업 중단, 임금체불, 대금수취 지연 등이 될 수 있다. “결의”는 특히 “숙련관련 부적합고용”, “소득관련 부적합고용” 및 “초과근로관련 부적합고용”의 세 가지 범주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나. ILO 고용통계에 적용된 기준

ILO에서 노동관련 통계는 주로 3가지 통계보고서를 통해 발간된다. 이 중 『ILO 노동통계연감(ILO Yearbook of Labour Statistics)』에는 총인구, 경제활동인구, 고용, 실업, 근로시간, 임금, 노동비용, 소비자물가지수, 산업재해, 파업 및 직장폐쇄 등과 관련된 연도별 통계가 수록되어 있다. 『ILO 노동통계월보(ILO Bulletin of Labour Statistics)』에는 고용, 실업, 근로시간, 임금,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월별 통계가 수록되어 있으며, 『ILO 10월 조사(ILO October Inquiry)』에는 150개 직종별 임금 및 근로시간과 93개 식품에 대한 소매가격이 수록되어 있다.

[표 2.5] ILO 노동통계 발간물 및 조사항목

발간물명	조사항목	빈도
ILO 노동통계연감	전체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고용, 실업, 근로시간, 임금, 노동비용, 소비자물가지수, 산업재해, 파업 및 직장폐쇄	1년
ILO 노동통계월보	고용, 실업, 근로시간, 임금, 소비자물가지수	1월
ILO 10월 조사	직종별 임금 및 근로시간, 식품 소매가격	1년

경제활동인구, 고용 및 실업은 교육수준별, 성별, 산업별, 직종별 및 고용지위별로 세분하여 제공된다.

1)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는 앞에서 서술하였던 바와 같이 제13차 국제노동통계전문가 회의에서 채택된 “경제활동인구, 고용, 실업 및 부분고용 통계에 관한 결의 (Resolution concerning the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를 따르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국제비교성은 대상이 되는 인구 그룹에 대한 정의의 세부적 차이뿐만 아니라, 데이터 취합, 분류 및 결합(tabulation) 방식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첫째, 가족근로자의 범위가 나라마다 다르게 정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둘째, 기준기간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어떤 나라들에서는 경제활동인구가 조사일이나 조사 이전 특정 기간 동안에 대해 정의되는 반면, 다른 나라들에서는 통상적 지위에 의해 정의된다. 셋째,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경제활동인구를 특정 연령 이상의 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어떤 나라에서는 이러한 연령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다. 넷째, 국가별 분류방식의 차이도 통계적 차이를 발생시키는 요인인데, 일반적으로 인구총조사에서보다 노동력 샘플조사에서 코딩 시스템이 더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2) 고용

고용은 제13차 국제노동통계전문가회의에서 채택된 “경제활동인구, 고용, 실업 및 부분고용 통계에 관한 결의(Resolution concerning the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를 따르고 있다. 고용의 산업별, 직종별 분류에 있어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국제분류(ISIC 및 ISCO)에 기초하여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국가별 분류체계에 의해 데이터가 제공된 경우에는 국제 분류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고용지위에 따른 분류의 경우에는 국제고용지위분류(ICS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를 따르며, 이 분류는 고용상태의 근로자를 고용주, 자영업자, 피고용자, 생산자조합원 및 무급가족근로자로 구분한다. 고용지위를 측정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당 통계는 국가별 비교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영자나 법인 주식회사의 장은 피고용자로 분류되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고용주로 분류된다. 혹은 임금, 급여, 수수료나 현물보상을 받는 가족의 일원은 일반적으로 피고용자로 분류되지만, 몇몇 나라에서는 기여가족근로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로 분류하기도 하며, 어떤 나라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근로자의 규모를 전혀 측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많은 나라에서 자영업자(own-account workers)와 고용주(employers)를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그룹의 합만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어떤 나라들은 생산협동조합원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피용자에 포함하는가 하면, 또 어떤 나라들은 자영업자(own-account workers)에 포함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통계의 출처의 차이도 국가별 비교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고용통계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출처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는 노동력표본조사, 사업체조사, 공식추정치 및 사회보험통계 등이다.

3) 실업

실업의 정의도 제13차 국제노동통계전문가회의에서 채택된 “경제활동인구, 고용, 실업 및 부분고용 통계에 관한 결의(Resolution concerning the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를 따르고 있다. 실업의 국가별 정의도 국제표준정의와 다른 경우가 많은데, 특히 연령범위, 기준기간, 구직기준, 일시적 해고 근로자와 최초구직자의 처리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실업통계도 데이터의 출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는데, 주요한 출처는 노동력 표본조사, 공식추정치, 사회보장통계, 고용행정통계 등이다.

4) 근로시간

1962년 이래 근로시간 통계에 대한 국제기준은 제10차 국제노동통계전문가회의에서 채택되었던 실제근로시간(hours actually worked)과 정상근로시간(normal hours of work) 밖에 없다. 이 개념들은 임금근로에만 한정되며 제조 사업장의 정형적인 생산근로자들의 근로 상황을 묘사한다. 국가별 근로시간 통계가 점차 포괄적이 됨에 따라 이들 국제기준은 현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 중에 있다. 이러한 개정은 국제기준에 통상근로시간(hours usually worked)과 유급근로시간(hours paid for)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근로시간은 고용 상태의 근로자가 특정 기준기간 동안 근로 활동으로 보낸 시간을 의미하며, (a) 직접적으로 생산에 소요된 시간, (b) 생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활동 (작업장, 공정, 도구 등의 설계, 준비 및 유지 등), 운송 활동 및 직업훈련 등에 소요된 시간, (c) 주된 활동 사이에 소요된 시간(고객 대기, 인력 및 동력 공급부족, 기계고장, 사고 등으로 인한 대기), 회의 및 작업배당을 위한 이동시간, 비상임무(보건 및 기술서비스 전문가) 등, 그리고 (d) 휴식시간 (티타임, 커피브레이크 혹은 기도휴식의 짧은 휴식)을 포함하지 만, (a) 연가, 공휴일, 병가, 부모휴가 등, (b) 식사시간, (c) 출퇴근시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근로시간은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유급근로시간은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고용주에 의해 임금이 지불된 모든 시간을 (설령 이 시간 동안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포함한다. 따라서 유급 연가, 공휴일, 유급병가 및 기타 유급휴가를 포함하며 무급 근로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정상근로시간은 임금근로자들 중의 일부(예를 들어 노동법이나 규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를 대상으로 하며, 법령, 단체협약 혹은 중재에 의해 사용자들의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된 시간을 의미한다. 실제근로시간과 비교해 볼 때 정상근로시간은 모든 종류의 초과근로를 배제하지만,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임금이 지급된 모든 시간을 포함한다.

통상근로시간은 일정 기준 기간 동안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가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초과근무시간은 정상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통상근로시간에는 포함된다.

5) 임금

임금통계에 대한 통합적인 체계와 관련된 결의는 1973년 제12차 국제노동통계전문가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소득(earnings)과 임금률(wage rates)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소득(earnings)은 근무시간에 대하여 피용자들에게 지급되는 현금 혹은 현물 보수와 비근무시간(예를 들어 연가, 기타 유급휴가 및 휴일)에 대한 보수를 합한 것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사회보험기여금이나 보험급여 등은 제외한다. 소득은 퇴직금이나 해고수당도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은 직접적 임금 및 급여(direct wages and salaries), 비근무시간에 대한 수당(퇴직금 및 해고수당 제외), 보너스, gratuities, 주거 및 가족수당 등을 포함한다.

임금률(wage rates)은 기본급(basic wages), 생계수당(cost-of-living

allowances) 및 기타 지급이 보장되어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을 포함하지만, 초과근무수당, 보너스, gratuities, 가족수당, 및 기타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규, 단체협약 혹은 중재 등에 의해 규정된 임금률 통계와 실제 지급된 임금률은 구분되어야 한다.

6) 노동비용(labour costs)

노동비용은 1966년 제11회 국제노동통계전문가회의에서 채택된 노동비용통계에 관한 결의에 정의되어 있다. 노동비용은 노동을 고용하기 위해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노동비용은 제공된 근로에 대한 보수, 유급 비근로 시간에 대한 보수, 보너스, gratuities, 음식료 비용 및 기타 현물 지급, 사용자 부담 근로자 주거비용, 사용자 사회보험료, 사용자 부담 직업훈련 비용, 복지서비스 및 기타 사항에 대한 부담금 등을 포함한다.

피용자보상(compensation of employees)은 UN 국민계정시스템에 의해 정의되어 있으며, 피용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임금과 급여, 그리고 사회보장, 민간보험, 재(상)해보험, 생명보험 등을 포함한다.

2. 외국의 통계작성체계

가. 미국

미국의 주요 통계는 US Census Bureau에서 조사를 관할하고 있지만, 노동통계의 경우에는 주로 미국노동통계국(BLS)에서 조사도 하고 분석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통계조사시스템은 US Census Bureau가 인구조사(Demographic Surveys)와 경제조사(Economic Surveys)라는 큰 조사를 관할하고 있고, 나머지 세부 조사는 전담 기구에서 담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세부 주제에 관한 조사 단위는 Bureau of Labor Statistics(BLS)를 비롯하

여, Bureau of Justice Statistics(BJS),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BTS),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HUD),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NCES),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NCHS), The National Science Foundation(NSF),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SSA) 등이 있다.

BLS가 담당하는 노동과 관련한 주제 영역은 물가, 실업과 고용, 임금, 근로 시간, 생산성, 산업재해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고용과 실업이 직접적으로 고용 관련 주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에 관한 통계도 단순히 경제활동의 일반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종별 고용과 임금, 노동수요와 노동이동, 노동시장의 동태적 상태 등의 주제를 포괄하는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과 실업에 관한 주제 영역을 포괄하는 통계조사들은 Current Population Survey(CPS), Current Employment Statistics(CES), Quarterly Census of Employment and Wages(QCEW),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 (JOLTS), Business Employment Dynamics (BDM),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OES) 등이 있다.

가장 대표성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해당하는 노동력 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CPS)이다. 이 조사에서는 매월 가구 조사를 통해 연령, 성, 인종 그리고 기타 특성별로 고용과 실업에 관한 전국적인 통계 정보와 지역 단위의 통계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CPS의 경우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지만, 16세 이상 노동력 추정치만을 보고하고 있다. 아동노동법과 의무교육 등에 따라서 16세 미만의 노동에 대해 노동의 유형과 양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인이나 제조자 등의 경우도 이 조사에서 제외되고 있다. CPS는 표본 가구인 6만 가구로부터 매월 12일이 포함된 주의 1주 동안 조사한다.

CPS의 표본 설계는 자주 변하였다. 전통적으로 10년마다의 센서스 이후에 새로운 표본이 선택되었다. 표본설계와 표본추정치의 신뢰성, 통제비용 등을

감안하여 표본 지역과 표본 수가 변하였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 CPS는 주-단위의 표본설계 체계로 즉 주 단위에서 표본의 배분과 선택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기초해서 754개의 조사단위(primary sampling units, PSUs)가 선정되는데, 표본은 Washington DC나 뉴욕, LA 등 특정지역에 대한 특정한 신뢰성 기준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선택된다. 현재의 표본지역 선정 기준은 실업률의 CV(변이계수)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표본의 일정 부분은 매월 바뀌게 된다. 표본은 8개의 하부 단위나 교체그룹으로 구분된다. 각 그룹에 대해 1년에 8개월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사업체 단위에서 매월 이루어지는 고용통계현황조사(the Current Employment Statistics survey)에서 사업체의 매월 임금자료를 기초로 하여 고용과 근로시간, 임금수준을 전국적인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또는 주 단위와 지역 단위(특히 메트로폴리탄 지역 등 대도시 지역)의 고용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다.

한편 미국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고용 통계로 대표적인 것이 Quarterly Census of Employment and Wages에서 제공한다. 이 자료에서는 주와 시군구(카운티) 단위의 고용 정보는 분기별로 제공된다. 이 자료는 7백만이 넘는 사업주들이 실업보험법에 따라서 보고하는 분기별 자료에 기초해서 제공된다. 따라서 이 자료의 원래 명칭은 the Covered Employment and Wages program이었으나 2003년부터 이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실업보험자료를 통해 민간부문 고용의 99.7%까지 포괄하고 있다.

또한 CPS, CES, QCEW, BDM, OES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주와 지역의 고용과 실업에 관한 통계가 제공된다. 모든 51개 주, 메트로폴리탄 지역, 소규모 노동시장지역, 시군구(카운티), 25,000 개의 도시에 대해서 실업률 통계를 제공한다. 또한 국제비교를 위하여 10여개국의 실업률 자료를 미국의 고용 통계 개념에 맞추어서 계절 조정된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BDM과 QCEW에서는 Business Employment Dynamics와 관련된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JOLTS에서는 일자리 공석과 채용, 이직 등에 관해서 매월 사업체 조사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OES에서는 800개의 직업과 400개의 산업에 관한 고용과 임금에 관한 자료를 전국, 주, 메트로폴리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제공하고 있다.

한편 BLS는 또한 매월 대규모 해고에 관한 통계도 제공하고 있으며, 분기별로는 30일 이상 지속되는 해고(layoff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보고서는 각 주의 실업보험 DB와 사용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주된 일자리 축소의 효과를 추적하고 있다. 이 통계는 the Mass Layoff Statistics (MLS) 프로그램에서 조사되고 있으며, 여기에서는 지난 5주 동안 50명 이상 실업급여가 신청된 사업장에 대해서 조사한다. 확장된 MLS 프로그램은 분기별로 보고되는데, 이직한자 적어도 31일 이상 된 50명 이상 근로자를 가지고 있는 비농 부문의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보를 파악한다.

National Longitudinal Surveys와 같은 패널자료에서는 남녀의 6그룹에 대해서 노동시장의 경험과 현황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정보를 다양한 시점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추적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 캐나다

1) 개관

캐나다의 경제활동인구조사(Labor Force Survey: 이하 LFS)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유사하게 고용, 실업과 관련한 추정치를 제공하는데, 캐나다 경제의 성과를 보여주는 시의성 있는 주요 경제동향자료로 평가된다.

2차 세계대전 직후 개발된 LFS는 전시에서 일상경제(peace time economy)로의 전환과 함께 나타난 노동시장의 대대적 변화에 대한 정보 필요성이 그 발생배경이다. LFS는 크게 취업자,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동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각 유형의 규모뿐만 아니라 유형별 질적 특성도 함께 조사되고 있다. LFS 자료는 노동시장의 대표지표인 실업률뿐만 아니라 보조

지표로서 고용률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생산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산업, 직업 및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해서 각 지표를 산출한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전국과 16개 광역시도에 대해서 자료를 추출하는 반면, LFS는 광역시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하위 지역단위까지 자료를 생성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⁹⁾ 이처럼 하위 지역단위까지 자료가 생성되는 이유는 캐나다 인적자원개발부(Human Resource Development Canada)가 특정 고용보험지역(employment insurance region)에 거주하는 주민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급여 수준, 그리고 수혜기간 등을 분석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찾기 위함이다.

[표 2.6] 캐나다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명	Labor Force Survey (경제활동인구조사)	
작성기관	Statistics Canada	
작성주기	매월	
작성목적	캐나다 경제의 활력도 평가 및 노동시장동향 조사	
작성내용	고용, 실업, 근로시간, 지역, 산업, 직업, 업체규모, 노조가입여부, 임금률 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세분류까지 자료를 생성함 * 매월 1/6의 표본만을 교체하여 표본의 경제활동상태 변동을 추적할 수 있게 함 * 다양한 자료와 주기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자료의 신뢰도와 정확성을 유지하고 있음 	<p>할 을</p>

2) 모집단 및 표본추출

LFS의 모집단은 15세 이상 인구 중 현역군인과 재소자 등을 제외한 인구로 현역군인과 재소자는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약 2%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LFS의 표본추출은 다차원 층화추출법(stratified multi-stage design)을 활용하며, 표본추출의 기본단위는 지역(province)으로 해당 지역은 클러스터, 가구로 분리되어 조사되고 있다. 여기서 가구는 표본추출의 최소단위라 볼 수 있다.

9) 캐나다는 10개의 province와 3개의 territory, 그리고 수많은 sub-provincial region으로 나뉜다.

비록 LFS가 횡단면을 기초로 한 표본조사이나, 경제활동상태의 변동을 추적하기 위해 패널자료의 장점을 일부 차용한다. 즉, 매달 표본의 1/6만을 교체하기 때문에 표본에 한 번 선정되면 표본가구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는 6개월간 추적이 가능해 진다. 표본가구로 선정되면 가구원의 인구학적 특성은 모두 조사되나 경제활동과 관련된 정보는 15세 이상 가구원에 한정되어 조사된다. 1995년 이후로 LFS의 표본크기는 약 54,000가구이며 이들 가구로부터 약 100,000명의 가구원들에 대한 노동시장 정보가 추출된다. 다만 추출된 자료의 대표성 및 정확성, 그리고 예산을 고려하여 표본크기는 때때로 조정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3) 질문지

현행 LFS의 질문지는 1997년 도입되었는데, 새로운 질문지의 도입은 기존 질문지의 문제점을 극복하여 자료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컴퓨터보조 면접법(Computer Assisted Interviewing: CAI)의 이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였다.¹⁰⁾ CAI는 질문의 양을 확대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보다 복잡한 질문의 흐름도 상대적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새롭게 질문지를 도입함에 따라 추가된 내용은 임금률, 노조가입여부, 일자리 안정성 등 일자리 질과 관련한 질문과 함께 취업이나 실업으로의 이동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었다. 덧붙여 CAI는 기존 페이지 방식에 비해 업종과 직종에 관한 질문을 보다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강점이 있어 근로자가 근무 중인 직·산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되었다.

4) 자료의 오류와 대체(imputation)

10)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캐나다의 LFS는 컴퓨터 보조 전화면접법(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을 활용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조사자가 각 가구에 전화를 걸어 질문을 하고 응답결과는 컴퓨터에 기입하는 방식이다.

CAI의 도입으로 자료의 질이 극대화되었다고 평가되지만 조사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로 특이값이나 논리적 일관성이 낮은 경우에 대해서는 보정을 하고 있다. 가령, 15세 응답자가 마지막으로 일한 연도가 1940년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논리적 일관성이 낮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자료의 보정은 면접자뿐만 아니라 자료를 취합하는 상위부서에서도 가능하며, 필요시 응답자에게 다시 연락을 취한다. 자료오류의 대표적 사례는 직·산업 분류로 이를 보정하기 위해 직·산업과 관련하여 응답한 주관적 설명을 기초로 보정하는 게 보편적이다.

일관적이지 않거나 생략된 정보에 대해서는 대체(imputation)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LFS가 활용하는 대체방법은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응답자의 답변 중 일부가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경우, 일관적인 답변을 기초로 그렇지 않은 정보를 대체하는 방법이다. 둘째, 만약 응답자의 답변 중 논리적 일관성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 LFS는 응답자의 지난 달 답변을 참고하여 자료를 대체하는 방법이다. 캐나다 LFS가 활용하는 마지막 자료대체 방법은 정보가 누락된 경우에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다른 표본의 값으로 해당표본의 값을 채워 넣는 방법(hot deck imputation)이다.

자료의 질적 평가를 위해서 LFS는 고용임금근로시간조사(Survey of Employment, Payroll, and Hours)나 근로임금동학조사(Survey of Labour Income and Dynamics), 고용보험자료 그리고 인구센서스와 주기적으로 비교된다. 또한 LFS는 비교적 다른 성격을 가진 GDP 자료와도 비교가 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경제성과와 비교해 노동시장 추세가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상과 같이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서 캐나다 통계청은 LFS 자료의 보정과 대체, 그리고 타 자료와의 지속적인 비교를 하고 있으나, 표본조사의 한계로 표본추출오류와 비표본추출오류(non-sampling error)에 노출되어 있다. 비표본추출오류는 주로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며, 표본가구원의 응답거부나 조사원의 실수 등이 그 원인으로 파악된다. 응답거부는 전체 표본의 약 1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통계청은 응답거부율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응답률을 제고토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거부하는 소수 가구에 대해서는 가중치(weight)를 적용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표본추출오류는 대표적 통계학적 방법인 변이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를 활용하여 측정된다.

다. EU의 고용통계

1) 개관

고용, 실업 및 일자리 질과 같은 노동시장 이슈는 정치, 사회논쟁의 주요 쟁점으로서, EU에서는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을 기초로 성장과 일자리에 주목하고 했다. 리스본 전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유럽고용전략(the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EES)은 노동시장발전을 평가, 관리하기 위해 노동시장 관련 통계의 제공과 분석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통계 규정에 따라 EU의 유럽통계처(Eurostat)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통계는 유럽연합 경제활동인구조사(EU Labour Force Survey, 이하 EU LFS), 소득구조조사(Structure of Earnings Survey), 그리고 노동비용조사(Labour Cost Survey)로 정리할 수 있다. 물론 고용동향과 고용의 질과 관련하여 공석률(job vacancy), 총(순)소득, 최저임금, 노동시장정책을 주제로 하는 조사도 다양하게 병행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서는 작성목적에 고려하여 EU의 중점관리 통계 중에서도 고용과 관련된 EU LFS와 공석률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참고로 EU LFS는 한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유사한 목적으로 추출되고 있으며, 공석률 관련 통계는 고용노동부 조사자료인 노동력실태조사 및 행정자료인 워크넷 구인구직DB와 연계될 수 있다.

EU의 고용통계는 다른 대다수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ILO의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고, 국제기구에 제출한다. 따라서 고용관련 주요 관심변수라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등과 같은 변수는 우리나라의 기준과 별반 다른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하지만 EU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정책적 목적에 맞게 특정변수에 대해 통상적인 국제기준과는 다르게 정의를 하여 자료를 추출하고 있어, 변수 정의의 차별성과 관련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EU의 고용관련 통계 중 주요 자료인 EU LFS는 분석주기 차원에서도 우리나라와 차이점을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자료추출 방식에 주는 시사점이 있으므로 짧게나마 논의하도록 한다.

2) Eurostat 대상 국가

유럽통계처에서 관할하는 국가는 [표 2.7]과 같이 EU 회원국을 비롯해,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을 제외한 유럽자유무역협회(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 소속국가들이다. 유럽통계처의 대상 국가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 국가들이 유럽통계처의 기준에 따라 통계를 추출할 뿐만 아니라 유럽통계처의 고용관련 주요 통계자료라 할 수 있는 EU LFS의 표본 추출 대상지역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별국가는 고용통계의 국제기준 즉 ILO의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유럽통계처의 회원국으로서 ILO와는 다른 기준으로 통계가 작성되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의 고용통계가 우리나라와는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표 2.7] Eurostat 대상 국가

코드	국가명	European Union-27개국	Euro Area-16개국	EFTA-3개국
BE	Belgium	o	o	
BG	Bulgaria	o		
CZ	Czech Republic	o		
DK	Denmark	o		
DE	Germany	o	o	
EE	Estonia	o		
IE	Ireland	o	o	
EL	Greece	o	o	

ES	Spain	o	o	
FR	France	o	o	
IT	Italy	o	o	
CY	Cyprus	o	o	
LV	Latvia	o		
LT	Lithuania	o		
LU	Luxembourg	o	o	
HU	Hungary	o		
MT	Malta	o	o	
NL	Netherlands	o	o	
AT	Austria	o	o	
PL	Poland	o		
PT	Portugal	o	o	
RO	Romania	o		
SI	Slovenia	o	o	
SK	Slovakia	o	o	
FI	Finland	o	o	
SE	Sweden	o		
UK	United Kingdom	o		
HR	Croatia			
MK	the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TR	Turkey			
IS	Iceland			o
NO	Norway			o
CH	Switzerland			o

** EU는 2007년 1월 1일 기준 총 27개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으나, 유럽통계청은 EU 가입을 희망하는 국가(candidate)를 포함하여 자료를 생성하고 있음.

3) EU 경제활동인구조사(Labour Force Survey: LFS)

EU LFS는 기본적으로 분기단위로 조사되고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등 지표를 국가, 지역, 성, 교육수준별로 산출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통계청은 실업률과 같은 주요고용지표를 매월 발표하고 있는데, 이는 분기별 EU LFS를 매월 실업률이나 고용보험DB에 등록된 실업자수와 같은 정보를 연계하여 추정된 값이다.(Eurostat, "Labour Market Statistics," p.36)

이처럼 분기자료를 기초로 월별 주요변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조사처럼 매월 조사되어 발표되는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여기서 우리는 통계자료의 효율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만약 분기별 조사를 통해 충분히 현실반영도가 높은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다면 매월 조사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방법이라 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매월 조사와 분기별 조사가 동일한 질의 추정치를 구할 수 있다는 가정 자체가 한계를 가질 수 있으므로 조사주기에 따른 자료의 효율성 평가는 다소 무리일 수 있다. 따라서 미지의 참값과 추정된 결과 사이의 근접 정도를 말하는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한 가지 관점은 표본추출률일 것이다.

먼저 EU에서는 분기별 LFS에 약 150만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표본추출률이 국가별로 0.2-3.3%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가구를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표본추출률은 0.195%로 통계의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¹¹⁾

따라서 통계작성 주기에서 나타나는 효율성은 표본표집률로 평가할 수 있는 통계의 정확성과 상충관계(trade-off)에 있을 수 있으며, EU지역과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조사 비교는 이러한 상충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별적 선택의 결과라 평가할 수 있겠다.

4) EU LFS 조사내용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유럽통계청은 기본적으로 ILO 권고에 따라 자료를 추출하고 산출된 결과는 비교를 위해 국제기구에 발표한다.¹²⁾ 하지만 EU 국가간 보다 엄밀한 비교를 위해 공식적인 국제기준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자료를 생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2.8>은 우리나라와 EU에서 생산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분석

11) 2009년 기준 국내 총가구수는 1691만 7천가구로 본고에서 제시하는 표본추출률은 경제활동인구의 표본가구수를 국내 총가구수로 나눈 값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지역별 표본추출률은 조사구, 주택의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김수택 외, 2008)

12) Recommendation of the 13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ur Statisticians(ILO, 1982)

변수의 정의를 보여준다. 비교결과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국내 고용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한 종사상지위와 실업자 정의에서 나타났다. 특히 EU는 실업자를 15세 이상 74세 이하의 생산가능인구로 대상 연령대를 확대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표 2.8] 한국과 EU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변수정의

주요변수	한국	EU(Eurostat)
생산가능인구	현역군인, 전투경찰, 기결수 등을 제외한 만 15세 이상의 인구	좌동
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 및 실업자	좌동
비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 즉 일할 능력은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거나 아예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 등	좌동
취업자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 종사자 ¹³⁾	조사대상 기간에 급여나 이윤을 위해 일했거나, 일은 안했지만 직장이 있었으며 임시로 휴식을 취한 사람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정규직원으로서 의사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을 받는 사람	유럽에서는 상용직(full-time)과 비상용직(part-time)만을 구분함. EU LFS에서 상용과 비상용의 구분은 주된 일거리를 기초로 응답자의 답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통상적이거나 몇몇 국가에서는 특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구분하기도 함
임시근로자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퇴직금 등의 비수혜자	
일용근로자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	
자영업주	자영업자와 고용주를 말함. 자영업자는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고용주는 한 사람 이상 유급종업원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	좌동
무급가족종사자	자신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데 주 18시간 이상 도와준 사람	가족 종사자는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를 도운 사람으로 피고용자로서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 한함
실업자	생산가능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ILO 권고에 따라 좌와 같은 실업자 정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EU 국가 간 보다 정교한 비교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의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음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 Commission Regulation No. 1987/2000에 따른 실업자 정의 15세 이상 74세 이하의 생산가능 인구 중 조사대상 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표 2.9] 미국 노동통계국의 노동력 저활용 대체지표

지표(A/ B)	A	B	비고
U1	4개월 이상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U2	비자발적 실업자 (직장 휴폐업, 일시적 실업)	경제활동인구	
U3	4주간 실업자	경제활동인구	공식실업률
U4	4주간 실업자+구직단념자	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	
U5	4주간 실업자+구직단념자+기타한계근로자	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기타한계근로자	
U6	4주간 실업자+구직단념자+기타한계근로자+경제적 이유로 35시간 미만 취업자	경제활동인구+구직단념자+기타한계근로자	

** 기타 한계근로자: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할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육아, 가사, 통학 등 기타 사유로 인해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자

라. 외국의 고용관련 패널조사

1) 청년층 대상 외국의 패널 조사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의 유사 패널 조사는 다음과 같다.

- 13)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구직기간 1주를 기준으로 실업률을 조사, 발표해 오다가 1999년 6월부터 1주 및 4주 기준 실업률을 병행 작성하였고, 2005년 6월부터는 4주기준 실업률을 공식 실업률로 채택하면서 1주 및 4주 기준 실업률을 동시에 발표하고 있다.

[표 2.10] 청년층 대상 외국의 패널 조사

명칭	YP	NLSY79	NLSY97	NLSCY	LSAY	GI
국가	한국	미국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조사대상	15~ 29세	14~21세	12~18세	0~9세까지의 어린이 및 12~23세까지의 청소년	9학년(만 15세) 학생	같은 해에 교육과정을 마치고 직업세계에 입직한 사람들
표본수	YP 2001(약 5,000명) YP2007(약 10,000명)	12,686	8,984	37,655	1997년(약 13,000명), 1998년(약 14,000명)	Génération 2004는 약 65,000여명
조사방식	YP 2001은 PAPI 방식 YP2007은 CAPI 방식	1988년까지 PI & PAPI, 1989~1990년에는 CAPI, 1991년부터 PI & CAPI	CAPI	CAI(computer-assisted interviewing)	전화조사(telephone interview)	전화조사(telephone interview)
조사주기	1년	1994년까지 매년 1995년부터 2년	1년	2년	1년	매월
조사시작	2001	1979	1997		1997	1998

(1) 미국의 NLSY(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가) NLS

① NLS 개요

NLS(National Longitudinal Surveys)는 미국 BLS(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Ohio State Univ.의 CHRR(Center for Human Resource Research)에서 주관하며, Chicago Univ.의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에서 실사를 진행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개인 대상 종단 연구이다.

조사는 1966년에 시작되었으며, 남성과 여성 집단의 노동시장 경험 정보를 수집하는데, 6개의 cohort - 성인 남성(older man), 성인 여성(mature

woman), 청년 남성(young man), 청년 여성(young woman), NLSY79, NLS97로 분리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40년 이상 진행된 조사이다.

② 조사 주요 목적

성인(adults)과 청년(young adults)의 노동 경력(labor force experience)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데, 특히 노동시장 영향 요인인 교육 투자(investment in education), 훈련 투자(investment in training), 주거(geographic region of residence), 부모의 영향(the influence of parents), 혼인상태(marital status), 가족부양(family responsibilities), 사회경제적 위치(socioeconomic status), 직무태도 및 목표(work-related attitudes and aspirations), 건강(health problem), 직업 차별(job discrimination) 등의 범위에 관한 정보를 규칙적으로 수집하고자 한다.

나) NLSY79 소개

① NLSY79 개요

NLSY79(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1979)는 1979년에 시작된 패널조사로서, 조사 대상은 1957~1964년 사이에 태어나서 1979년에 14세~22세 사이인 12,686명이다. 1979년부터 1988년까지는 대면조사(PI; personal interview) 및 서면조사(PAPI; paper and pencil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1989년과 1990년에는 컴퓨터입력을 통한 대면조사(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을 병행하였으며, 1991년부터는 대면조사와 CAPI방식으로만 조사하고 있는데, 1989년부터 1994년까지는 매년 조사를 실시하였고, 1995년부터는 격년 단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본추출작업은 시카고대학의 NORC(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임의추출(random sampling)과정을 거쳐 민간인 6,111명, 과표본된 비백인계(non-white) 표본 5,295명, 군복무자 1,280명 등 총

12,686명을 최종표본으로 추출하여 진행하고 있다.

현재 30년째 조사가 수행되고 있으며, 2006년 표본유지율은 76.8%이다.

② 조사 목적

20-30대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동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미국의 노동관련 정책결정 및 연구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를 생성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다) NLSY97 소개

① NLSY97 개요

NLSY97(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1997)은 199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2세에서 16세 사이의 대략 9,000의 전국적인 대표표본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7년에 첫 번째(Round 1)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09년 9월에 11 번째 라운드(Round 11) 결과까지 발표되었다.

조사방식은 1차년도부터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통계조사는 1980년과 1984년 사이에 태어난 자로써 처음 인터뷰 당시의 나이가 12살부터 18살의 연령대로 2006-2007조사인 10번째 인터뷰(round 10)에 서는 21살에서 27살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응답자 수는 첫 번째 조사에서는 8,984명이 조사되었고, 10번째 조사에서는 7,559명이 조사되어서 표본유지율은 84%이다.

1차년도 조사 당시의 원표본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4,599명(51%), 여성이 4,385명(49%)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종은 비흑인/비히스패닉계가 4,665명, 흑인이 2,335명, 히스패닉계 또는 라틴계가 1,901명, 기타가 83명이다.

② 조사 목적

NLSY97는 청소년 노동시장의 행동과 교육수준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수집되었다. 고용정보는 특정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는 직업과 베이비시팅(babysitting), 잔디깎기(lawn mowing)와 같은 프리랜스(freelance)일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노동 경험에 대한 측정, 고용자의 (재직 기간 후에 주어지는) 신분 보장, 고용자 변동들도 함께 측정되었고, 청소년들의 교육수준 정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조사되었다.

NLSY97에서는 특별히 청소년 노동자들의 부모들에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가족사 배경, 생활환경, 부모들의 교육수준(고등학교, 대학교, 전문교육), 종교, 건강수준, 월평균 가족수입, 자산, 정부보조프로그램에 참여여부, 부모들의 청소년들에 대한 기대도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수집되는 정보에는 노동시장 형태, 교육수준(고등학교, 전문대, 전문교육), 가정환경, Armed Services Vocational Aptitude Battery(수학과 언어를 포함한 능력과 지식을 측정), 고등학교시절의 정보, 정부프로그램 참여, 가족 삶(결혼상태, 출생률, 아동보육), 건강상태, 자산현황 등이 조사되었다.

(2) NLSCY 소개

가) 조사 개요

NLSCY(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Children and Youth)는 캐나다에서 실시하는 조사로서, CAI(computer-assisted interviewing) 방식을 사용하여 2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조사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관련된 주제, 어린이들의 육체적 성장과 관련된 정보, 교육수준과 행동양식 뿐 아니라 어린이들의 사회적인 환경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모든 표본은 Labour Force Surveys (LFS)의 가구조사 표본으로부터 도출되

었으며, 최초의 표본은 37,655명의 0세부터 9살까지의 어린이들과 12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는 매년 9월부터 7월 사이에 이루어진다.

표본탈락률은 평균 6.3%이며, 유아들의 발달과정에 대한 연구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유아기 세대(Early Childhood Development cohort)를 추가적으로 추출하여 종단 및 횡단면 표본의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Cycle 4와 5에서는 5세 아동의 표본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Cycle 6과 7에서는 2-5세 아동 표본을 추가하였다.

나) 조사 목적

캐나다의 청소년부터 이른 성인에 이르기까지의 성장과 복지를 추적하는 조사이다. 조사의 주요 목적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감정적, 행동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사회적, 감정적, 행동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충격이 청소년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1994년부터 조사가 시작되었다.

(3) LSAY 소개

가) 조사 개요

LSAY(Longitudinal Surveys of Australian Youth)는 호주에서 1997년에 처음 실시한 조사로서, 전화조사(telephone interview)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1년 단위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표본은 9학년(만 15세) 학생들로 응답자의 나이는 15~25세인데, 1997년에는 약 13,000명 이상, 1998년에는 약 14,000명 이상이 전국 학교로부터 추출되어 조사하고 있다.

LSAY는 교육-훈련-일 사이의 이행과정에 대한 연구를 위한 패널조사이며, DEST(Department of Education Science and Training)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DEST와 ACER¹⁴⁾이 공동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LSAY는 35,000명의 샘플이 구축되어 있으며, 조사는 대부분 전화조사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까지의 표본 유지율을 살펴보면, 1995년 응답자 코호트는 현재 유지율이 31.3%, 1997년 코호트는 37.9%, 2003년 코호트는 83.8%수준이다.

나) 조사 내용 및 목적

주요 조사내용 및 목적으로는 고등학교 생활(14세 때의 수리읽기능력, 11&12학년 때 과목선택, 일한 경험 등), 졸업 후 상급학교로 진학하는지 직업훈련을 받는지 등에 대한 교육과정과, 진로의 다양성(선택 가능한 진로범위, 교육과 일 사이의 동태적 특성, 진로선택에 따른 성공도), 학교과정을 마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점, 대학진학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대한 학교와 노동시장 사이의 이행과정, 취업자와 미취업자로 구분하여 교육이 노동시장 성과(소득 및 고용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4) GI(generation interview) 소개

프랑스의 Génération 조사는 CEREQ(Centre d'études et de recherches sur les qualifications)에서 실시하는 패널조사로서 『Génération 92』부터 시작하여 『Génération 98』, 『Génération 2001』, 『Génération 2004』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Génération 조사는 같은 해에 교육과정을 마치고 직업세계에 입

14) 호주 Council에 소속된 1930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교육 연구 기관으로 호주 내에서 교육 정책 제공과 관련하여 오랜 역사와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교육 성과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배움의 기회 제공에 대한 연구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곳임

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 내용은 조사 대상자의 매월 고용상태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추적 조사하는 것이며, 조사결과는 직업세계로의 진입에 대한 경로를 분석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조적 혹은 일시적 경제 상황에 따른 세대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표본크기의 경우, Génération 2004는 약 65,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 대졸자 대상 해외 조사

대졸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의 유사 조사는 다음과 같다.

[표 2.11] 대졸자 대상 외국 조사

명칭	GOMS	B&B	NGS	AGS
국가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조사대상	대학 졸업자	학사 학위를 받은 자	캐나다의 고등교육이수자(대학, 전문대학, 직업학교)로써 학위를 마치거나 수료한 자	대학 졸업자
표본수	2005GOMS(26,544) 2007GOMS(18,050)	11,700명	61,759	
조사방식	CAPI, PAPI	CATI	CATI	
조사주기	1~2년	4년	2~5년	졸업 후 4개월 1회
조사시작	2006	2001	1984	1972년 시작, 2006년 명칭변경

(1) B&B 소개

가) 조사 개요

B&B 조사(Baccalaureate and Beyond Longitudinal Study)는 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약 11,000명 이상의 표본에 대해 약 12년 동안 추적하는 조사로서, B&B 조사의 기본 자료는 NPSAS(National Postsecondary Student Aid Study)로부터 수집된다.

조사 방법은 학사학위를 받고 1년 후 첫 번째 추적 조사를 실시하며, 이때 각 응답자들에 대한 성적증명서도 수집한다. 두 번째 추적조사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그들의 학부를 이수한 후 4년이 지난 시점에 시행되는데, 이때부터 4년 간격으로 12년간 추적 조사하게 된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대학교육, 졸업여부, 취업, 공공서비스 및 기타 직업 생활분야에서의 경험 등이다. 이를 상세하게 살펴보면, 학위를 마친 후, graduate study 혹은 work force로 진입소요 시간, 직업과 교육의 적정 수준 관련성 및 전공분야 관련 직위 달성 소요시간, 학사학위자의 첫 직장 취득 소요기간, 실업과 전공분야의 관련성, 교육기간 시 소요 비용 및 대학원 진학, 고용, 가족 구성 관련 결정 요인 등과 관련한 대학 교육 목표 달성 및 결과 분석이 있고, 대학원에 진학 목적 및 대학원 진학 시 문제점, 대학원 졸업소요기간 및 결정요인(전공분야, 대학교 형태, 연령), 직장과 대학원과의 관계 등 대학원 및 전문 교육과정분석이 있으며, 대학원을 이수여부에 따른 첫 급여의 차이 및 장기급여간 차이, 직업별 취업 적합자 관련, 학위 종류 및 수준에 따른 공공 서비스에 입문한 사람들이 다른 분야의 취업 후 비교, 학위 종류 및 수준에 따른 학위이수자들의 직업과 경력 변화 등 교육투자회수율분석이 있다.

나) 조사 목적 및 표본설계

조사의 주요 목적은 대학교, 대학원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의 교육에 있어서 투자에 대한 투자 회수율과 관련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자료제공과 희망하는 경력 경로 또는 선택한 분야에서 일을 지속하기 위해 학사학위에 있어서의 교육내용이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고자 한다.

표본설계는 학교층화표본추출, 추출된 학교표본 내에서의 학생 표본 추출, NPSAS에서 학위를 받은 개인표본 선정 등 세 단계로 구성된다. B&B2001을 기준으로 표본설계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1998~1999년 IPEDS(Integrated

Postsecondary Education Data System)에 포함된 학교들을 NPSAS:2000의 표본추출틀로 사용하여 22개 그룹을 만든다. 이 때, 그룹내 표본크기는 NCES에서 협의한다. 확률 최소 복원 방법(PMR: probability minimum replacement)을 이용한 확률비례표집(PPS: probability proportional sampling)을 실시하여 전체 6,420개 학교 중 약 1,080개 학교를 선택하였다. 추출된 1,080개 학교에서 학생을 추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7개 그룹 (baccalaureate business, baccalaureate non-business, other undergraduate, masters, doctoral, other graduate, first professional) 70,230명 중 약 16,620명(학위취득자)을 추출한다. 마지막 단계로 NPSAS에서 학위를 받은 개인표본에 대해 CATI 접촉을 통해 학위 수여자를 확정한다.

(2) NGS 소개

가) 조사 개요

NGS(National Graduate Survey)는 캐나다의 고등교육과정(post-secondary program)을 마친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설문조사로 대학교육이 고용에 얼마나 효율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198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조사 배경은 캐나다에서 1978년에 1976년 대학 및 community college의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동시장 경험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대학과 community college의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직업 프로그램(trade/vocational) 이수자를 포함시켜 모집단을 확장하여 1984년부터 실시하였다.

조사형태는 단순형으로 직접조사로 자기응답식이며, 모집단인 졸업자는 캐나다의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대학, 전문대학, 직업학교 이수자로서 학위를 마치거나 수료한 자이다.¹⁵⁾ 자료수집방법은 CATI를 통해 100일간 실시한다.

조사주기는 특정 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졸업 후 2년(NGS) 또는 졸업 후 5년(FSG)에 2회의 인터뷰에 응답하게 된다.

1995년 졸업생의 경우, 1997년에 첫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 때 표본은 초기 표본 57,560명과 부가표본 4,199명 등 총 61,759명이 추출되었다. 초기 대상 표본 61,759명의 79.6%(약 49,150명)가 응답하였는데, 이 중 1997년 조사당시에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망 및 표본틀 에러(frame error) 등의 이유로 일부 자료가 제외되어, 최종 43,040명(69.7%)의 정보를 획득하였다.

1995년 졸업생조사의 설문지는 18개 부분¹⁶⁾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학과과정 확인, 졸업 전 활동, 지난주의 경제활동(취업/미취업), 취업자의 이전 직업, 미취업자의 이전 직업, 졸업 후 첫 직장, 졸업이후의 활동(취업, 직업탐색, 진학 등), 졸업 후 받은 교육(complete), 졸업 후 받고 있는 교육 또는 훈련(incomplete), 상급학교 진학, 학과과정 평가, 학자금 대부, 기술(능력), 학교-노동시장 이행, 자원봉사활동(volunteer activity)(예 : 선거운동, 상담, 지도 등), 인구학적 정보, 신상정보 등이다.

나) 조사 목적 및 표본설계

조사의 주요 목적은 졸업자의 전공과 직업, 졸업생의 직업과 경력 만족도, 하향취업과 실업에 대한 조사, 고용형태와 경력전망, 자격취득, 대학교의 직업성취에 대한 영향 등을 조사하여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이행에 관심이 있는 정책입안자, 연구자, 교육자, 고용주, 청년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의 목적을 살펴보면, ① 교육, 훈련, 노동시장에 중점을

15) 학사, 석사, 박사학위 취득이나 전문 자격증을 위한 대학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자뿐만 아니라 CAATs, CEGEPs, community college, 기술 학교 또는 그와 유사한 기관에서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자와 취업 전 3개월 이상의 직업 프로그램(skilled trade program)을 이수한 졸업자를 모두 포함한다. 단, 사설 고등 교육기관의 졸업자, 학위나 자격증을 제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자, full-time 근로자이면서 part-time 과정에 참여한 자 또는 3개월 미만의 직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는 모집단에서 제외된다.

16) 2000년 설문지의 경우에는 1. 조사소개, 2. 학과과정 확인, 3. 졸업 전의 활동, 4. 미국에 거주중인(했던) 졸업자, 5. 지난주의 경제활동, 6. 무급휴가, 7. 고용, 8. 고용주, 9. 고용에 대한 세부사항, 10. 교육프로그램, 11.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사항, 12. 교육관련 기타 사항, 13. 직업관련 훈련, 14. 학자금 대부, 15. 상급학교 진학, 16. 인구통계, 17. 자녀의 연령, 18. 정보공유 동의 등 18개로 구성됨

① 정책개발에 유용한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② 교육/훈련과 노동시장 경험과의 관계와 졸업생 추가 교육의 기회에 관한 정보 수집, ③ 다양한 직업적 카테고리에 따른 직업의 수급모델 향상, ④ 노동시장의 수요공급의 불균형에 관한 관련 연구들을 수행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확충, ⑤ 진로상담과 고등교육 과정 선택을 위한 상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⑥ 직업 평등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목표집단(여성, 소외계층, 장애인 등)의 노동시장 경험에 관한 장기적이고 경쟁적인 자료의 수집, ⑦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인적자원의 환원에 대한 이해, ⑧ 고등교육비에 대한 이해, ⑨ 지식과 기술에 관한 세부적인 자료의 수집 등이다.

1997 코호트 기준으로 표본설계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캐나다 교육통계센터로부터 제공받은 대학리스트를 사용하며, 졸업생에 대한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는 각 학교로부터 제공을 받는다. 표본 추출방법은 비복원 층화 체계적 임의추출 방법(nonreplacement stratified & systematic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였는데, 층화는 각 지역(12개 주)내에서 교육기관의 종류(학위 등급)와 전공에 따라 나누게 되고, 교육기관은 skilled trades, college, undergraduate, masters level, doctorate 등 5개로 구분되며, 전공분야는 대학과 기술 프로그램(career/technical program)의 경우에는 9개, 직업 프로그램(trade/vocational program)의 경우에는 8개로 구분이 되는데¹⁷⁾, 9개 전공분야 및 코드는 다음 <표2.12>와 같다.

17) 분류체계는 5자리 USIS(University Student Information System)와 CCSIS(Community College Student Information System)에 기초

[표 2.12] 대학과 기술 프로그램의 9개 전공분야 및 코드

코드	전공
01	No specialization/Specialization Unknown
02	Education
03	Fine Arts/Humanities
04	Commerce/Law/Economics
05	Other Social Sciences
06	Agricultural and Biological Science
07	Engineering
08	Medical and Health Professionals
09	Mathematical and Physical Sciences

(3) AGS 소개

AGS는 1972년 이후로 매년 GCA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2006년 GDS (Graduate Destination Survey)로 알려진 호주 대졸자 조사는 Australian Graduate Survey(AGS)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the Graduate Destination Survey(GDS), the Course Experience Questionnaire(CEQ) 및 the Postgraduate Research Experience Questionnaire(PREQ)로 대학원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는 조사이다.

AGS는 대학 및 대학원 졸업 후 약 4개월 후인 4월(전년 12월 졸업생 대상)과 10월(6월 졸업생 대상)에 두 번에 걸쳐 횡단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AGS는 패널조사 성격인 GOMS 조사 보다는 오히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졸업생 전수조사에 가까운 조사로 볼 수 있다.

제 3 장 통계현황 및 역할 분석

제 1 절 고용분야 진단대상 통계의 일반적 현황 및 작성개요

고용 주제에 대한 통계별 작성 현황을 고용동향조사와 고용구조조사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용동향 조사는 전국 혹은 지역단위에서 노동력 규모, 취업자 및 실업자의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통계이다. 본 진단대상 통계 중 고용동향 조사는 14종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고용구조 조사는 근로자 특성별 일자리의 특성과 수급에 보다 중점을 둔 통계이다. 본 진단대상 통계 중 고용구조 조사는 9종이 포함되어 있다.

1. 고용동향 조사

가. 개인 및 가구에 대한 일반적 고용동향 조사

진단대상 통계에 포함되는 고용동향 조사 중 개인의 일반적 경제활동 상태에 대한 조사는 총 6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경기도시군별고용조사, 경상남도창원시경제활동인구조사, 군산시경제활동인구조사, 전주시경제활동인구조사가 있다. 이 통계들은 특정 부문을 대상으로 한 다거나 특정 목적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혹은 지역에 해당되는 가구 및 개인의 일반적인 경제활동 상태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다.

노동시장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 대표적인 통계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이다 (표 3.1).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취업, 실업, 노동력 등과 같은 인구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노동공급, 고용구조, 노동시간 및

인력의 활용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정부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함"을 조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조사는 ① 매 5년 간격으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10% 표본조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된 32,0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②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을 기준으로 ③ 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취업, 실업, 비경제활동 등 경제활동상태별 규모뿐 아니라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등 각종 지표들이 지역, 성, 연령계층, 교육수준별로 산출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노동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대상은 전국 32,000여 가구의 만15세 이상 가구원으로 현역군인,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전투경찰, 외국인은 제외된다. 조사기간은 매월 15일 포함된 1주간으로 지방사무소 담당직원이 PDA를 휴대하고 조사대상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하면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국내의 대표적인 고용 관련 통계로서 1963년부터 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 주기는 월단위이나 월단위 정기 조사에 추가하여 매년 청년층, 고령층,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부가조사와 부정기적으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단위는 가구 및 개인이며 조사구역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및 2005년 이후 신축아파트 지역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다. 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가장 규모가 큰 고용동향조사일 뿐만 아니라 고용 관련 기타 통계의 방법론 및 조사구역 설정에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통계라고 할 수 있다.

[표 3.1]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명칭	경제활동인구조사
작성기관	통계청
작성주기	매월
작성목적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조사내용 (작성내용)	- 조사규모 :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개인 및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범위 : 표본조사구 약 32,000가구 내에 상주하는 자로서, 매월 15일 현재 만 15세 이상인 자(현역군인 및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소년원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경비교도대 제외) - 조사항목 : 인적사항,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인구와 관련된 35개 항목
특징	- 조사방법 : 면접타계식(CAPI방식)
통계명칭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작성기관	통계청
작성주기	매년 : 청년층(5월), 고령층(5월), 비임금근로자(8월) 부가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3월, 8월)
작성목적	청년층, 고령층, 비정규직 근로자 등 근로취약계층과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부가조사를 통해 이러한 계층의 노동공급, 노동투입,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의 활용정도를 파악하여 고용창출, 직업훈련, 소득증진 등을 위한 정부정책 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심층 자료 제공
조사내용 (작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규모 :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개인 및 가구 - 조사범위 :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대상 중 부가조사 대상자(청년층, 고령층,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 조사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 근로기간, 일자리지속여부, 근로의 형태, 사회보험 가입여부, 복지혜택 수혜여부, 임금형태, 노조가입여부, 교육훈련여부 2) 청년층 : 최종학교 관련정보, 직업교육 정보, 재학중 직장경험, 일자리 경험횟수, 첫 일자리 고용형태, 첫 일자리 퇴직사유, 최종학교 전공과의 일치 여부, 미취업 기간 정보 3) 고령층 : 퇴직나이, 퇴직이유, 구직활동 정보, 직업교육여부, 장래근로에 대한 희망 4) 비임금근로 : 사업자금 조달방법,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국민연금 가입여부, 향후 사업자금 필요금액
특징	- 조사방법 : 면접타계식(CAPI방식)

『지역별고용조사』는 시군구 지역 수준에서의 실업률과 고용률 등 주요 고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약 175,000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는 조사이다. 이 조사의 배경은 시군구별 고용구조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가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시군구 단위의 지역 고용통계를 직접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통계청에 지역 고용통계 생산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는 점 등이다. 조사대상은 조사대상주간에 국내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인 자이며 현역군인, 공익근무요원, 교도소 수감자는 모집단에서 제외된다. 조사대상기간과 조사기간은 매년

10월이다. 이 조사를 통해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의 세분화된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 통계와 시·도별 고용구조 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를 생산·제공하고 있다.

지역별고용조사에 대한 현황은 [표 3.2]에 요약되어 있다. 지역별고용조사는 매년 실시하는데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현황 파악에 보다 중점을 둔 고용조사이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가 2010년 기준으로 약 1,629개 조사구의 32,00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이 지역별고용조사는 2009년 기준으로 8,800개 조사구의 175,000가구를 표본으로 하고 있어서 연 단위 조사인 반면 보다 세부적인 지역별 고용현황에 대한 현황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보완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표 3.2] 지역별고용조사

통계명칭	지역별고용조사
작성기관	통계청
작성주기	1년
작성목적	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단위의 세분화된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생산제공, 시도별 고용구조 분석자료 및 산업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를 생산제공
조사내용 (작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규모 :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개인, 가구 - 조사범위 : 조사대상기간을 기준으로 조사대상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 단, 현역군인, 경비교도대, 전투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교도소 수감자 제외 -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적사항 : 가구원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혼인상태 2) 확인항목 : 주된활동상태, 취업여부, 일시휴직여부, 구직여부 3) 취업자 : 부업여부, 취업시간 4) 실업자 : 취업가능성, 구직경로 및 방법, 구직기간 5)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희망여부, 비구직사유, 지난 1년간 구직경험여부 6) 희망직업(일) : 희망산업, 희망직업, 희망종사상지위, 희망최소임금 7) 직장 특성 : 전직유무 및 이직시기, 이직사유, 산업(주된활동, 직장소재지), 직업(하는 일, 일한 부서명), 종사상지위, 근속기간, 월평균소득, 고용계약기간, 직업교육여부
특징	- 조사방법 : 면접 및 인터넷 조사

중앙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이러한 통계 외에도 최근 들어 지방자치가 활발해지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작성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도

실시되고 있으며 그 현황은 [표 3.3]에 요약되어 있다. 이들 통계는 각 지방자치단체 내 고용을 포함한 경제활동인구의 현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따라서 통상 분기별로 조사가 실시되어 지역별 고용조사에 비해 자주 실시되고 있다. 용어의 정의나 조사방법론 등은 대부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것을 원용하고 있으며 표본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사용되는 표본 조사구를 포함하여 더 많은 수의 조사구를 포함하고 있다.

[표 3.3]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고용동향 통계현황

통계명칭	최초작성연도	작성기관	작성주기	작성목적	조사내용	특징
경기도시군별 고용조사	2007	경기도	분기	각 행정구역 내 인구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형식을 따름	조사방법 : 면접타계식
경상남도 창원시 경제활동인구조사	2006	창원시	분기			
군산시 경제활동인구조사	2008	군산시	반기			
전주시 경제활동인구조사	2006	전주시	분기			

나. 특정한 성격을 갖는 집단에 대한 고용동향 조사

위에서 살펴본 일반적 가구나 개인에 대한 고용동향 조사 외에 특정한 성격을 갖는 집단에 대한 고용동향을 조사하는 통계로서 정보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강원도취업여성실태조사, 여성관리자패널조사, 이공계인력국내외유입및유출실태조사의 5종이 있다. 이들은 잠재적 모집단을 특정부문으로 제한시킨 상태에서 그 집단 내의 고용동향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위에서 설명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등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다. 이들 통계는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3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1종, 협회 및 기타기관에서 2종을 작성하고 있다.

먼저 여성가족부에서 작성하는 여성관리자패널조사는 [표 3.4]에 그 현황이

[표 3.4] 여성관리자패널조사

통계명칭	여성관리자 패널조사
작성기관	여성가족부
작성주기	2년(2008년 이후)
작성목적	여성관리자의 근로실태와 경력개발, 기업 내 근로여건 및 관리직 진출에 있어서의 관행이나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여성의 관리직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축적
조사내용 (작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규모 :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개인 - 조사범위 : 한국신용평가(주)의 KIS기업데이터(2006)에 수록된 기업 중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업, 사업서비스업 소속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기업 및 그 기업에 존재하는 대리급 1년차 이상 여성 관리자 - 조사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직자 : 직장 변경사항, 현직장 사항, 인사 및 경력개발, 취업 및 교육 등 2) 비취업자 : 직장 변경사항, 퇴직 전 상황과 현재의 생활, 일자리 복귀 계획 등 3) 창업자 : 직장 변경사항, 퇴직 전 상황과 현재의 생활, 창업 관련 등 4) 기타근로자 : 직장 변경사항, 퇴직 전 상황과 현재의 생활, 현재 직장 관련 등 5) 근속자 : 현 직장사항, 인사 및 경력개발, 취업력 및 교육, 가족관계 등 6) 남성관리자 : 현 직장사항, 인사 및 경력개발, 취업력 및 교육, 가족관계 등 7) 인사담당자 : 기업 일반현황, 인적자원관리, 인력현황 등
특징	- 조사방법 : 면접자계식/타계식 병행

요약되어 있다. 여성관리자패널조사는 그 모집단이 100인 이상 영리법인 중 제조업, 금융/보험/증권업, 사업서비스업, 도소매업에 근무하는 대리급 이상 여성관리자 및 남성관리자로서 특히 여성관리자라는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통계는 2007년부터 작성을 시작하였으며 2007년, 2008년은 1년 단위로 작성하였다가 2008년 이후에는 2년단위로 작성한다. 여성관리자패널조사는 여성관리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 경력, 훈련 등 조직 내에서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측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¹⁸⁾

아래 [표 3.5]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작성하는 이공계인력국내외유입및유출실태조사의 현황이 요약되어 있다. 이 통계는 대한민국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거하여 승인통계로서 작성되고 있으며

18) 여성관리자패널조사는 2010년부터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항목 등에 있어 변경이 발생하였다 (부록 참조).

2006년부터 3년주기로 작성되고 있다. 관련법에 의하면 이공계 인력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 그 해외 유입과 유출 실태를 조사하여 “이공계인력수지 지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지표가 이공계인력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공계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표 3.5] 이공계인력국내외유입및유출실태 조사

통계명칭	이공계인력국내외유입및유출실태조사
작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작성주기	3년
작성목적	경제 및 인적자원의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서 인력의 국제이동이 증가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국가경쟁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공계인력에 대한 국내외 유입 및 유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고급인력의 유출, 유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조사내용 (작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규모 : 표본조사 - 조사 단위 : 연구소, 기업체 - 조사 범위 : 국·공립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 83개, 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체 7,368개 - 조사항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출부문 : 연구 인력의 해외유출 여부, 최근 3년간 해외로 유출된 정규직 연구인력의 성별, 연령, 학위, 전공, 경력 등 개인별 현황, 해외로 이동한 정규직 연구 인력의 유출국가 및 주요 진로, 해외 유출 사유, 해외유출로 인한 기업 및 연구소의 애로사항 경험 여부 및 주요 애로사항 2) 유입부문 : 연구 인력의 해외유입 여부, 최근 3년간 해외로 유입된 정규직 연구 인력의 성별, 연령, 학위, 전공, 경력, 국적 등 개인별 현황, 해외에서 유입된 연구 인력의 유치활용사유, 해외에서 유입된 연구 인력의 채용방법, 해외연구인력 채용과정 및 채용 후 애로사항 3) 이공계 인력의 해외 유출·입과 관련하여 기업 및 국공립출연연구소의 대책 및 개선사항
특징	- 조사방법 : 우편(모사전송)

여성 고용현황에 대하여 강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는 통계로 강원도 취업여성실태조사가 있으며 그 현황이 아래 [표 3.6]에 요약되어 있다. 타지역에 비해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전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강원도 지역의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작성되고 있다. 이 통계를 2003년에 최초로 실시되어 매 4년마다 작성되고 있다. 이 통계의 모집단은 강원도내 취업여성이 있는 가구이며 2007년 기준으로 총 67개 조사구에 1,005가구를 표본으로 하였다.

이 외에도 방송통신산업 인력에 대하여 한국정보통신 산업협회에서 작성하

[표 3.6] 강원도취업여성실태조사

통계명칭	강원도취업여성실태조사
작성기관	강원도
작성주기	4년
작성목적	강원도내 노동시장 구조에 맞춰 여성노동력의 변화양상을 파악하고 여성의 고용안정과 고용조건을 개선을 통한 여성인력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조사내용 (작성내용)	- 조사규모 :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가구 - 조사범위 : 2005년 인구총조사의 강원도내 취업여성을 모집단으로 하여 67개 조사구의 1,005가구를 표본으로 선정, 해당가구의 15세이상 여성 가구원을 대상으로 함 - 조사항목 : 대상자 일반적 특성, 가족관계, 경제활동 정도, 자녀 보육 및 육아 관련 정보, 고용관련 정보, 근무조건, 복리후생과 보육 및 가사문제, 4대보험 가입여부 및 노동조합문제
특징	- 조사방법 : 방문면접방법을 사용함

[표 3.7] 방송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

통계명칭	방송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
작성기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작성주기	1년
작성목적	방송통신산업 인력 및 방송통신관련산업의 정보화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규모를 분기별로 파악하여 정부의 정책수립 지원과 기업의 장/단기 경영전략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조사내용 (작성내용)	- 조사규모 : 전수, 표본조사 병행 - 조사단위 : 사업체 - 조사범위 : 상시종사자수 1인이상 정보통신 사업체 및 상시종사자수 10인이상 타산업 - 조사항목 : 일반사항, 사업체 고용현황, 직종별 인력현황, 직무별 인력현황
특징	- 조사방법 : 전화, FAX, E-mail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조사

는 방송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가 1년마다 작성되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하에서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동향을 파악하는 보고통계 형태의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이 월단위로 작성되고 있다. 각각의 현황은 [표 3.7], [표 3.8]과 같다.

[표 3.8]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통계명칭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작성기관	고용노동부
작성주기	매월
작성목적	고용허가제에서의 외국인근로자 취업 추이를 파악하여 매월 업종별, 국가별 외국인력의 취업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고용관리 및 외국인력 수급계획(업종별 쿼터 결정 등)작성 기타 각종 외국인력 정책 결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조사내용 (작성내용)	- 보고 규모 : 전수 - 보고 단위 : 개인 - 보고 범위 : 전국의 고용허가제에 의한 취업자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용자 및 외국인근로자 - 보고 내용 : 외국인근로자의 제도별, 업종별, 월별 취업자수
특징	- 보고방법 : 고용지원센터, 법무부 및 취업교육기관에서 외국인고용관리 시스템(EPS)에 입력한 외국인근로자의 제도별, 업종별, 월별 취업자 수를 집계한다.

다. 기타 형태의 고용동향 조사

위에서 살펴 본 일반적 고용동향 조사와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 외에 고용동향에 대한 조사는 3종으로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과 최저임금 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가 있다.

『워크넷』은 1990년대 들어 고용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지원인프라를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구인업체와 구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구직·알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취업알선정보망으로 구축한 것이다. 워크넷은 1987년 5월 처음으로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수차례의 제도개선과정을 거치면서 1998년 11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Work-net서비스가 개시되었다. 2006년 고용·취업종합정보서비스 2차 사업이 완료되면서 구인정보허브시스템, 여성·장애인·단기일자리기업 워크넷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 결과 워크넷은 구인(구직)업무 전 과정을 on-line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다양한 일자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부족으로 인한 일

자리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직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임금, 직무난이도, 요구학력, 직업전망 등)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의 구직활동에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은 워크넷을 이용한 구인·구직자의 동향에 대한 보고통계로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매월 단위로 작성하고 있다. 이 통계는 전국 고용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시·군·구 등에서 입력한 자료를 워크넷 DB로 집계한 것이다. 따라서 이 통계의 수치들은 워크넷을 이용한 구인·구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노동시장 전체의 수급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통계 작성 현황에 대한 요약은 [표 3.9]에 나와 있다.

[표 3.9]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

통계명칭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
작성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작성주기	매월
작성목적	구인·구직 통계의 목적은 공공고용안정기관(PES:Public Employment Service)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산출되는 구직자, 구인업체, 취업실적 등에 관한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취업지원사업의 성과분석, 인력수급 상황보고, 노동시장 연구를 위한 통계인프라 축적 등 국가 고용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조사내용 (작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규모 : 전수 - 보고 단위 : 개인 및 사업체 - 보고 범위 : 워크넷(Work-Net)에 구인 및 구직을 신청한 구인업체 및 구직자로서, 매월 1일과 말일 기간에 등록이 마감된 자 - 조사 항목 1) 구인·구직 공통사항 : 성별, 연령별, 학력대별, 임금대별 구인인원, 구직자수, 취업건수 및 취업률 2) 구인인원 : 규모별, 산업별, 직종별, 근무지역별 구인인원 3) 구직자수 : 희망직종별, 희망근무지역별 구직자수 및 취업건수 4) 임금관련 : 학력별, 종사상지위별, 직종별 제시임금 및 희망임금
특징	- 보고통계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는 통계청 분류상에는 고용 분야가 아니라 임금 분야로 분류되어 있으나 고용 분야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통계이므로 본 진단통계에 포함되었다. 이 통계는 최저임금의 관련자인 기업과 근로자간의 다소 대립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그 경제적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단위로 조사되고 있다.

이 통계는 각 지방의 노동관서에서 작성되어 최저임금위원회로 집계가 되어 작성되고 있다. 그 작성 현황에 대한 요약은 다음의 [표 3.10]에 나타나 있다.

[표 3.10]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통계명칭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작성기관	고용노동부
작성주기	1년
작성목적	최저임금이 기업 경영과 고용에 미치는 효과, 사용자와 근로자가 실제로 느끼는 최저임금 수준의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향후 최저임금 심의 시 참고자료로 활용
조사내용 (작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규모 : 표본조사 - 조사단위 : 사업체 - 조사범위 1) 사업체 : 저임금근로자가 밀집해 있는 제조업, 도·소매업 등 주요 10개 업종의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3,000여 개 표본사업체 (* 표본사업체 : 최저임금 시급액의 1.5배 이하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 2) 근로자 : 동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업주 및 최저임금 시급액의 1.5배 이하의 10,000명 내외의 표본근로자 - 조사항목 1) 사업체 : 사업체특성(업종, 규모), 경영여건(매출액 등), 근로자특성별 고용규모,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조정 여부, 고용사유, 임금인상에 미친 영향, 임금대비 생산성 수준, 현행 최저임금 인상률의 적정성 여부 및 판단기준, 내후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 등 2) 근로자 : 인적속성(성, 연령, 학력, 직종 등), 가구특성(가구원수/가구주와의 관계), 고용형태, 현(전) 직장의 임금·지급방식·결정방식 및 내역별 근로시간, 직장이동 계획, 현행 최저임금 인상률의 적정성 여부 및 판단기준, 내후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수준 등
특징	- 조사방법 : 면접

2. 고용구조 조사

가. 일반적 대상에 대한 고용구조조사

고용구조에 대한 통계로서 그 대상이 특정 부문이 아니라 전반적인 고용구조에 대한 통계는 4종으로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의 2종을 작성하고 있으며 기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를, 한국노동

연구원에서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고용형태가 매우 다양해지고 이에 대한 고용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2008년부터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에 대한 사업체 수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매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중 32,000개 표본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조사항목은 고용형태별 근로일수,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 조사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모집단으로 활용하여 표본이 추출된다. 표본은 산업대분류, 사업체 규모별로 오차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있어 통계보고서상 하위분류별 자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시장의 임금구조를 조사하던 기존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가 이 조사로 통합되었다. 임금은 「월급여(정액+초과급여)」과 「연간특별급여」으로 구성되며, 「월급여」은 6월 기준이나, 「연간특별급여」은 1년간이 기준이다. 임금구조 분석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결과와의 시계열 연계를 위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규모의 상용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비상용근로자나 자영업자에 대한 임금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 근로자의 구분은 크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하며 그 중 비정규직은 더 세부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택/가내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로 파악하고 있다. 급여 또한 정액급여와 초과급여로 구성된 월급여와 연간특별급여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다. 그 작성 현황은 [표 3.11]에 나와 있다.

[표 3.1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통계명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작성기관	고용노동부
작성주기	1년
작성목적	근로자 1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영업주를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고용형태, 사회보험 등 각종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사업체 특성 및 인적 속성별로 파악하여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조사내용 (작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규모 : 표본조사 - 조사단위 : 사업체, 근로자 - 조사범위 1) 사업체 : 임금근로자 1인 이상 민간부문의 전 산업 중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30,132개 표본사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 2) 근로자 : 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중 추출된 근로자 - 조사항목 1) 사업체 : 사업내용, 사업체 형태, 경영형태, 전체근로자수, 장애인근로자수, 외국인근로자수, 노동조합 유무, 산재보험 가입여부, 주당 정상조업·영업일수, 기업 전체의 근로자수, 전년(2007년)도 연간 상여금 및 성과급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 근로자의 고용형태, 성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직종, 근속년수, 경력년수, 직급,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월급여액, 연간특별급여액, 사회보험 가입여부, 부가급부 적용여부 등
특징	- 조사방법 : 면접 타계식조사와 자계식(Fax, E-mail)조사 병행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는 사업체노동실태조사는 통계청 분류상에는 기업경영 분야로 분류되어 있으나 고용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본 진단대상 통계에 포함하였다. 사업체노동실태조사는 가공통계로서 매년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전국사업체조사 결과를 고용 및 노동 관련 항목에 맞게 가공한 것이다. 그 작성 현황은 [표 3.12]에 나타나 있다.

[표 3.12] 사업체노동실태현황

통계명칭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작성기관	고용노동부
작성주기	1년
작성목적	매년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를 가공하여 노동행정대상 사업체 및 종사자 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의 행정기

	준에 맞게 가공·집계하여 각종 노동행정대상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에 관한 통계자료를 제공
조사내용 (작성내용)	- 조사규모 : 전수조사 - 조사단위 : 사업체 - 조사범위 :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의 조사대상 사업체 중 상용근로자 또는 임시·일용근로자 또는 기타종사자 1인 이상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작성 ※ 1.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구성된 사업체는 집계대상에서 제외 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리되지 않은 자기소비성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산업분류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이 재직하는 사업체를 통계작성 대상에서 제외
특징	- 가공통계 방식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약어 OES)』는 산업 소분류(228개)와 직업 세분류(426개) 수준에서의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국가적 인적자원 수급정책을 위한 기본통계와 직업별 고용전망, 진로 선택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노동시장 정책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 중 취업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조사이고, 2001년부터 5만가구를 대상으로 시작된 본 조사는 2006년부터 표본을 7만 5천 가구로 확대하여 진행되고 있다.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는 노동정책의 입안과 추진 및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내실정에 맞는 보다 세부적인 고용구조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고 있다. 이 조사는 고용정책기본법과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있다. 그 작성현황은 [표 3.13]에 요약되어 있다.

[표 3.13]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통계명칭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작성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작성주기	1년(2001년시작)
작성목적	국내실정에 맞춘 현실적이고 세분화된 노동실태 및 고용구조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전체 취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직무 및 소득정보 파악을 통해 전체 노동시장의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또한, 노동시장의 산업 및 직업별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초로 인력자원개발을 총괄하는 정부, 학교,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정책지원,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중,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조사내용 (작성내용)	- 조사규모 :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가구 - 조사범위 : 전국 만 15세이상 취업자 가구 중 층화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의하여 추출된 7만5천 가구 내 거주하는 취업자를 대상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10% 표본조사구에서 추출된 3,750개 조사구로부터 각 20가구를 추출함 - 조사항목 : 인적특성, 학력 및 전공, 산업 소분류, 직업 세분류, 종사상 지위, 근속년수, 근로시간, 소득수준, 사업체규모, 이전직장 관련정보
특징	- 조사방법 : 면접타계식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8년을 시작으로 하여 매년 작성되고 있으며 기본조사와 부가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조사는 매년 반복되는 기본적인 질문들로 구성되며 부가조사는 매년 특별한 주제 혹은 특정 집단에 대해서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부가적으로 실시된다.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조사 대상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의 구성원이다. 이들에 대해 가구의 특성, 가정경제, 가구원 현황, 개별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현황, 임금 및 비임금근로자들의 일자리 특성, 경제활동상태의 동태적 변화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 작성 현황에 대한 요약은 [표 3.14]에 나와 있다.

[표 3.14] 한국노동패널조사

통계명칭	한국노동패널조사
작성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작성주기	1년
작성목적	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노동시장 이동 및 성과를 장기간 추적 조사하여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횡단면 자료만으로 불가능한 심도 있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내용 (작성내용)	- 조사규모 :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가구 - 조사범위 1) 1998년 : 1997년 고용구조특별조사의 표본가구를 바탕으로 도시거주 5000가구 및 만15세 이상 가구원 2) 1999년-2008년 : 1차년도 원표본가구 5,000가구 및 분가가구, 이들 가구에 속한 만15세이상 가구원

	<p>3) 2009년 : 1차년도 원표본가구 5000가구 및 분가가구, 이들가구에 속한 만 15세이상 가구원 + 2009년 추가표본 1,415가구와 이들 가구에 속한 만 15세이상 가구원</p> <p>- 조사항목</p> <p>1) 가구 : 가구의 인적사항, 가족관계와 세대간 경제적 교류 관련 사항, 주거 관련 사항, 자녀교육 및 보육 관련 사항, 가구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 등</p> <p>2) 개인 : 개인의 경제활동상태, 현재 하는 일의 고용상의 특성, 부가급여 및 복리후생, 근로시간 관련 사항, 직무만족도, 구직활동 및 희망하는 일자리의 특성, 구직시 어려움,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보험 수급관련 사항, 정규교육 관련 사항, 혼인상태, 생활만족도와 경제적 여건, 일자리 관련사항(일자리 형태 및 규모,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직업 및 산업, 노동조합, 구직활동 등)</p> <p>(* 기타 이슈의 시의성에 따라 부가조사 실시 - 청년층, 건강과 은퇴, 중고령자, 근로시간과 여가, 노동조합과 노사관계, 청년용, 고용형태, 교육)</p>
특징	- 조사방법 : 면접타계식

나. 특정 집단에 대한 고용구조조사

특정 집단에 제한하여 그에 대한 고용구조를 조사하는 통계로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 관한 실태조사, 청년패널조사의 5종이 해당된다.

먼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대졸자 집단에 대해 작성하는 통계인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와 청년패널조사에 대해 살펴본다. 각 통계에 대한 현황 요약은 [표 3.15], [표 3.16]에 나와 있다.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전국의 2~3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들을 대표하는 단기패널조사로 교육과 노동시장간의 연계성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이다. 대졸자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 약 20개월 후에 1차조사가 이루어지며 1차조사 이후 2년이 경과한 후 1차조사 대상자들에 대하여 1회의 추적조사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졸업자들에 대해서 학교유형별, 학과(전공)별, 지역별 노동시장 진입 효과 및 노동이동경로, 직업이동경로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다.

[표 3.15]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통계명칭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작성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작성주기	1년
작성목적	대학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업(직장)이동경로를 (추적)조사하여 교육-노동시장간 신뢰성 있는 인력수급정보 제공 및 인력수급불일치 완화 도모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조사내용 (작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규모 :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개인 - 조사범위 :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기준으로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졸업자를 대상 - 조사항목 : 현직장 일자리 정보, 첫직장 일자리 정보,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정보, 학교생활, 재학 중 경험한 일자리, 취업준비, 취업관련 교육 및 훈련, 향후 진로, 인적사항
특징	- 조사방법 : 대면면접조사(면접타계식)

청년패널조사는 조사시작시점에서 만 15세~29세('07년 기준)인 청년을 대상으로 표본을 구성하여 청년층의 노동시장 현황과 고용구조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매년 작성하는 패널조사이다. 2001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1차 웨이브(YP2001)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기존패널의 연령증가에 따라 현재 청년층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저연령층 보완 등 새롭게 패널을 구성(YP2007)하여 진행중에 있다. 또한 중/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취업자, 미취업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유형별로 설문을 실시하여 청년층의 특성에 따른 교육 및 고용, 취업준비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표 3.16] 청년패널조사

통계명칭	청년패널조사
작성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작성주기	1년
작성목적	2007년 기준 만 15~29세 해당 청년층의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과정(School to Work) 및 노동시장 진입 후 이동경로(Career Path) 단계별 정보 제공 - 장기 추적조사를 통한 청년층 노동력 수급 불균형과 고실업 해소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통계 구축 및 청년고용촉진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제공 - 또한 직업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을 위한 상담자료 및 교육/고용안정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내용	- 조사규모 : 표본조사

(작성내용)	- 조사단위 : 개인 - 조사범위 : 2001년(YP2001), 2007년(YP2007) 기준 만 15세-29세 청년층 - 조사항목 : 교육력, 아르바이트 및 휴학, 직업력, 구직활동 관련 정보, 진로, 사교육/해외연수/문화적 자본 관련 정보, 직업교육훈련 및 자격증, 정부청년실업대책, 인적사항
특징	조사방법 : 대면면접조사(면접타계식)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는 전국의 산업기술인력을 대상으로 현재인력과 부족인력을 파악하고자 작성하는 통계이다. 이 때 산업기술인력이란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이공계 전공자로서 사업체에서 연구 개발 및 기술업무, 관리직, 법률직, 디자인직, 기술영업직 등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이다. 전국의 표본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의 일반현황, 현재인원, 부족인원, 신규채용 및 퇴사인력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작성 현황은 [표 3.17]에 나와 있다.

[표 3.17]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통계명칭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작성기관	지식경제부
작성주기	1년(2003~)
작성목적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현재인원과 부족인원을 산업별, 직종별, 지역별, 규모별 등으로 조사하여 산업기술인력의 수급동향을 파악, 산업기술인력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조사내용 (작성내용)	- 조사규모 : 전수, 표본조사 병행 실시 - 조사단위 : 사업체 - 조사범위 :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결과중 제조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중 근로자 1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전국 사업체 중 추출된 표본사업체 - 조사항목 1) 조사사업체 일반현황 : 사업체명, 설립년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공단입주 유무, 업종, 주요 생산품, 부품소재업체 유무 및 부품소재 품목, 사업체 유형, 매출현황, 종업원 현황, 연구개발부서 유무 및 인력 규모 2) 현재 고용 중인 산업기술인력 관련 현황 : 산업별·직종별·지역별 현재 인원(※세부분류 : 성별, 고용형태별, 연령별, 외국인 인력, 1인 연간 급여액, 학력별, 전공별) 3) 산업기술인력 부족 현황 :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부족인력 및 부족률(※세부분류 : 성별, 채용인력 및 퇴사인력, 1년 이내 채용예상인력, 고용형태별, 학력별, 전공별)
특징	- 조사방법 : 기본적으로 면접자계식조사, 필요한 경우 우편, 전화, 인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와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¹⁹⁾ 먼저 매년마다 작성하는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여성과학기술인의 규모와 고용특성, 처우와 복지현황을 파악한다. 이 조사는 기존에 작성되고 있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한 거시통계자료분석과 기관조사를 통한 남녀 과학기술인력의 활용 현황에 대한 조사로 구성된다. 이 때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에 의해 규정되는 대상이다. 그 작성 현황에 대한 요약은 [표 3.18]에 나타나 있다. 또한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는 기관별 조사와 개인별 조사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관별 조사는 이공계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별 조사는 이공계 박사학위자 등 주요이공계인력의 실태에 대한 조사이다. 이 조사 현황은 [표 3.19]에 나타나 있다.

[표 3.18]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통계명칭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작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작성주기	1년(2005년 10월~)
작성목적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 활용에 대한 정책수립 및 성과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지원을 위한 성인지적 실태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적합성과 대응성을 제공하고 조사결과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의 객관성과 실효성 확보
조사내용 (작성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규모 : 전수조사(2008년부터) - 조사단위 : 기관 - 조사범위 : 이공계대학(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공공연구기관(국공립, 정부출연, 정부투자, 비영리), 민간기업연구기관(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 조사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사항 : 조사대상 기관의 명칭, 주소, 규모, 지출예산 2) 고용 및 채용 현황 : 정규직/비정규직 연구개발인력의 규모, 신규채용한 연구개발인력, 신규인력채용시 여성우대 관련공지 및 연간계획 수립 여부, 신규채용자 평균연봉, 신규채용시 선호 전공분야, 이직규모 및 사유

	3) 보직 및 승진현황 4) 연구개발활동 5) 근무환경 : 복지제도 현황, 영유아 보육지원시설 및 제도현황, 보육지원시설 설치 및 수요 여부
특징	- 조사방법 : 1) 거시통계자료 분석(※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취업통계연보 및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재분석함) 2) 직접실태조사 : 우편조사가 기본(off-line, on-line 병행)

[표 3.19] 이공계인력 육성 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통계명칭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작성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작성주기	1년(개인별), 3년(기관별)
작성목적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활용 현황과 복지 실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한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 생성, 주요이공계인력의 육성·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를 진단하여 고급이공계인력의 육성과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련 정책연구의 활성화에 기여
조사내용 (작성내용)	- 조사규모 : 표본조사 - 조사단위 : 기관, 개인 - 조사범위 1) 기관 : 전국 대학 본교와 분교 395개, 전국 자연과학분야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 등 286개,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과 대기업 2) 개인 : 학술진흥재단 연구인력 DB, 산업인력공단에 등록된 기술사 - 조사항목 1) 기관 : 정규직 이공계인력 고용현황, 학위별 채용기준 및 방법, 수요충원 우선 순위, 이직율, 학위별 급여수준, 학위별 직무배치 및 순환, 교육훈련제도 보유여부 및 학위별 주요 교육훈련제도, 복지제도 보유여부 및 주요 복지제도, 우수 이공계인력 보상방법 등, 비정규직 박사연구원 현황, 비정규직 박사연구원 채용방법, 박사연구원 급여수준, 교육, 복지, 연구성과보상 2) 개인 : 고용실태, 경력개발 및 관리 현황,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활용 실태, 인적사항
특징	- 조사방법 : 면접조사, 온라인조사, 이메일, 전화조사

제2절 국제기준과의 비교

1. 적용범위

19)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는 2010년 조사기간과 조사항목에 있어 상당한 전도의 변경이 발생하였다 (부록 참조).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등 가구조사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한 개념과 정의를 대부분 수용하여 조사 및 분석시에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률, 실업률 등 고용지표들은 Global Standard ILO 권고안에 따라 다른 나라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작성하고 있다. 즉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고용률,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작성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2003년 1월에는 현재의 틀로 조사표 개편을 실시하였는데, 부업유무를 파악하여 취업시간을 주업과 부업으로 구분하였고, 실업자에 대한 취업제의 여부와 미취업 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활동상태를 취업준비, 쉬었음 등을 추가하여 보다 상세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5년 7월에는 실업률의 작성기준을 『구직기간 4주』로 전환함에 따라 현실성을 제고하였고, 국제비교도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표 3.20] 주요 지표의 조사 기준

지표	조사 기준
고용률	○ 노동가능인구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취업자/15세이상인구) ○ (취업자) 수입을 목적으로 대상기간동안 1시간이상 일한 사람 (15세이상인구) 만15세이상 인구중 군인, 재소자 등 제외 인구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실업자/{취업자+실업자}) ○ (실업자) ① 조사대상주간(15일 포함 주)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②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③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
비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 인구중 취업·실업 이외의 자로서, 육아, 가사, 연로, 취업준비 중인 사람

[표 3.21] 주요 국가의 노동력 개념 비교

	ILO	EU	한국	미국	일본
최소연령	일정연령이상	일정연령이상	15세이상	16세이상	15세이상
대상기간	1주간	1주간	1주간 (15일이 포함된)	1주간 (12일이 포함된)	1주간 (월말이 포함된)
·취업자	1시간이상	1시간이상	1시간이상	1시간이상	1시간이상
·구직활동대상기간	일정기간	4주간	4주간	4주간	1주간

산업별직업별고용구조조사는 미국의 OES에 준하여 세분산업별, 세부직업별 종사자수를 파악하고 있다.

2. 국제기구 자료 제공 및 미제공 자료의 분석

아직 국제기준에 맞게 작성하지 못하는 부분은 노동생산성, 근로시간, 단위 노동비용 통계 작성 부문이다. OECD는 분기별 총노동비용을 국민계정(피용자보수)을 활용하여 계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임금을 활용하여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병가, 조퇴 등 임금이 지급되었으나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되면 실근로시간(actual working hours)을 산정할 수 있다. LFS(유럽), CPS(미국)에서는 손실근로시간을 파악하는 문항이 있으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없다.

[표 3.22] OECD의 주요 고용 관련 조사 항목

지표	산정(정의)	비고(한국)
■노동력(가구조사) 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 노동력통계	·인구, (산업별)취업자, 실업, 자영자 등	○
·노동력 통계(MEI)	·노동력, (산업별)취업자, 실업자(HUR포함) 등	○
·전일제, 시간제 근로	·part-time employment : 주업의 평소근로시간 30시간 미만자 ※전일제는 30시간 이상자	○ (주업+부업,의 실근로시간)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인구(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시간제근로자)	○
·경제적 사유로 인한 단시간 근로	·사업부진, 휴업, 기술적 이유 등으로 평소보다 적게 근무한 근로	○

	자	
·상용, 임시 근로자	·주업의 근로계약형태에 기초한 상용/임시직 근로자	○
·근속년수	·근속기간별 취업자(임금근로자, 자영업자)	○
·근로시간	·1인당 연간(실)근로시간 ·주업의 주당평균근로시간	○ <연간(실)근로시간> ※취업자:OECD NA Questionnaire ※임금근로자: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구직기간별 실업자	·평균구직기간 ·구직기간별 실업자	○ ○
·구직단념자	·취업상태에 있지않은 자로, 일을 원하지만 다양한 사유로 인해 할 수 없는자	○
▪단위노동비용	·산출물 한 단위당 평균노동비용 = 총노동비용/실질산출량	○
▪시간당 임금 (Hourly Earning, 제조업 등)	·시간당 평균임금(earning) ※2005=100으로 지수화	○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상용10인이상 사업체)
▪(등록)실업자수(registerd unemployment) ▪빈 일자리(unfilled job vacancies)	·행정DB상의 실업자(구직자) 및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	△
▪노동비용		
·단위노동비용(분기): ①단위노동비용	·산출물 한 단위당 평균노동비용 = 총노동비용/실질산출량	○
②총노동비용(TLC)	·임금근로자에 대한 분기별 총보수(COE,QNA)를 연간자료에 벤치마킹 ※연간 : 피용자보수(QNA)*자영업주조정비	○ (QNA상의 COE부재, 대리변수(상용직 임금*취업자수)활용
③ 실질 산출량 (Real Output)	·불변가격 부가가치(SNA93)	○
④ 단위 노동 비용 지수 (ULC)	·단위노동비용 (2005=100으로 지수화)	○
·단위노동비용(연간): ①단위노동비용	·산출물 한 단위당 평균노동비용 = 총노동비용/실질산출량 ※ANA상의 총노동비용과 실질산출량을 활용하여 산정	○
②단위노동 투입당 노동생산성	·실질산출량/총노동투입 ※노동투입은 '총근로시간' 활용	○
③단위노동 투입당 보수(Labour Compensation)	·피용자보수/총근로시간(근로자수)	○
④(인당/시간당) 보수(PPP\$)	·(PPP조정)달러환산 노동보수/근로자 수(총근로시간)	○

⑤ 환율조정된 단위노동비용	·달러로 환산한 총노동비용(TLC)/실질산출량	○
⑥ 노동소득비율	·총노동비용(TLC)/명목산출량	○
■ 소득(임금)		
·총 소득 십분위율	·저소득비중: 중위소득 2/3미만 5분위배율, 10분위배율 등 산정	○
·시간당 임금(Hourly Earning, 제조업 등)	·평균임금/근로시간 ※임금은 초과급여, 정기적 발생 현금급여도 포함	○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상용직 10인이상
·전일제 근로자의 평균 소득 대비 최저임금 비율	-	○
·최저 임금	·자국통화기준 최저임금수준	○
·실질 시간당 임금	·미 달러(\$US)환율, PPP조정된 시간당임금을 달러(\$US)로 제공	○
■ 고용보호		
·고용보호 경직도(전체, 정규직, 임시직, 대량면직)	·해고 및 임시적 계약 사용에 대한 경직도의 종합지표 (Version1~3) ※ 정규 · 임시고용, 대량해고 고려	○ (OECD questionnaire의 회원국응답)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표 3.23] ILO의 주요 고용 관련 조사 항목

지표	산정(정의)	비고(한국)
■ 생산가능 및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학력, 연령, 산업, 종사상 지위, 직종)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실업자	경제활동인구 조사
■ 취업 ·취업자(산업, 직업,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산업, 제조업)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근로자(paid employment)+자영업주(self-employment, 무급가족종사자 포함) ·조사대상기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자 ※일시휴직자 포함 ·총 공공부문근로자=일반정부부문근로자+국유기업근로자 ※일반정부부문근로자 : 정부단위+사회보장기금+비영리단체를 포함	경제활동인구 조사 ×
·주당 근로시간별 취업자수	·'05년 각국통계청에 의한 'ILO부가조사'로부터 작성	좌동
■ 실업 ·실업자(연령, 학력, 산업, 직업)	·취업상태에 있지 않은 자로, 조사대상기간 일을 할 수 있었고 '구직활동'을 수행한 자	경제활동인구 조사
■ 근로시간 ·근로시간(산업, 제조업) ·주당근로시간(비농산업, 제조업)	·실근로시간(hours actually worked)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10인이상(임

		시일용포함)
·159개 직종별 임금 및 근로시간(ILO 10월조사)	·49개 산업의 159개 직종에 대한 임금 및 근로시간에 대한 연간조사(ILO 10월조사)	좌동
·근로시간별 취업자 분포	·'05년 각국통계청에 의한 「ILO부가조사」로부터 작성	
■임금		
·임금(산업, 제조업)	·(산업별) 월평균임금 ※ earning : 근로자의 총보수로 임금, 근로하지 않은 시간(공휴일 등)에 대한 보수, 보너스 등을 포함 ※ wage rate :기본급 및 정기적 수당은 포함하나 초과급여, 성과급 등은 제외함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임금(비농산업, 제조업)		※상용직 5인, 10인이상(임시일용포함)
·159개 직종별 임금 및 근로시간(ILO 10월조사)		ILO 10월조사
■노동비용		
·제조업의 노동비용	·노동비용(Labour costs) = 근로시간에 대한 보수, 근로하지 않은시간에 대한 보수, 사회보장지출, 교육훈련비용 등을 포함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가구소득특성(지출계층)	·지출계층별 가구원수, 가구규모, 여성가구주비중, 월평균 가구소득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구지출계층분포	·가구소비지출, 비소비지출별 월평균가구지출	
·가구분포(가구주 연령, 가구크기)	-	
·가구소득분포(소득원천)	·근로소득, 자영업자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기타소득 분포	
·가구분포(가구인원, 가구주성별)	-	
·빈곤선 및 소득(지출)분포	<빈곤선> ·빈곤 측정을 위한 척도로 절대적빈곤선, 상대적빈곤선 등이 산정될 수 있음 ※빈곤측정 : 빈곤율(빈곤선 아래의 비중), 빈곤갭(gap) 지수, 빈곤의 심각성 등의 척도 <소득(지출)분포> ·소득(지출)분포 : 10분위, 5분위 ·소득(지출)불평등 : 지니계수로 측정	
■국제 노동이동		
·거주인구(성별, 국가별)	·각국의 인구센서스 및 가구조사, 행정DB자료 등을 활용하여 산정	(출입국통계, 인구추계,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을 활용)
·취업인구(성, 국가, 산업, 직업, 종사상지위)		
·유입인구(성, 국가, 산업, 직업, 종사상지위)		
·유출인구(성, 유출국가)		

자료: 고용노동부 내부자료

미국의 OES(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조사는 농업을 제외한 전국의 기업체(농업 제외) 대상 표본조사이다(단, 250인 이상 규모의 기업체

는 전수조사이다). 표본 크기 : 120만 기업체(1년에 20만개 Panel에 대해 2번조사)이고 조사주기는 3년 단위이다. 표본은 고용보험데이터에서 가지고 온다. 미국의 OES에서 종사자는 전일제 혹은 파트타임 근로자, 임금을 받는 휴직자, 파견직 근로자, 월급제 고용주 등을 포괄하고, 경영자, 사장(주인), 동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없는 휴직자, 임금대장에 없는 계약직 및 임시직 등을 제외한다. 종사자수는 QCEW(Quarterly Census of Employment and Wage)를 활용하여 보정한다. 임금은 기본급, 총임금, 상여금으로 구성되며, 위탁 및 생산보너스, 사례금, 온콜페이(on-call pay)를 포함한 기본급여유, 생계비 수당, 보증금, 위험부담금, 장려금이 포함된다. 다만, 체불임금, 임시적임금, 초과근무수당, 퇴직금수당, 차액(shift differentials), 불로소득, 부가소득의 고용주 비용(Employer cost of supplementary benefits), 수업료 환불(tuition reimbursements) 등은 제외된다. OES 조사결과 산출되는 통계는 특정 직업에서의 산업별 종사자수 top10과 임금 top10, 직업세분류별 종사자수, 시간당평균임금, 연평균임금, 시간당임금 4분위수, 연평균임금 4분위수, 상대표준오차 등이다. OES는 인력수급전망, 외국인 노동력 인증 프로그램(Foreign Labor Certification Program)에 임금정보제공, 미국 노동시장정보시스템 데이터 제공, 미국경력정보망(America's Career InfoNet), 인력자원전문가, 학생, 구직자, 경력상담자, 안내자, 가이드, 학계연구자 등에 활용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는 미국의 OES와 달리 사업체조사가 아니라 가구조사로 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산업 구조가 다르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으며, 취업자 중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30%²⁰⁾를 넘기 때문이다. 기업체단위로 조사(미국과 동일한 조사)할 경우 상당수의 비임금근로 형태의 취업자가 누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취업자 고용형태별 산업구조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가구조사가 적합하다 판단하였다. 따라서 종사자수도 미국의 OES가 자영업을 제외하고

20)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 비중이 34.6%임(한국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2005)

있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는 자영업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나머지 사항은 미국과 유사하다.

[표 3.24]미국 OES와 한국의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비교

	미국의 OE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한국의 OES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모집단	전국 사업체	전국 취업자
조사대상	5인 이상 사업체 임금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대상(농가 및 자영업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제외)	가구원 중 15세 이상 취업자
조사단위	사업체	가구
표본	120만 (1년에 20만개 기업패널 2번조사)	2001~2005년 : 5만 가구(7만여명취업자) 2006년부터 : 7만 5천 가구(10만여명취업자)
표본 추출틀	주별 실업보험 데이터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인구센서스(자료갱신주기 : 5년)
표본추출	지역*산업층(NAICS)에서 크기확률비례(PPS) 표집	지역 층에서 크기확률비례(PPS) 표집
조사주기	3년 주기	매년
조사방법	우편조사	가구방문 면접조사
주요항목	산업별 직업, 임금, 종사자수	산업(228), 직업(426), 임금, 최종학력
특징	직업세분류별 고용인원 파악에 중점	직업세분류 수준에서 고용인원, 임금수준
시작년도	1970년	2001년
임금보정	하고있음 (임금을 범주형태로 조사하고, 조사주기가 3년으로 인해 시기적 차이를 감안한 보정작업)	안하고 있음 (임금을 자기기업식으로 응답받고 있어 과소추정경향) ※OES조사결과자료 안정화 방안 TFT 구성·운영('06.12)
종사자수 보정	하고있음 (조사주기로 인한 보정)	안하고 있음 (지역, 성, 산업별 가중치 보정작업만 하고 있음) ※OES조사결과자료 안정화 방안 TFT 구성·운영('06.12)
추정치	직업세분류별 시간당평균임금, 연평균임금, 종사자수	직업세분류별 종사자수, 월평균임금(산업소분류별로도 보여줌)
직업코드	SOC(대분류 23, 세분류 800개)	KECO(대분류 7개, 중분류 23개, 세분류 429개)
자영업자 비율	7.1%(2003년)	26.5%('06.10월 경찰자료) 25.0%('05년 OES 결과자료)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경제활동인구조사나 지역별고용조사 등이 ILO나 OECD 등 국제기구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수요를 반영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항목이 많이 있다.

우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소득과 자영업 경제활동에 대한 조사이다. 임금, 근로시간, 노동이동 등 자영업자에 관한 전반적인 경제활동 통계가 거의 부재하며 우리나라의 자영업 시장의 특성 상 소득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가 패널자료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동경로조사나 정규직-비정규직 간 노동이동 등을 조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편 전달 직장을 이직하였는가의 여부만 파악하여도 이직률에 관한 지표를 어느 정도 생성할 수 있지만 이 조사항목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실업률 보조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구직 단념자 등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면 노동력 저활용지표(ILO 권고)와 대체실업률(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 생성가능할 것이다.

고용 정책에서 '지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시군별로 생산되는 통계는 년 1회 생산으로 적시성이 다소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별고용조사가 유일하나 조사주기 확대가 필요하다.

제 3 절 통계의 역할, 정책과의 연계성 및 한계

1. 고용통계의 역할

가. 고용통계의 역할에 따른 분류

적절한 고용정책의 수립을 위해서 노동력의 동향 및 인력수급에 대한 정보와 근로조건 및 사회·경제적 환경 등 인력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제도적 요인들에 대한 정보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가장 먼저 적절한 고용정책의 수립은 고용동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서부터 출발한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은 통계는 근로자 특성별, 산

업별, 지역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의 규모와 추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 정도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고용동향 관련 통계는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장단기 인력수급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노동력에 대한 수요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노동력의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은 상당 부분 장기 인력수요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결여한 가계 수준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경직적인 교육·직업훈련 시스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사회정책적 차원에서 볼 때 인력에 대한 장단기 수요와 공급의 예측은 매우 중요하다.

임금 이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노동의 공급과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등과 같은 고용동향을 다루는 통계들은 전국의 모든 종류의 노동력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고용동향과 고용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인력수급이나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특정한 계층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취업상 장애요인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미시적인 수준에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 근로자 계층들에 대하여 맞춤형 고용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근로자 특성별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실태조사들은 일반적인 고용동향 조사들에 비하여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그 조사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고용정책과 고용통계 사이의 관계는 고용정책의 내용 상의 측면을 통해서 살펴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고용정책의 대상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편으로는 일반고용통계와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특성을 지니는 근로자 집단이나 특정한 지역에 초점을 맞추는 근로자 특성별 및 지역별 고용통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고용통계는 지역이나 근로자 특성과 관련 없이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계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이 전체 노동력을 대상으로 고용

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가 여기에 속한다. 물론 일반고용통계들도 지역이나 근로자 특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표본 수의 부족과 변수의 제한 등의 한계로 인하여 세분화된 분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여성 근로자, 청년 근로자, 이공계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근로자 집단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통계들은 고용정책에서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근로자 그룹에 대한 맞춤형 고용정책의 개발이나 혹은 경제환경 및 고용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라 주요한 정책적 이슈로 떠오른 정책분야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통계들은 일반고용통계와 비교할 때 한편으로는 표본의 확대를 통하여 각각의 세부그룹에 대하여 충분한 관측치를 확보하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사문항을 보다 세분화하여 대체적인 고용의 동향을 뛰어넘은 고용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고용동향 통계는 전국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수준이고, 지역별 고용정책의 수립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방의 경우 고용시장이 사실상 시·군·구와 같은 소지역 단위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같은 고용동향통계는 월별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표본을 크게 유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러한 소지역 단위에서의 고용동향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조사 빈도가 낮더라도 활용 가능한 소지역 단위의 고용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하다.

[표 3.25] 고용정책과의 관계에 따른 23개 진단 대상 통계의 분류

	일반	특성별	지역별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 용동향**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경기도시군별고용조사 경상남도창원시경제활 동인구조사 군산시경제활동인구조 사 전주시경제활동인구조 사

인력수급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 동향**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 사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 사 방송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 사	지역별고용조사*
근로실태	사업체노동실태현황 한국노동패널조사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 에관한실태조사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 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청년패널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이공계인력국내외유입및유출 실태조사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 조사 여성관리자패널조사	강원도취업여성실태조 사 대구경북여성인적자원 개발실태조사

* 하나의 통계가 두 가지 이상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 행정자료

나. 패널조사 및 행정자료의 역할

1) 패널자료

진단대상 통계들 중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청년패널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및 여성관리자패널조사 등이 패널조사이다. 또한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중 개인조사 역시 패널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일회성조사인 횡단면조사는 한 번에 많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몇 가지 문항에 대해 정보를 획득하는 반면에 패널조사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경로추적에 관심을 갖는다. 이때 패널조사는 응답대상자를 동일한 코호트(cohort)로 구성하되, 관심을 갖는 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유의미한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추적 관점에서 응답자 관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 하지만 패널조사는 전년도 조사 자료와의 연계, 논리적 오류의 점검, 그리고 직업 또는 산업 등이 포함된 조사자료라면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대상자 분류 등의 문제로 인해 횡단면 조사와 달리 시의성 있는 자료 생산에 상

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1993년에 대우패널이 최초로 국내에 도입된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한국노동패널을 제외하고는 패널조사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조기 종료된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도 다양하고 특성화된 계층을 대상으로 패널조사가 진행되거나 기획되고 있는데, 패널조사의 본연의 목적에 걸맞게 장기간 추적할 수 있는 조사환경 및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패널 조사는 기획단계에서 조사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하고 국내외에서 실시하는 유사 통계조사의 존재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국제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생기는 특수성을 감안한 조정과정을 통해 조사체계가 확립되고 추진되어야 하지만 웨이브와 웨이브 사이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면 조정되거나 변경되는 부분은 최소화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산출된 통계결과는 시계열적으로 안정성을 담보해야 하고 외국의 유사통계 및 국제기구의 통계와 비교가능하게 산출될 수 있어야 한다. 패널조사는 장기추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조사결과의 활용 가능한 통계산출은 일정기간의 웨이브가 진행되어야만 가능하므로 조사의 안정적 진행을 도울 수 있는 예산 및 인력의 지속적 지원과 환경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이를 통해 패널조사의 결과는 폭넓은 정책 수립 보다는 깊이 있는 정책 수립 및 특수한 상황에 속한 대상에 대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일반화되고 정형화된 형태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패널조사의 장점중의 하나인 특정 정책 및 프로그램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그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분석할 수 있는 설문구성 및 대상 확보 등을 통해 각 정책 및 프로그램의 효과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정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패널조사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인데, 이 조사는 개인 뿐만 아니라 가구의 장기간 상태 변화 및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국내의 가장 오래된 패널조사로서의 상징성까지 가지고 있다. 또한 노동정책의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외국의 유사패널자료인 미국의 NLS(National

Longitudinal Survey)와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영국의 BHPS(British Household Panel Study), 호주의 HILDA(The Household, Income and Labour Dynamics in Australia), 캐나다의 SLID(Survey of Labor and Income Dynamics), 독일의 GSEP(German Socio-Economic Panel) 등과의 비교가 가능한 조사이다. 다만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서의 표본규모가 1차년도 기준으로 5,000가구에 불과해 커버리지가 작다는 단점이 있다.

2) 행정자료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공무원연금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 데이터베이스 등 행정자료는 사실상 전체 임금노동자를 포괄하고 있으며, 이들 데이터베이스는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자료도 민간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고용 관련 정책 분석을 위해 정부 내부에서는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의 일모아시스템과 같이 고용정책 집행과 관련된 행정 자료들을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도 있으며, 교육 영역에서도 노동력 공급과 관련된 행정 정보들이 축적되어 있고, 복지 영역에서도 기초수급자 자료와 같은 행정자료들이 적지 않다.

통계 조사가 어렵고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비임금근로자 영역의 경우에도 국세청의 자료 협조만 있을 경우, 매우 정확한 실태 파악이 가능하다.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국세청과 통계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통계법상의 보안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정책적 수요를 충족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이렇듯 고용노동부뿐만 아니라 많은 정부 부처 그리고 지자체에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산출되고 있는 행정자료 이용의 중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행정업무 과정에서 축적되는 방대한 분량의 행정자료를 통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가공할 경우, 매우 유용한 행정통계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관련 통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용통계와 행정자료 사이의 대체가능성을 검토하여 통계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 고용통계와 행정자료 간의 연계 가능성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통계수요에 적절히 부응할 수 있다.

2. 정책과의 연계성 및 통계 간 관계

가. 고용동향 및 구조 분석

1) 고용동향 및 구조 분석을 위한 고용통계

노동시장 동향과 구조 변화 파악에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이다. 이 통계는 고용정책을 비롯한 고용정책 일반의 기초 자료로 광범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고용과 관련한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대표하는 자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여러 가지 형태의 부가조사를 확대하고 조사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좀 더 세부적인 고용정책의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통계는 취업, 실업, 노동력 등과 같이 인구의 경제적 특징을 조사하여,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의 활용정도 등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고용창출, 직업운영, 소득증진 등 정부정책 입안 및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에 관한 기초적이면서도 대표적인 역할을 한다. 정부정책수립자와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정부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해 자료를 활용하고 있고, 기업, 중앙정부와 지자체, 학계와 일반 대중 등에서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정규직 고용정책, 청년층 실업문제, 고령층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노동시장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특정응답층(임금근로자, 청년층, 고령층 등)에 대한 부가조사를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고용동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

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그 포괄범위가 매우 넓고 월별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세분류, 직업세분류 및 지역세분류 통계에서 충분한 표본규모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고용 문제는 전국 단위의 경제성장에 의해서 모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역별로 차별적인 형태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사의 빈도를 낮추는 대신 표본의 크기를 확대하여 지역별 고용 현황과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고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지역별고용조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지역별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소규모 지역에 대한 대표성 있는 고용 통계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 단위의 고용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단위에서의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자체 고용조사(고용동향조사)는 해당지역의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 취업자수 등의 추이 및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2008년 지역별고용조사가 실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작성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전국 및 16개 광역시도만을 대상으로 실업률 및 고용률 등 지표를 추출했기 때문에 지역, 그 중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해당 지역의 고용상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방안이 없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경기도 및 창원시와 같은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2009년 현재 경기도, 창원시, 군산시, 전주시 등 4개 지자체가 이러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그 포괄범위가 매우 넓고 월별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세분류, 직업세분류 및 지역세분류 통계에서 충분한 표본규모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고용 문제는 전국 단위의 경제성장에 의해서 모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지역별로 차별적인 형태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조사의 빈도를

낮추는 대신 표본의 크기를 확대하여 지역별 고용 현황과 구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고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지자체 고용조사라고 할 수 있다.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는 일차적으로 산업 소분류 및 직업 세분류별 종사자수와 임금수준 등에 대한 노동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직업별 고용전망이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 고용정책 관련 조사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진로선택,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정책 및 상담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후 살펴보겠지만,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는 지역별고용조사와 중복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2010년부터는 지역별고용조사에 통합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세계화의 진전과 국내 근로자들의 3D업종 기피 현상 등으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규모와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적절한 고용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은 2004년 8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고용전산망(www.eps.go.kr)을 구축, 관리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행정자료로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취지에 맞추어 외국인 근로자를 선발,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외국인 고용정책과의 연계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된다.²¹⁾

2) 고용동향 및 구조분석을 위한 통계들 사이의 관계 및 한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는 기본적으로 가구조사이고 기본적인 조사항목들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역별고용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가지고 있는 지역 차원의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으며,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가 세부

21) 외국인 고용허가제 하에서 외국인력의 유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어업, 농축산업에 한정되며, 이들 업종에 속한 기업은 국내에서 필요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에 외국인 고용을 요청하고 이후 관계부처는 양해각서가 체결된 송출국가로부터 선발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입국케 한다. 또한 외국인력 고용동향은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기간 동안 취업 업종, 규모, 직종 등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심지어 훈련, 보충보험 가입 등 출국까지의 모든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적인 산업과 직업을 조사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지역별고용조사가 세부 산업과 세부 직업까지를 포괄하는 조사를 더 큰 규모로 시행하면서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사이의 중복성과 유사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가 고용정책과 관련된 세부 조사항목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노동이동에 관한 조사항목도 더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정책에 대한 유용한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다. 또한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가 이미 8년 이상 진행되어 있는데 반하여 지역별고용조사는 2008년부터 조사되고 있다는 점에서 조사의 연속성의 문제도 무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사의 연속성을 통계적 기술적 방법으로 보완하고, 고용정책 관련 조사항목을 지역별고용조사에서 보완한다면 두 조사는 통합되거나 역할분담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현재 고용통계정책의 방향은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를 폐기하고 지역별고용조사가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의 핵심 내용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지역별고용조사가 확대·개편되면서 지역별고용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이의 중복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신 표본의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세분류, 업종세분류 및 지역세분류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반면, 지역별고용조사는 조사주기가 1년인 대신 표본의 수가 커서 소지역별 고용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은 전술한 바와 같다. 현재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고용통계는 지역별고용조사의 조사주기가 1년이기 때문에 지역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시의성의 문제가 있다는 한계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반기 혹은 분기별로 통계를 생산한다. 반면 지자체 고용조사의 조사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지역별고용조사는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와 통합하여 조사주기를 분기별로 바꾸고 지자체 고용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와는 공동조사를 수행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경우 지역별고용조사와 지자체 고용조사 사이의 중복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자치단체 고용통계와의 통폐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는 역설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라는 단일 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은 나머지,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국내노동시장 심층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는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는 업종이나 기업의 외국인 고용량을 특정하는 식으로 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외국인 관련 효과적 고용정책 수립에 있어 외국인근로자 고용동향의 또 다른 한계는 조사대상의 범위에서 찾을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의 조사대상은 2004년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근로자에 한정될 뿐 그 이전이나 심지어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이후로 유입된 불법외국인 근로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제한된 조사대상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은 국내에 상주하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고용동향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분석에 많은 제약을 가진다고 볼 수 있겠다.

외국인 고용동향에 대한 기초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가구조사를 통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현재 근로자의 국적관련 정보는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조사하고 있는데, 문제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주로 가구보다 기숙사 등 집단시설에 거주하는 비중이 더 크며 언어 및 시간 상의 장애요인들 때문에 가구조사를 통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어 현행 가구조사를 통하여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현재 고용관련 외국인력에 대한 공인된 집계자료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구 인력수요동향조사)와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그리고 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사업체고용동향 특별조사가 특정 업종 및 직종의 외국인 현원과 부족인원에 대해 조사·발표하고 있다면,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은 내국인 인력부족의 결과

로서 정부가 허가한 외국인 근로자 취업건수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라 할 수 있다.

[표 3.26] 고용동향 및 구조 분석을 위한 고용통계

	목적	특징	비고
경제활동인구조사	전반적인 고용동향 및 구조 분석	조사주기: 매월 표본수: 약32,000가구	부가조사: 청년층, 고령층, 비임금근로자, 근로형태별
지역별고용조사	소지역별, 직업 세분류별, 산업 세분류별 고용동향 및 구조분석	조사주기: 1년 2009년 표본수: 175,000가구	2010년 4/4분기부터 분기별조사로 확대 실시,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중요 내용 반영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산업소분류 및 직업 세분류별 고용동향, 임금수준 분석 및 전망	조사주기: 1년 2009년 표본수: 75,000가구(취업자가구)	2010년부터 지역별고용조사로 통합
지자체 고용조사	지역 고용동향 분석	조사주기: 분기-반기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외국인 고용동향 분석	고용허가제와 연계	행정자료

나. 인력수급분석 및 전망

1) 인력수급분석 및 전망을 위한 통계

인력수급전망을 위하여 가장 널리 활용되는 통계는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자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가 가구조사이기 때문에 산업과 직업의 세분류 단위의 고용 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경제와 기술 환경의 빠른 변화는 산업과 직업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인력의 수급 전망도 빠르게 변할 수 있다. 더 세부적인 산업과 직업의 고용에 대한 실태 파악이 있어야만 중장기적인 전망도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인력수급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산업세분류와 직업세분류 조사가 필요한 것은 인력 수급 현황 파악과 전망을 위해서 필요하다. 미래의 직업 전망을 위해서는 좀 더 세분화된 직업에 관한 고용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의 경우

도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다만 앞 절에서도 지적했듯이, 지역별고용조사와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가 산업세분류, 직업세분류 조사를 똑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보완적이기보다는 중복의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그 결과 양자를 통합해서 좀 생산적인 형태로 역할분담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2010년부터 지역별고용조사로 통폐합 되었다.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는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이 요구됨에 따라 지식경제부(과거 산업자원부)가 2003년부터 조사, 발표하고 있다. 현재 2008년도 자료까지 발표됨으로써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시계열이 구축되어 인력수급전망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8대 주력 기간산업(자동차, 조선, 섬유, 철강, 석유화학, 전자, 반도체, 일반기계)은 생산, 수출, 고용에서의 비중과 산업간 전후방연관 효과가 크고 국가 및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산업 들이다.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는 이들 산업의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방송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는 정보통신산업에서 업계가 필요로 하는 방송통신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할 필요성에 직면하여, 방송통신 인력 수급의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인력 수급 자료 제시하기 위해 조사하는 통계이다.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은 구인구직정보시스템의 구축 과정에서 형성된 행정자료로서 노동시장에서 실시간으로 사업체의 구인 양과 형태, 방식 그리고 구인자의 특성 등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은 구인업체와 구직자와 관련한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마찰적 실업을 최소화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의 구인업체 및 구직자 정보는 업종별, 직종별, 지역별 신규 구인인원, 신규 구직자수 및 임금불일치 등을 분석가능케 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의 개선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로도 활용된다. 아직은 워크넷을 통해 구인하는 사업장이나 구직하는 개인들이 제한적이고 특정 계층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노동시장의 구인과 구직 현황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향후 공공고용서비스의 규모와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 문제를 진단하고 관련 정책 대안을 형성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력수급분석 및 전망을 위한 통계 간 관계 및 한계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가 장기적인 인력수급전망을 위하여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통계이지만, 기본적으로 가구조사이므로 사업체 정보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지고 전직 및 이직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반면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10인 이상 사업체 중 제조업 및 사업서비스업에 속한 84,105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체조사이며 동시에 상대적으로 숙련직종인 '산업기술인력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이공계 전공자로서 사업체에서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와는 다른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현원, 부족현황, 채용 및 퇴사, 채용예상 인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인력수급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와 방송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는 산업기술에 대한 현재 인력과 부족인력을 조사하여 기술인력의 수급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여타 특성별 고용통계들에 비해서 근로 여건이나 종업원 활용방식 보다는 현재 고용인력이나 부족인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와 방송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는 특정 산업의 인력수급에 대한 기초통계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실태조사는 국가 경제의 관점에서 주력산업의 인력수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방송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는 특정한 산업계의 관점에서 인력수급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통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은 구인인원의 직종, 산업, 규모 등 기본적인 희망구직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장기적인 인력수급전망보다는 일자리 매칭의 효과성 분석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된다.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의 구일자 DB는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체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단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고용노동부의 사업체고용동향조사와 비교 가능할 것이다.²²⁾ 이러한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정보망인 워크넷을 이용한 구인·구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통계자료가 노동시장 전체의 수급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등과 같이 정부의 취업 지원서비스를 받기 위해, 구직자는 의무적으로 워크넷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구직자의 표본이 취업취약계층에 집중될 우려도 존재한다.

[표 3.27] 인력수급분석 및 전망을 위한 통계

	목적	특징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산업 세분류, 직업세분류별 인력수급 전망	가구조사 표본규모: 75,000가구(취업자 가구)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제조업 및 사회서비스업 이퇴직 및 부족률 조사	사업체조사 (10인 이상) 표본규모: 10,000개 사업체
방송통신부문인력실태조사	방송통신부문 인력수급조사	사업체조사 (1인 이상 정보통신사업체, 10인 이상 타사업체) 표본규모: 정보통신산업 1,002개, 정보통신관련산업 532개, 타사업체 935개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	인력 미스매치에 의한 마찰적 실업 해소	행정자료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고용서비스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커짐에 따라서 이

22) 사업체고용동향 특별조사는 연2회 근로자의 직종별, 산업별, 사업체규모별, 직능수준별, 구인인원, 채용인원, 미충원인원, 현재인원, 부족인원, 채용계획인원 및 사업체의 적극적인 구인에도 불구하고 충원되지 않는 빈 일자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체들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족인력규모를 조사하여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수립을 그 목표로 한다. 다만 워크넷 구인구직 및 취업동향은 취업알선건수와 같은 정보도 수록함으로써 고용지원센터와 같이 취업지원실무기관의 성과에 대한 정보 또한 수록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부분에 대한 통계 수요도 충족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 변화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가 이동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수요와 공급 사이의 불일치가 커졌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높은 노동이동율, 실업자 및 실업급여수급자 수의 증가, 중소기업 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고용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큰 반면, 고용서비스의 공급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어수봉, 2007).

이에 대해서 정부는 공공고용서비스를 일차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민간고용서비스를 동시에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고용서비스는 영세기업들이 난립해 있는 매우 취약하고 열악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전근대적인 고용서비스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2010년 직업안정법을 (가칭) '고용서비스촉진법'으로 개정할 계획으로 있다.

따라서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해서는 먼저 민간 고용서비스 업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확보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비정기적으로 민간고용서비스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를 좀 더 체계적이고 정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 이공계인력정책

1) 이공계인력정책을 위한 통계

1990년대 이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산업기술인력의 동향과 관련된 수급 동향 및 예측을 위한 정보가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되는 임금, 근로조건, 교육·훈련 환경, 처우, 경력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애요인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점차 노동시장도 글로벌화 되어감에 따라 국경을 넘나드는 이공계 전문인력에 대한 동향 파악도 중요하다.

이공계인력의 동향에 대한 기본적이고 대표성 있는 정보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및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 또한 산업기술인력의 수급과 관련해서는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들은 이공계 인력 수급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이공계 기피현상의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또한 앞에서 지적하였듯 위의 통계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동시에 국내 이공계 인력의 해외유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는 통계로는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대한실태조사와 이공계인력국내외유입및유출실태조사가 있다.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대한실태조사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7조에 근거하여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활용 현황과 복지 실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시행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이공계 인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 자료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대한실태조사는 이공계인력의 인적자본의 형성, 근로조건, 경력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력수급의 장애요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공계인력국내외유입및유출실태조사는 전문인력의 국내외 유출 및 유입의 현황, 사유 방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공계인력국내외유입및유출실태조사는 경제 및 인적자원의 글로벌화 진전에 따른 인력의 국제이동이 증가하고 고급인력의 유출·유입현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공계인력에 대한 국내외 유입 및 유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분석하여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공계 인력 육성 및 활용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공계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동태적 행동의 분석을 위해서는 대졸자직업경로조사와 청년패널이 최종학력의 전공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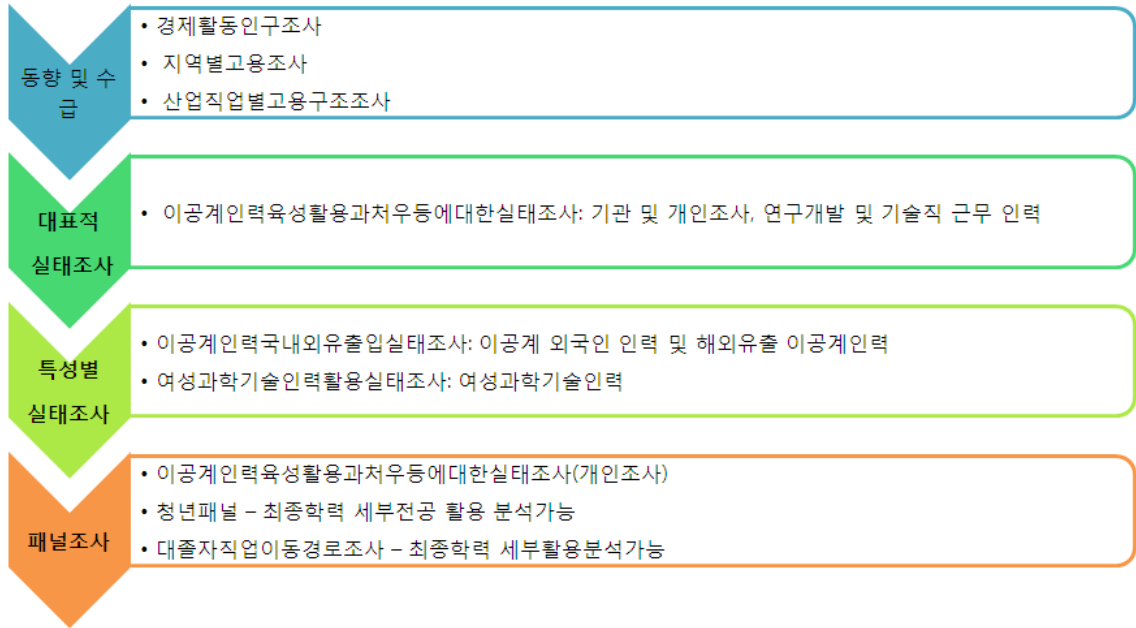
2) 이공계인력정책 통계간 관계 및 한계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지역별고용조사는 가구 소속 개인들의 최종학력 전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의 전공별 고용 동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들 통계는 기본적으로 가구조사라는 성격 때문에 이공계 기피현상의 원인이 되는 직업경로, 근로조건, 직업훈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주요 이공계 인력을 대상으로 인력의 육성, 활용 및 처우에 관한 실태를 기업측의 인사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개인별 근로소득, 주당 근무시간, 연구개발 등의 업무비중 및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다. 이 조사는 또한 인력수급 그 자체 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이러한 인력수급의 배후에 있는 기업의 인사관리 및 근로조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나 방송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와도 차이가 있다. 또한 이공계 인력의 특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일반 고용통계에 비하여 이공계 과학기술전문인력이 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육성과 활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와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전자는 개인별 조사인 반면 후자는 사업체 조사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는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학업환경 및 경력단절 경험에 대한 정보와 현 직장 환경에 대한 주관적 판단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기업의 성별 연구개발인력 채용 현황, 보직 및 승진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 및 근무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1] 이공계인력정책을 위한 고용통계의 구조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의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듯, 근무조건, 특히 보수의 측면에서 이공계인력의 상황이 타 전공계열에 비하여 오히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고용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인력의 활용분야가 다소 한정적이고 경력경로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이공계 관련 직종의 매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보인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10). 이렇게 볼 때 주요 이공계인력을 대상으로 한 패널통계를 활용하여 이들의 활용현황과 유동성 및 경력경로에 대한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가 개인별 조사의 패널화를 통하여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동시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나 청년패널 등을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 청년고용

1) 청년고용정책 관련 통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는 청년층의 구직난이 심각해지는 동시에 미취업 청년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고용상황은 청년층의 고용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청년층의 고용상황 악화의 원인은 학력과잉, 청년층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수급의 괴리 등 공급측면의 요인과 산업구조의 변화, 경력자 선호, 기업의 채용 패턴 등 수요 측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총량적인 관점에서 청년층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보의 불완전성, 지역적 불일치 등 구직자와 구인자가 분권화된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일자리 미스매칭으로 인하여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처럼 청년고용정책과 관련된 통계는 단순히 고용분야의 통계뿐만 아니라 교육 등 타 분야의 통계와 연계되어 활용될 수 밖에 없다.

고용정책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청년층 고용의 일반적인 동향은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청년층부가조사는 청년층의 교육 및 직업훈련, 직장경험, 퇴직사유, 전공과 직장 간 일치 여부 등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는 2002년부터 청년층의 취업실태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고용정책수립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학교에서 직장으로서의 이행과정 (School to Work) 및 노동시장 진입 이후 이동경로에 대한 정보를 장기 추적조사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청년층이 초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계속적으로 경력개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존재하는 장애요인들을 식별해 내기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졸업자들에 대해서 학교유형별, 학과(전공)별, 지역별 노동시장 진입 효과 및 노동이동경로, 직업이동경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연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육-노동시장 간 신뢰성 있는 인력수급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청년고용정책 관련 통계 간 관계 및 한계

청년층 고용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주요 이슈인 학교-직장 이행(School to Work), 학력과잉, 노동시장의 분절화(segmentation), 기업 채용 패턴의 변화 등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 청년층의 동태적 변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는 횡단면조사로서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간 추적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로추적에는 한계가 있다.

청년패널조사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패널조사는 응답대상자를 동일한 코호트(cohort)로 구성하되, 관심을 갖는 집단 사이에 발생하는 유의미한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장기추적 관점에서 응답자 관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수반해야 한다. 하지만 패널조사는 전년도 조사 자료와의 연계, 논리적 오류의 점검, 그리고 직업 또는 산업 등이 포함된 조사자료라면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대상자 분류 등의 문제로 인해 횡단면 조사와 달리 시의성 있는 자료 생산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표 3.28] 국내 청년층 대상 조사 비교

	YP	GOMS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조사기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조사대상	15~ 29세	대학 졸업자	대학 졸업자
표본여부	표본조사	표본조사	전수조사
표본수	YP 2001(약 5,000명) YP2007(약 10,000명)	2005GOMS(26,544) 2007GOMS(18,050)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대학 졸업자 약 50만여명
조사방식	YP 2001은 PAPI 방식 YP2007은 CAPI 방식	CAPI, PAPI	기본정보 취합후 전화조사(telephone interview)
조사주기	1년	신규졸업자 : 매년 졸업자추적조사 : 2년	없음
조사횟수	9회(YP2001은 6회, YP2007은 3회)	2회 GOMS2005는 3회	1회

조사시작	2001	2006	2004
------	------	------	------

같은 패널조사인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와 청년패널조사(YP) 사이에도 조사목적과 기타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²³⁾

먼저 조사목적의 측면에서보면 청년패널조사는 만 15~29세 사이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일자리 경험, 직업이동, 직업관 및 향후 진로, 직업훈련, 구직활동, 가계배경 등을 조사하여 수집된 기초자료를 통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정책 수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최근 고학력화로 인한 청년실업문제가 심화되면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학교(전공)별 이행현황 분석과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수요 증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목적 뿐만 아니라 대학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업(직장)이동 경로를 추적조사하고 이를 DB로 구축함으로써, 교육-노동시장 사이에 신뢰성 있는 인력수급정보를 제공하고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개별 학교 및 전공별로 세부 노동시장 성과를 학부모와 수험생에게 제공하여 대학(전공)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진로상담과 진학상담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공과 더불어 직업불일치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²⁴⁾

청년패널조사는 청년 노동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School to Work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특히 청년층 중에서도 고졸이하 및 대학 재학 또는 중퇴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이다. 외국 청년층과의 직접적 비교는 몇 가지 제약이 따르지만 15~24세 사이에 대한 정보를 따로 취합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청년층과의 간접적 비교를 실시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조사이다. 실제적으로 YP2001의 경우에는 OECD에서 국가간 청년층 노동시장 비교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23) 여기서는 진단 대상은 아니지만 비슷한 목적을 갖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도 함께 비교한다.

24)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는 사회 및 노동시장이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배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고학력 졸업자 취업난의 구조적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진학, 진로, 취업탐색 등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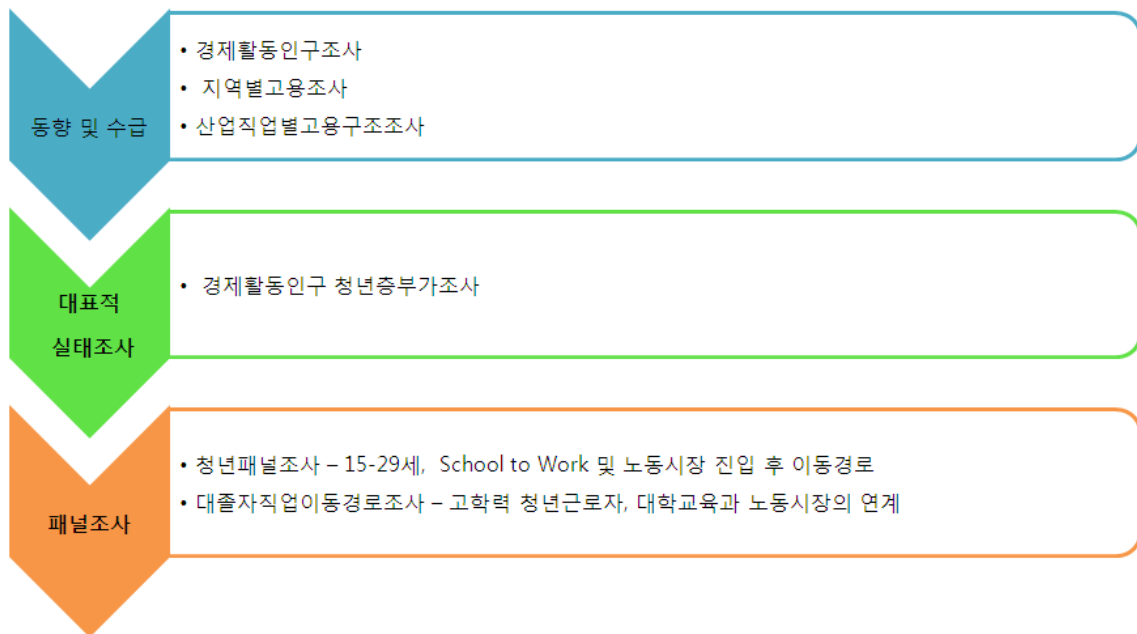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고학력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이다. 물론 국내 고교 졸업생 가운데 85% 정도가 대학에 입학하는 상황이 외국의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국내의 고학력자의 노동시장 진입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전공별 노동시장 성과 및 전공불일치 등의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할 수 있는 조사이다. GOMS 조사 초기에는 약 8년간의 장기추적으로 목적으로 조사가 기획되어 고학력자의 노동시장 변화 및 정착에 대한 이동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단기추적 형태로 변환되어 대학졸업후 약 20개월 경과시점에서 첫 조사를 실시하고, 1차 조사후 2년이 지난 시점에 2차 추적조사를 실시하는데, 약 2년의 중간 기간에는 패널유지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졸업 후 44개월 시점까지의 노동시장 경로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 형태이다.²⁵⁾

열거된 세 가지 조사의 궁극적 조사 목적은 청년층의 취업난의 원인을 알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만, 대상의 차이 또는 조사를 바탕으로 취업난 해소 이외에 진로지도 등에 목적을 두느냐의 여부 등에 차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시의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여 정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조사가 있는 반면에 장기적 추적을 통한 조사 대상의 노동시장 이동 경로 파악에 목적을 두느냐의 차이도 존재한다. 기본적으로 패널조사의 성격은 장기간 추적을 통해 이동경로에 초점을 두고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시의성 있는 자료 생산에는 어려움이 있다. 국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패널조사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노동패널을 제외하고는 장기간 추적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패널조사의 장기추적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에 대한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조사시스템적인 측면보다는 정책적 이유가 더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조사는 기획단계에서 조사

25)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는 졸업 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졸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 실시하는 전수조사이다. 조사대상의 수가 많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깊이 있는 조사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특히 GOMS 및 YP에 비해 임금정보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조사는 주로 졸업자의 취업상태를 파악하는 것인데, 이 조사를 바탕으로 각 대학의 취업률을 비교하고 대학 내에서는 단과대학 및 학과별 취업률 비교에 기본통계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노출되어 현재는 취업률 파악에 있어 건강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목적을 명확히 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조사가 시작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정립된 조사시스템은 약간의 조정과정을 통해 확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안정화된 조사 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통계는 시계열적 측면과 국제비교 측면에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 통계조사는 외국의 유사 통계조사에 비해 정책적 목적과 판단에 따라 너무나 쉽게 변경되고 조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3.2] 청년고용관련 통계의 구조



마. 여성고용

1) 여성고용정책 관련 통계

여성고용의 일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생애주기 상 고용동향과 경력단절 등 동태적인 측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가 많이 활용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통계들 외에 일-가정양립 및 노동시장 내 성차별 요소 등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특성화된 통계로는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여성관리자패널조사, 강원도취업여성실태조사 및 대구경북여성인적자원

개발실태조사 등이 있다.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점점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문직 여성 고용 창출과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성별 차별 요인의 해소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은 또한 지식기반 사회에서 고급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즉 우리나라에서 여성 인적자원은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단순한 양적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남성과 거의 동등한 정도의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질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도 매우 크다. 그러나 전통적인 성별 분업 속에서 여성들이 전문직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매우 크며, 이는 노동시장의 비효율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 과학기술분야 인력정책수립에 활용되었던 기존 통계자료의 경우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과정이나 실질적인 규모, 채용·승진 등 기관 내 처우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워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의 효과를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는 과학기술분야 여성인력 지원을 위한 실태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정책의 적합성과 대응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공표되고 있다. 특히, 해당 조사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인력 규모를 조사함에 있어, 고용형태별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다시말하면, 대학의 경우, 전임교수, 비전임교수, 시간강사, 연구원으로, 연구기관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고용불안정으로 대변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고용특성과 연계하여, 기관별 비정규직/정규직 남/여의 활용 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전문숙련직 여성고용에 존재하는 장애요인을 동태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조하는 여성관리자패널조사이다. 여성관리자 패널조사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의 관리직 진출 비율이 가장 저조할 뿐만 아니라 관리직 가운데에서도 하위관리직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하였다. 생애주기 가운데에서 여성에게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여성들의 경력형성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관리자 과정에 진출한 여성들의 경력형성과정, 근로실태, 일과 가족의 양립 등을 파악하여 여성의 관리직 진출을 도모하고 경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강원도취업여성실태조사와 대구경북여성인적자원개발실태조사는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하여 남성 근로자와 여성근로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직종별, 수직적 분리현상을 극복하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별 여성고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통계이다.

2) 여성고용정책 관련 통계 간 관계 및 한계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반여성 편향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여성근로자 일반이 맞닥뜨리고 있는 장애요인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 직종에서 여성들이 근로조건이나 경력관리에서 체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차별적 요소들(소위 “유리천장(glass ceiling)”)을 식별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강원도취업여성실태조사나 대구경북여성인적자원개발실태조사는 전자와 관련된 것이고,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나 여성관리자패널조사는 후자와 관련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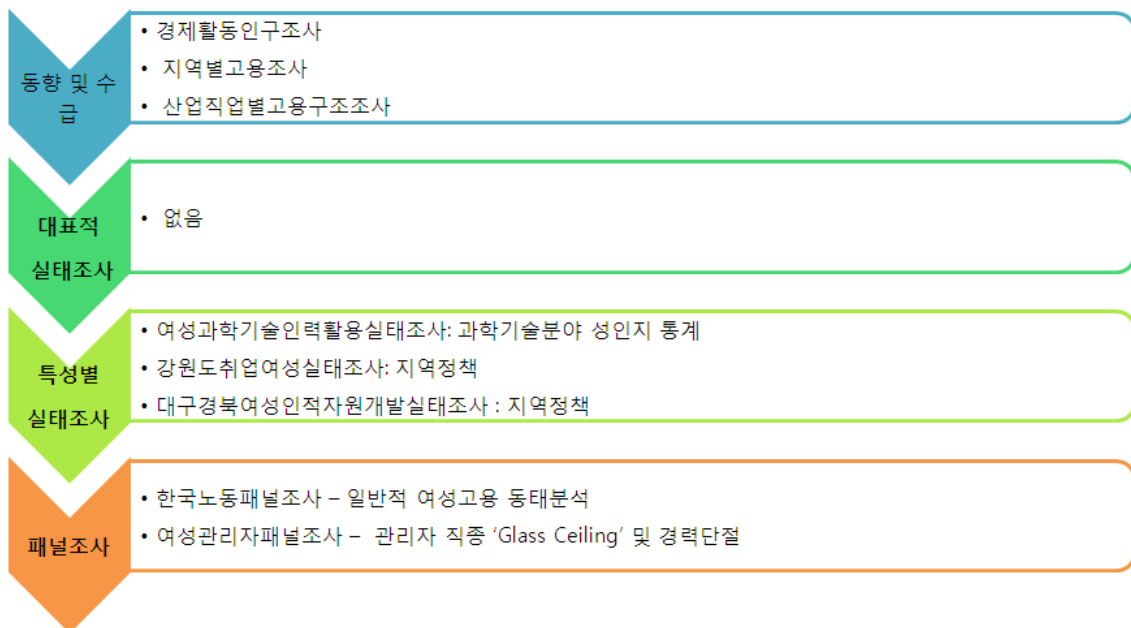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육성과 활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와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전자는 개인별 조사인 반면 후자는 사업체 조사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는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학업환경 및 경력단절 경험에 대한 정보와 현 직장 환경에 대한 주관적 판단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여성과학기

술인력활용실태조사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기업의 성별 연구개발인력 채용 현황, 보직 및 승진 현황, 연구개발 활동 현황 및 근무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강원도취업여성실태조사와 대구경북여성인적자원개발실태조사는 지역통계라는 특징도 있지만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실태조사와는 달리 전문직 여성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일반적인 여성 고용 현황 및 장애요인에 대한 정보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강원도취업여성실태조사는 육아, 근무환경, 고용형태, 직업훈련, 취업경로 등에 대하여 일-직장 양립의 측면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경북여성인적자원개발실태조사는 강원도취업여성실태조사와는 달리 여성근로자들의 직업교육 및 자기개발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과 같이 여성들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데 장애가되는 요인들에 대한 전국적이고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대표성 있는 통계가 부족한 형편이다.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의 정책목표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조사들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 여성고용정책관련 고용통계의 구조



바. 비정규직고용

1) 비정규직고용정책 관련 통계

1997년 금융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의 규모와 정규직 대비 임금 등 근로조건 상의 격차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소득분배의 문제와 결부되어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비표준적인 근로형태에 대한 표준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임금근로자들의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상용직, 임시직 및 일용직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러한 근로형태에 대한 일차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만,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에 의해 도출된 정규직/비정규직 정의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근로실태에 따른 분류가 없다. 따라서 2000년부터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 통하여 노사정위원회에서 비정규직의 실태를 파악하고 비정규직을 정의하는 문제를 논의하였고 정부는 이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비정형근로자로 구분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계층을 정규직으로 분류하였다. 처음으로 우리나라의 실태를 반영하는 비정규직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정의와 분류에 따른 조사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고용정책에 관한 논의와 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사업체 수준에서의 전체 종업원수를 종사상 지위를 기준으로 해서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고용노동부가 다양한 사업체조사를 실시할 때 모집단으로서 활용한다.

근로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와 근로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통계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임금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다양한 고용형태로 구분하고, 이들의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파악하여 노동정책 참고자료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용형태에 대한 조사를 경제활동인구와 같은 가구조사에 의존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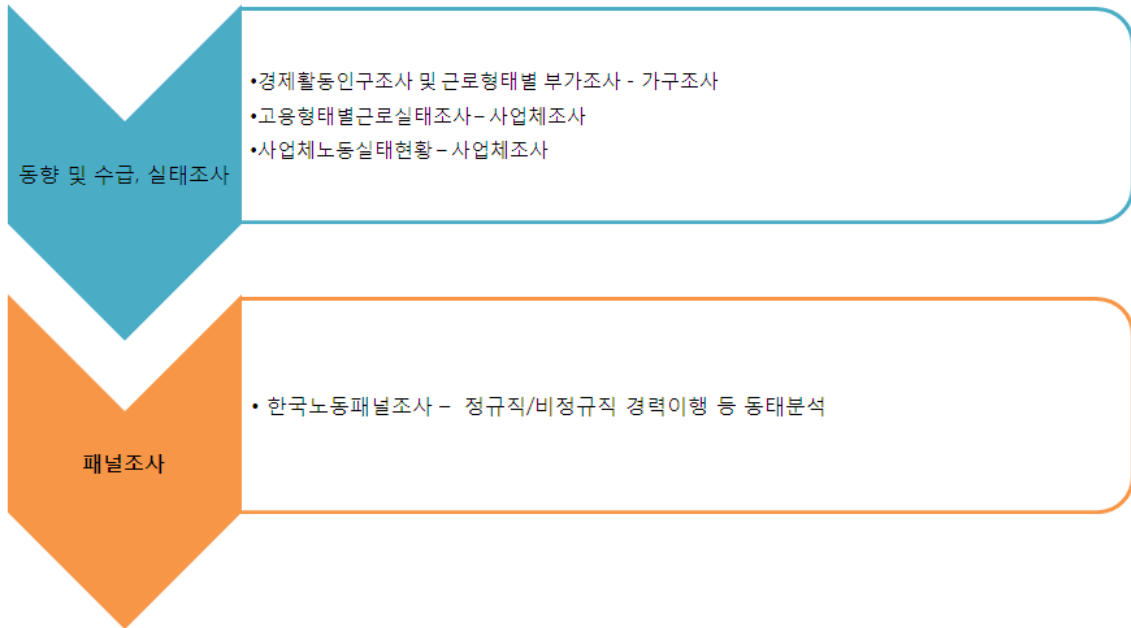
은 매우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되기 때문에, 사업체 조사를 통해서 고용형태의 실태를 매우 정확하고 다양하게 파악하고 이를 통해서 고용형태와 관련된 정책 대안 수립의 기초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첫번째 정책적 의미는 점차 다양해지는 고용형태에 대한 사업체 수준의 정밀 조사라는 점에 있다. 노동시장에서는 점점 매우 다양한 형태의 고용 방식이 출현하고 있고 이러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고용정책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커다란 쟁점이고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도 매우 심하기 때문에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임금조사가 주로 5인 또는 10인 이상 사업체를 중심으로 조사되던 것에 비해서 1-4인 소규모사업체까지 포함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2) 비정규직고용정책 관련 통계 간 관계 및 한계

한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이에는 모두 고용형태 특히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한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자는 가구 조사이고 후자는 사업체조사이고, 후자는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 좀 더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조사는 같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 1년에 한 번 조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조사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3.4] 비정규직관련 고용통계의 구조



비정규직 정책에서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가 보완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두 조사 모두 현재의 고용형태 분류가 변화하는 노동시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비정규직법의 통과와 더불어, 기간제 구성 변화와 기간제와 간접고용의 대체 현상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조사 항목만을 가지고서는 간접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최근 사업체기간제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정책 수요를 보완하고자 하고는 있다.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 간접고용을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사 항목의 재구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간접고용이나 특수고용에 대한 부가조사나 추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사. 기타 근로취약계층 고용정책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복지비용 증가로 고령자의 노동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지원 등 고용안정 정책 및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노인취업실태에 대한 통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55-79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 고령층부가조사를 2005년부터 년1회 실시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상태, 과거 직장경험, 지난 1년간 구직 및 취업 경험, 그리고 장래 근로에 대한 희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령 근로자의 고용연장정책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997년 금융위기 자영업자 및 가족근로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이들 근로자들은 고용정책 및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비임금근로자의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비임금근로자부가조사에 의해 제공된다. 비임금근로자부가조사는 자영업자들의 사업자금 조달방법, 사업장 산재보험 가입여부, 개인의 국민연금 가입여부, 향후 사업자금 필요금액 등 창업과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는 저숙련근로자들의 고용에 대한 최저임금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가 제공한다. 이 조사는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 1월에 도입된 이후 그간 제도가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최저임금 근로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속한 가구의 정보, 근로자가 속한 기업체의 정보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조사는 사업체의 특성 및 최저임금이 사업체 수준에서 고용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의 인적속성, 가구특성, 임금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고용통계는 취약계층의 고용 및 복지대책을 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다양한 통계를 통하여 기초정보를 작성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성을 파악하고 정책수요를 반영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다.

가장 부족한 부분은 소득과 자영업 경제활동에 대한 조사이다. 임금, 근로시간, 노동이동 등 자영업자에 관한 전반적인 경제활동 통계가 거의 부재하며 우리나라의 자영업 시장의 특성 상 소득을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 또한 경제활동조사가 패널자료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어서 이동경로조사나 정규직-비정규직 간 노동이동 등을 조사하기가 매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시급제 근로자의 임금항목이 없어서 적절한 실제 최저임금의 수준, 영향을 산출하기 위한 기본 통계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청년층이나 근로빈곤층, 외국인근로자 등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도 부족한 편이다. 청년층 취업자의 이전 직장 경험(첫 직장 여부, 경력자일 경우 횟수 등)에 대한 항목,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 외국인 근로자 여부 및 체류 자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 여성가장, 경력단절 여성, 이주여성 근로자 등의 고용형태, 근로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 등이 부재하다.

[그림 3.5] 기타 근로취약계층 고용정책

고령자 고용정책	• 경제활동인구 고령층부가조사
비임금근로자 대책	• 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자부가조사
저임금근로자 대책	•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외국인근로자 대책	없음

제 4 절 통계별 용어와 항목의 비교

1. 통계별 용어의 비교

가. '취업자'

'취업자'와 같은 경제활동상태에 관한 용어에 대한 정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등 가구조사들은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사업체조사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나 사업체고용동향조사에서는 약간 다르게 조사된다. 가구조사는 노동력 접근방법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는 반면, 사업체고용동향조사는 유업자 접근방법에 의해 조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르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로 정의된다. 동일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와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도 포함한다.

①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② 자기에게 직접적으로는 이득이나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도운 가족종사자로서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자(무급가족종사자)

③ 직장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또는 연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전국사업체조사에 기초한 가공통계인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서 종사자수는 "조사기준월(월력상)의 마지막 영업일 현재 시점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를 말하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조사기준년의 마지막 현재 고용형태, 근무형태를 불문하고 당해 사업체에서 근로하고 있는 모든 종사자를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그리고 기타로 구분해서 기입하고 있다. 같은 사업체조사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종사자수를 ‘매년 6월 급여계산기간 중 하루라도 근무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재하며, (외부의 파견, 용업업체 소속의 근로자도 포함한) 당해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수’로 정의하고 있다.

[표 3.29] 가구조사와 사업체조사의 취업자 차이

	가구조사	사업체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사업체노동실태현황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취업자 정의	조사대상기간주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휴직자	12월 31일 현재 사업체 종사자수	매년 6월 급여계산기간 중 하루라도 근무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재하며, (외부의 파견, 용업업체 소속의 근로자도 포함한) 당해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수

이렇게 조사할 경우,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은 보통 가구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서 전체 종사자수가 크게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의 모집단이 되는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서 약 2008년 현재 약 400만 명이 적게 조사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근로자는 약 1,600만 명인데 반하여,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는 약 1,200만 명으로 조사된다. 이는 건설일용, 파출부, 학습지교사 등 무사업장근로자들이 사업체조사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 종사상 지위 및 고용형태

고용의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종사상지위’와 ‘고용형태’, ‘근무형태’로 구분하여 조사된다. 종사상지위는 임금근로(상용, 임시, 일용)과 비임금근로(고용주, 자영자, 무급종사자)로 구분되고,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한시적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비전형근로자)으로 구분된다.

종사상지위에 있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 비해서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상용직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체노동실태현황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비해서 상용직이 약 100만 명 정도 많고, 임시일용직이 약 500만 명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3.30] 종사상 지위에 대한 조사 방법의 차이

	경제활동 인구조사	사업체 노동실태 현황
상용 직	1. 임금근로자로서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임금근로자로서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규정을 적용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1. 1년 이상 고용계약을 맺고 일정한 급여를 받는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1년 이상 고용이 예상되고 일정한급여를 받는 자. (여기에는 자영업주를 제외한 모든 유급임원(사장, 대표이사, 전무, 상무, 상근감사 등), 수습근로자, 1년 이상으로 고용된 파트타임 근로자 등도 포함.) 2. 개인업체에서 사업주의 가족이라도 조사기준월에 그 사업체에 근무하여 일 반근로자와 같은 급여규칙에 따라 매월 급여를 지급받는 자도 포함
임시 직	1. 임금근로자로서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2. 임금근로자로서 고용계약미설정자는 일정한 사업(완료 1년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1. 임금근로자로서 고용계약설정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1. 한시적 위원, 비상근직, 촉탁 등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년 미만 재직하고 있는 자도 포함.
일용 직	1. 임금근로자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2.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파출부 등)	1. 임금 또는 급여를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사람.
기타	. 상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경찰에서는 매년 3월,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만 파악됨.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 예) 학습지교사, 캐디, 보험설계사, 지입형태의 레미콘기사, 케이블TV 설치원, 택배원(퀵서비스 포함)

가구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그리고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방법을 따르는 지자체 고용조사 등 가구조사들은 일반적으로 종사상 지위에 대하여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사업체 조사들에서는 약간 정의가 다르다. 사업체노동실태현황에서는 상용직을 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임시직을 고용계약기간 1년미만 1개

월 이상인 경우, 그리고 일용직을 고용계약 1개월 미만인 경우로 느슨하게 정의하고 있다. 행정자료인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의 경우 종사상 지위를 상시근로(상용직, 시간제, 계약직), 일용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상용직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 계약직(임시직)은 1월 이상 1년 이하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 그리고 시간제는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통상의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근로하게 하는 고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고용형태에 대한 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와 사업체조사인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만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두 조사 모두 같은 조사 기준을 가지고 있다.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에서는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만을 구분하고 있고, 근무형태에서 임금근로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만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전일제와 단시간근로로 구분하는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에서 같은 기준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 3.31] 고용형태에 대한 조사 상의 정의

비전형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한만큼 소득(수수료, 수당 등)을 얻고 노무제공의 방법이나 노무제공시간 등은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자. 근로자와 자영업인의 중간 영역에 있음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워킹맘, 퀵서비스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운전기사 등
	재택/가내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는 근로제공의 방법이나 근로시간 등을 전적으로 본인이 결정하는 자로, 재택근로자는 근로의 장소가 사용자와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업무성취도에 따라 고정급을 지급받는 자(예 : 114 전화안내 등)이며, 가내근로자는 대개 가정주부 등이 고용관계 없이 부업으로 물품의 가공 등 가내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예 : 의류·모피 제품에 단추달기 등)	재택근로자 : 114 전화안내 등, 가내근로자 : 제품에 단추달기 등
	파견근로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으나 사용사업주의 사업체에 파견되어 근로하는 자. 임금이나 신분상의 고용관계는 파견사업주의 관리를 받지만, 업무상 지휘·명령은 사용업체로부터 받음	
	용역근로자	용역업체가 고용하고 다른 사업주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자. 임금, 신분상의 고용관계 및 업무상 지휘·명령 등 모두를 용역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음	청소용역, 경비용역 등

	일일근로자	근무지속성, 규칙성이 없이 아는 사람이나, 업체, 협회, 취업 알선기관 등의 호출을 받아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 일시적으로 단기간 근무하는 자. 고용·근무형태와 관계없음	행사도우미, 건설일용근로자 등
단시간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사업체내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통은 1주일에 40시간 또는 44시간 전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소정근로시간(예를 들면 1주일에 35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 포함)	
한시적	기간제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구두 또는 묵시적 약속이나 계약도 포함)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의 장·단, 계약의 반복갱신 여부, 명칭(계약직, 촉탁직, 임시직, 계절근로자, 계약사원 등) 등과 관계없음	
	기간제 아닌 한시적근로자	일정기간의 근로계약을 정하지는 않았으나, 회사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조건으로 근무하게 하는 근로자	
정규	정규직근로자	상기 고용형태에 해당되지 않는 근로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근로자	

[표 3.32] 근무형태에 대한 대한 조사 상의 정의

근무형태	전일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정직사원의 소정근로시간(정규적인 업무개시 시각과 종료시각과의 사이의 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간동안 근무하도록 정해진 근로자
	단시간	통상근로자(사업체내 가장 일반적 형태의 근로자)의 1주간 소정 근로시간(보통은 1주일에 40시간 또는 44시간 전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소정근로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 전일제근무와 단시간제근무의 구분 기준은 고용계약시 정해져 있는 소정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은 제외)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전일제인 정규직 근로자와 소정 근로시간이 동등하다면 '전일제'임. 단, 일거리가 특정기간에 집중되어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는 '단시간제'임

통계청이나 고용노동부가 관할하지 않는 근로자 특성별 고용통계에서는 정규직이나 상용직 등에 대한 용어 사용에 있어 혼선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에서는 정규직을 “조사기준일 당시 해당 직장의 퇴직금 규정 및 복무규정에 적용을 받고 계속고용이 보장되는 자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의 상용직과 비슷한 개념이다. 마찬가지로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에서는 정규직을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는 또

한 임시직과 일용직을 “계약직”의 범주로 묶고 있으며,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와 “한시적 위원, 비상근직, 촉탁 등으로 조사기준일 현재 1년 미만 재직하고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자는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나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방송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는 “상시종사자”를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고정급여를 받는 자”로 정의하면서 “단, 사고로 인한 단기 휴가자 및 파업 중인 자는 포함되나, 장기 결근자(3개월 이상) 및 군복무자와 위탁제조를 시킨 경우에 있어서 수탁사업체 종사자는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 직업분류의 비교

고용통계들 간 직업분류의 차이가 존재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등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하고 있는 반면,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와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은 한국고용직업분류를 채택하고 있다.

[그림 3.6] 표준직업분류와 고용직업분류에서
직능유형(skill-type)과 직능수준(skill-level)

중		소		세
00	-	0	-	0
직능수준		직능유형		직능유형
중		소		세
00	-	0	-	0
직능유형		직능수준		직능유형

ILO의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에 기반을 둔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직능수준우선분류인 반면, 한국고용직업분류는 미국의 SOC나 캐나다의 NOC처럼 대분류와 중분류를 직

능유형으로 구분하고, 직능수준을 분류의 세 번째 단위에 위치토록 하는 직능유형우선분류방식을 채택하였다.

가령 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하여 법률관련 종사자를 설명하면, 법률관련 종사자는 대분류 1, 2, 4에 걸쳐 존재하며, 중분류 17은 법률전문가, 29는 기타 준전문가로서 소분류 292로 들어가면 법률, 의료 및 관련 사업 준전문가로 분류된다. 또한 중분류 44는 보안서비스 종사자로 하위 단위인 441은 경찰 종사자, 443은 교도 및 보도 종사자로 분류된다. 이에 반해 고용직업분류는 중분류단위에서 직능유형을 구분하는데, 05는 법률, 경찰, 교도 관련직으로 051은 법률 전문직(관·검사, 변호사, 변리사)으로, 052는 법률사무 관련 사무직, 053은 경찰, 소방, 교도 관련직으로 분류된다.

각각의 분류체계는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지는데 먼저 표준직업분류는 ISCO 기준을 따름으로써 국제비교에 강점이 있는 반면, 고용직업분류는 유사직업을 찾기 용이하여 취업정보 등 고용정보를 활용할 때 유익하다. 이처럼 어떤 직업분류체계가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용도에 따른 직업분류체계의 선택이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두 분류체계간 연계표를 제공함을 통하여 서로 다른 두 분류체계를 사용하는 통계들 사이의 연계 활용을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조사 항목의 비교

최근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사이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 두 조사 사이의 조사항목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 3.33>과 같으며, 조사 항목에 있어서 두 조사 사이의 중복이나 유사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사이에도 조사항목의 유사성이 관찰된다. 그러나 앞에서 논의하였듯,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월별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신 표본수가 제한되어 있어 산업, 직종 및 지역별 세분

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반면, 지역별고용조사는 현재 1년 단위로 조사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분기별 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므로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다른 한편 산업, 직종 및 지역별 세분화된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전반적으로 보아 사업체조사들 사이에서, 그리고 워크넷과 다른 조사들 사이에는 커다란 중복성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3.33] 주요 고용통계 조사항목의 비교

통계명	경제활동 인구조사	지역별고 용조사	산업직업 별고용구 조조사	고용형태 별근로실 태조사	사업체노 동실태현 황	워크넷 구인구 직및취 업동향
전체 개인						
성별	○	○	○	○	×	○
연령	○	○	○	○	×	○
학력	○	○	○	○	×	○
전공	○	○	○	×	×	○
혼인상태	○	○	○	×	×	×
가구주와의 관 계	○	○	○	×	×	×
가구원 전체 정보	○	○	○	×	×	×
고용상태(1주 기준)	○	○	×	×	×	×
고용상태(4주 기준)	○	○	×	×	×	×
취업자						
2차 일자리 여부	○	○	×	×	×	×
근로시간						
주당 근로시간	○	○	○	×	×	×
1주 36시간 미 만 근무 여부	○	○	×	×	×	×
이유	○	×	×	×	×	×
근로시간 연장 희망 여부	○	×	×	×	×	×
근로시간 연장 가능여부	○	×	×	×	×	×
다른 직장 구직 여부	○	×	×	×	×	×
직장 특성 및 지 위						
직장 명	○	○	○	○	×	×
업종*	2	3	3	3	5	×
직종*	2	3	4	3	×	×

지위	x	o	o	o	x	x
사업체 규모	o	o	o	o	o	x
종사상 지위	o	o	o	o	o	x
사업장 종류	x	x	o	o	o	x
고용계약상 근로기간	o	o	o	o	x	x
근로일수	x	x	o	o	x	x
근로자 개인 특성						
근속연수(현 직장)	o	o	o	o	x	x
임금	x**	o	o	o	x	x
총 근무년수	x	x	o	o	x	x
자격증	x	x	o	x	x	x
실업자						
근로 가능성 여부	o	o	x	x	x	x
구직경로	o	o	x	x	x	x
구직방법	o	o	x	x	x	x
구직기간	o	o	x	x	x	x
희망 고용 형태 (임금근로/비임금근로)	o	o	x	x	x	o
구직분야(산업, 직업), 희망지위, 희망 월소득	o	o	x	x	x	o
지난 1년간 구직여부	o	o	x	x	x	x
비경제활동인구						
고용희망 여부	o	o	x	x	x	x
근로가능성 여부	o	x	x	x	x	x
미구직 이유	o	o	x	x	x	x
마지막 구직활동 시기	o	o	x	x	x	x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 (공통)						
지난 취업 경험 및 시기	o	o	x	x	x	x
지난 직장중단 이유	o	o	x	x	x	x
노동이동	x	o	o	x	x	x

* 숫자는 제공되는 분류수준을 의미함.

** 부가조사에서만 조사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고용통계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공시제」 시행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장의 성과 측정과 지역발전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2008년부터 지역별고용조사²⁶⁾가 시군구 단위로 생산되고 있어 기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생산되던 고용통계와 중복성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고용통계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설문지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조사목적이 동일함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덧붙여 표본추출기법이나 표본추출률 등 통계추출의 표준화라는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개별적 통계생산은 향후 추정치 비교를 다소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자료가 중앙정부 주도의 통계자료에 비해 약점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 현재 자체 고용통계를 생산하는 4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3개 지방자치단체가 분기별로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자료의 시의성면에서 1년 단위로 생산되는 지역별고용조사에 비해 다소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지역별고용조사가 분기별로 이루어질 계획이므로 이러한 우위성도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표 3.34] 중앙 및 지방정부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내용

통계명칭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경기도시군별고용조사	경상남도 창원시경제활동인구조사	군산시경제활동인구조사	전주시경제활동인구조사
작성기관	통계청	통계청	경기도 기획조정실 비전기획관실	경상남도 창원시 기획국 정보통신과	전라북도 군산시 항만경제국 지역경제과	전라북도 전주시 기획관리국 기획예산과
승인번호	제10104호	제10167호	제21006호	제79101호	제71202호	제71103호
통계종류	지정통계 조사통계	지정통계 조사통계	일반통계 조사통계	일반통계 조사통계	일반통계 조사통계	일반통계 조사통계
최초실시연도	1963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8년	2006년
조사주기	월	1년	분기	분기	반기	분기
조사내용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혼인관계,	가구원 관리 번호, 가구 주와의 관 계, 성별, 생 년월일, 교	경제활동인 구조사와 동 일	경제활동인 구조사와 동 일	경제활동인 구조사와 동 일	경제활동인 구조사와 동 일

26) 지역별고용조사는 이전 통계청에서 조사되었던 인력실태조사가 변경 승인된 통계로서, 조사구 및 표본가구수 등을 기초로 볼 때 지역별고용조사는 구 인력실태조사의 확대판으로 해석할 수 있다.

	<p>활동 상태, 취업 여부,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1주간의 구직 여부, 1개월간의 구직 여부, 취업 여부, 취업 시간, 구직 기간, 취업 희망 여부, 취업 가능성 여부, 비구직사유, 지난 1년간 구직 경험 여부 및 시기, 전직유무 및 이직 시기, 이직사유 등</p>	<p>육정도, 혼인상태, 주된 활동 상태, 취업 여부, 일시휴직 여부, 구직 여부, 취업자(2) : 취업 여부, 취업 시간, 실업자(3) : 취업 가능성, 구직 경로 및 방법, 구직 기간, 비경제 활동 인구(3) : 취업 희망지위 및 소득, 비구직사유, 지난 1년간 구직 경험 여부, 희망직업(일)(4) : 희망산업, 희망직업, 희망종사상지위, 희망최소임금, 전직유무 및 이직 시기, 이직사유, 산업, 직업, 종사상지위, 근속 기간, 월평균소득, 고용계약기간, 직업교육여부</p>				
조사목적	<p>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에 수립에 필요</p>	<p>지역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군·단위의 세분화된 고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통계를 생산·제공 시도별 고용구조 분석자</p>	<p>경기도민의 경제활동, 취업·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p>	<p>창원시민의 취업, 실업, 노동력 등과 같은 인구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노동공급, 노동투입,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p>	<p>군산시 고용동향을 파악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p>	<p>전주시민의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의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p>

	한 기초자료 인 노동공 급, 고용구 조, 가용노 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 용정도를 제 공하고 정부 의 고용정책 입안 및 평 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 공	료 및 산업· 직업에 대한 세분된 자료 를 생산·제 공	자료 제공	자원의 활용 정도 파악, 고용창출 등 을 위한 창 원시의 경제 정책 입안 및 평가 자 료로 활용		료 제공
통계별진단	2008	-	2009	-	-	-
지역별고용통 계 조사 후 발간 여부	계속 발간	-	계속 발간	계속 발간	계속 발간	계속 발간

마지막으로 진단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는 그 주요 목적이 산업 세분류별 현원, 이입직, 부족인원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는 점에서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와 매우 유사하다. 또한 방송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도 동일한 맥락에서 유사성을 지니며, 장기적으로 이들 통계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할 방안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35] 인력수급관련 사업체조사들의 조사항목 비교

	조사항목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	(사업체고용동향조사)현원,빈일자리,입직,이직 (특별조사) 상용, 기타 및 외국인 근로자의 현원과 부족 인원, 채용계획인원 등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1. 조사사업체 일반현황 : 사업체명, 설립년도, 주소, 사 업자등록번호,공단입주 유무, 업종, 주요 생산품, 부품소 재업체 유무 및 부품소재 품목, 사업체 유형, 매출현황, 종업원 현황, 연구개발 부서 유무 및 인력 규모 2. 현재 고용 중인 산업기술인력 관련 현황 가. 세부분류 : 성별, 고용형태별, 연령별, 외국인 인력, 1인 연간 급여액, 보유 인력 만족도, 학력별, 전공별 3 산업기술인력 부족 현황 : 산업별,직종별, 지역별 부족 인력 및 부족률
방송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	학과별 졸업생수, 입학생, 취업생수(이상 한국교육개발원 자료) 사업체 일반사항, 사업체 고용현황, 직종별 인력현황, 직 무별 인력현황

* 2010년 고용분야 주제별 진단의 대상이 아님.

제 4 장 발전방향

제 1 절 진단결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1. 충족성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고용정책은 완전고용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시경제정책에서 시작해서 인력개발정책, 인력수급정책, 임금, 노사관계, 노동복지를 포괄하는 노동정책 등 다양한 정책 과제와 관련된다. 따라서 이번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조사들이 이러한 고용정책의 전체 수요를 다 포괄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평가 대상이 되는 조사들이 고용이라는 정책적 수요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보고자 한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고용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과 ‘근로빈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지고 경기회복도 이루어지는 데 고용은 예전만큼 늘어나지 않고, 고용이 늘어나도 이것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환경 변화는 고용 창출을 위한 지역의 역할에 대한 강조와 정책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유발하였다. 고용 통계도 이러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삼기 시작했다.

가. 고용동향 및 구조분석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 고용동향 및 구조의 분석에 있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및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가 활용될 수 있고, 지역별 고용동향 및 구조분석을 위해서는 4개

지자체 고용조사(경기도, 창원시, 군산시, 전주시)가 존재한다. 또한 노동력이 동시 글로벌화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을 활용할 수 있다.

고용동향 및 구조의 분석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었던 문제는 소지역별 고용통계의 생산이다. 우리나라 고용통계의 가장 대표성 있는 고용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표본규모의 한계로 인하여 소지역 고용의 규모와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러한 통계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별고용조사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었지만, 2008년부터 시작되었다. 소지역별 고용에 관한 대표성 있는 지표가 제출되기 시작한 것이다.²⁷⁾ 그 결과 과거 가장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던 소지역별, 직업중분류별, 산업중분류별 고용동향과 관련된 시의성 있는 통계는 2010년부터 지역별고용구조조사가 분기별로 이루어질 계획이므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별고용조사는 확대 이후에도 광역시 구단위의 고용통계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광역시 구단위 고용통계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²⁸⁾

고용동향 및 구조 분석에 있어 충족성과 관련한 또 하나의 문제는 외국인 고용동향에 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앞서서도 지적하였지만,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은 고용허가제와 연계되어 2004년 이후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근로자에 한정될 뿐 그 이전에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나 불법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 반면 지역별고용조사 등 가구조사는 가구조사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표본에 제대로 포착되지 못한다는 한계로 인하여 통계활용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형편이다. 근로자 국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별 고용조사의 경우 가구조사라는 한계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는 주로 가구보다 기숙

27) 그러나 이 조사가 너무 늦게 추진되는 바람에 이미 경기, 창원, 군산, 전주 등 개별 지자체별로는 지역고용사정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동일한 조사를 추진하게 되어 중복성과 조정의 문제를 야기하였다.

28) 시군뿐만 아니라 구단위 고용통계 생산의 필요성은 2010년부터 시행될 지역별 일자리공시제 등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통계수요 확대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사 등 집단시설에 거주할 가능성과 그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과소 표본(under-represented)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 동향은 행정자료로 해당 제도를 통해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동향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나 지역별고용조사에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항목이 없다. 공공부문의 인원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총괄적이고 신뢰성있는 자료는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정부 내에서 공공부문을 정의하고 행정자료를 통해서 파악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공부문과 비공공부문 사이의 체계적인 비교가 가능하려면, 일반 고용조사에서 공공부문 변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고용정책의 핵심이슈에서 '고용의 질'과 관련된 이슈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져감에 따라, 취업자수, 실업자수 등 고용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위주의 자료 생산을 넘어서 고용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를 생산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공식고용통계와 체감고용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감을 메워줄 수 있는 다양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용통계는 국제기준에 의한 통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체감하는 고용 기회와 공식 고용통계가 시사하는 고용기회 사이의 괴리로 인하여 공식통계에 대한 불신이 우려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통계는 이러한 체감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 다양한 보조지표들을 생산하여 분석과 정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재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감안하면 노동력의 저활용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생산하는 동시에 각각의 지표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공식통계와 체감실업의 괴리 배후에 존재하는 정책적 필요성에 부합하기위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에서처럼 노동력 저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체계적인 보조지표로서의 U1-U6 지표와 비슷한 지표를 개발하여 다양한 대안

적인 실업통계를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공표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의 지속성, 안정성 등과 같이 괜찮은 일자리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미흡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최근 ILO나 UNECE 등 국제기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와 같이 “일자리 질(quality of work)”과 관련된 지표를 국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인력수급정책

한편 고용정책에서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노동시장에서의 정보를 원활히 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통계적 수요는 인력수급 전망과 구인구직정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력수급 전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업과 직업에 관한 대표성 있는 통계가 장기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의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산업과 직업 분류의 제한, 표본 수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인력수급 전망에 적절하지 못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가 이루어졌다.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는 지역별고용조사로 2010년부터 통합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산업과 직업 세분류별 대표성 있는 취업자수가 제공되고 있는 통계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통합 과정이 인력수급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의 기존의 조사 자료를 새로운 조사 자료와 연계 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다양한 형태의 인력수급조사들의 문제도 이들 조사의 대표성 문제이다. 대표성 있는 모집단이 있어서 이로부터 표본을 추출해서 의미 있는 인력수급 전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구인, 구직과 관련한 일자리 미스매치의 문제도 우리나라 고용 정책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이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자료인 위

크넷에서 구인과 구직에 관한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에 들어오는 계층은 자료의 특성 상 취약계층이 과잉대표(overrepresented)되는 등 그 표본이 제한적이고 편의된 계층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노동시장의 대표성 있는 구인구직 데이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향후, 고용서비스가 확대되고 고용정보시스템에서 워크넷의 역할이 확대될 수록, 워크넷이 제공하는 구인, 구직 관련 통계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일자리 미스매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서비스의 선진화가 매우 중요하다.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위하여 현재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고용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고용서비스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세심한 정책설계와 검증에 있어 애로를 발생시키고 있다.

다. 이공계인력정책

이공계인력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등 동향 및 수급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조사가 존재하고,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대한실태조사는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자세한 근로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외유출 및 유입인력, 그리고 여성과학기술인력 등 특성별 자료도 존재하며,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에 대한실태조사 내 개인별조사, 청년패널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등 다양한 패널조사를 통하여 동태분석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때 이공계인력정책과 관련해서는 고용통계가 정책적 수요에 대체로 잘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년패널조사의 경우 2007년에 새로운 wave가 시작되어 패널이 한 번 단절된 바가 있으며,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패널조사가 아니라 추적조사에 더 방점을 둔다는 점에서 장기추적조사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청년고용대책

청년고용정책과 관련하여서도 현재 제공되고 있는 통계는 정책수요의 상당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고용동향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지역별, 산업세분류별, 직업세분류별 고용동향과 인력수급전망은 지역별고용조사와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부가조사는 청년층 고용과 관련한 기초정보에 대한 전국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통계를 제공한다.

청년인턴사업 등 청년층 일자리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분석과 학력과잉/전공불일치 등으로 인한 미스매치 문제의 요인 분석 등 구체적인 정책의 장기효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패널자료를 활용해야 하는데, 현재 존재하는 자료로는 청년패널조사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청년패널과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현재로서는 장기추적조사를 위한 목적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존재한다. 청년패널의 경우 이러한 장기추적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계되어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패널의 관리와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청년고용관련 패널자료들은 특정한 그룹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샘플 수가 너무 작아 신뢰성 있는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마. 여성고용정책

현재 “일-가정양립”, 경력단절 등 저출산·고령화 경향 속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논의되고 일부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는 아직 파편화되어 있으며 전국적이고 일관된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여성관리자패널조사, 강원도취업여성실태조사, 대구경북여성인적자원개발실태조사 등이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고 다른 일부는 전문직 여성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이들 조사 사이에 일관성이 충분하게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에서 여성근로자들의 동태적 경력이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할 수 있는데, 청년고용관련 패널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등 특정한 하위 그룹에 속하는 여성근로자들에 대한 엄밀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샘플 수의 한계로 인하여 종종 분석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바. 비정규직대책

제3장에서 논의하였듯, 비정규직대책과 관련해서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부가조사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실시로 우리나라 비정규직고용에 대한 가구조사와 사업체조사 모두를 활용하여 비정규직의 고용규모 및 동향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노동패널조사 등을 활용함을 통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이행 등 다양한 장기추적조사도 가능하다.

다만, 최근 들어 비정규직법의 통과와 더불어 기간제 고용 구성의 변화와 기간제와 간접고용의 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흔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조사항목으로는 간접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사. 기타 근로취약계층 고용정책

한편 우리나라의 고용 조사의 취약한 점 중의 하나가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 중소한계기업근로자 등

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고용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이 우리나라 고용정책의 최대의 과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가 좀 더 치밀하게 설계되고 추진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로서 비정규직, 비임금근로자, 청년, 고령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체 기준으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경찰 부가조사와 사업체조사가 1년에 한번 제한된 규모와 설문 문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수요를 다 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패널조사가 여러 기관들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근까지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가구조사와 사업체조사에서 어느 정도 통계가 정비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 중에서도 자영업에 대한 통계는 매우 제한적이고 전혀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영세자영업에 대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007년부터 시작된 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자부가조사는 이러한 정책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고 있지만, 창업률, 폐업률, 사회정책과 관련된 조사항목들 등 사회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영업자 및 가족근로자들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하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한 부분이 임금과 소득에 관한 조사이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사나 행정자료의 활용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현행 통계시스템 내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규모와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경력이동, 근로조건, 특성 등에 대한 통계적 정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아. 패널조사

패널조사 중에서 한국노동패널조사가 가장 대표적이고 오래된 패널 조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표본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점차 다양화하고 확대되는 고용 관련 정책 수요를 다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다양한 패널조사들이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패널조사에 대한 통폐업 논의까지 제기되고 있다.

고용정책의 다양하고 심화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CPS와 같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패널화할 수 있도록 하고, 패널조사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복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대표성 있는 패널의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고용통계의 정책 방향을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1] 고용통계의 충족성

	문제점
고용동향 및 구조	외국인고용 동향 통계 부재 공공부문 고용규모 및 동향 통계 부재 부분고용 등과 관련된 지표 부재 '일자리의 질'과 관련된 통계 부재
인력수급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의 통폐합에 따른 문제
이공계인력대책	장기추적조사 상의 한계
청년고용	장기추적조사 상의 한계 패널조사 샘플 수의 한계
여성고용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관련 대표성 있는 실태조사 부재 패널조사 샘플 수의 한계
비정규직고용	'간접고용' 관련 통계 부족
기타근로취약계층	비임금근로자(자영업자 및 가족근로자) 실태 관련 통계 부족 비임금근로자 임금 및 소득 관련 통계 부족 외국인근로자 근로실태 통계 부족
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표본수의 한계

2. 효율성

고용정책의 수요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관련 통계도 다양해지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중복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절에서는 효율성 차원에서 현행 고용관련 통계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해소할 대안을 제시한다.

가. 고용동향 및 구조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중복성 문제는 2008년 통계청의 인력실태조사가 지역별고용조사(2008년 당시 시군구고용통계조사)로 전환됨에 따라 제기되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조사로 전국과 16개 광역시도의 실업률과 고용률 등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는 반면, 지역별고용조사는 2010년 현재 반기 조사로 시군 단위의 노동시장 동향만을 발표하면서 중복성 문제를 다소 회피하는 듯하다. 하지만 광역도에 속해있는 시군 단위의 노동시장 동향을 합하면 비교적 정확한 도 단위의 고용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자료 간 중복성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희망직업과 관련하여 지역별고용조사가 부가적인 정보를 추출하고 있으나, 사실상 두 자료의 주요 결과물은 실업률과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로서 공표범위가 시도수준인지 혹은 시군구수준인지의 차이만을 가지고 있다. 물론 공표주기가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인 반면, 지역별고용조사는 반기라는 차이가 있어 각 통계자료의 생산목적이 다른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공표범위와 공표주기 간의 상충관계는 선진국 사례를 볼 때, 단순한 선택의 문제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캐나다나 유럽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 선진국은 조사범위를 넓게 하는 대신 자료의 생산주기는 분기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현재 생산하고 있는 통계를 비취 설명하자면,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지역별고용조사를 분기별로 생산하는 정도로 표현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들 국가들은 고용통계의 역할과 시의성을 고려하여 월간 실업률 등 주요결과물을 추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2010년 말 이후 예정된 고용노동부의 지역 일자리 공시제 시행은 광역시도 뿐만 아니라 시군구 단위의 고용성과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취업자수 증가율과 고용률 증가율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존 지역별고용조사의 자치구 단위로의 확대 및 조사주기의 확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실제 지역별

고용조사의 조사범위와 주기가 확대된다면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중복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역별고용조사의 시행은 현재 일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중복성 문제를 낳고 있다. 지역별고용조사가 실시되기 전 경기도, 창원시, 전주시, 군산시는 개별 지자체별로 지역고용 동향 파악을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2008년 지역별고용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이들 조사간의 중복성 문제를 야기하였다.

지역별고용조사가 생산되기 이 전, 시군구 단위의 고용통계가 전무한 시기에 고용통계 생산은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컸다 하겠다. 하지만 지역별고용조사가 시군구 단위로 통계를 추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개별적 고용통계추출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국가통계의 효율적 관리차원에서 지자체의 고용통계는 폐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지역별고용조사가 실시되기 이전 이들 지자체의 고용통계 추출은 해당 지역의 고용실태 파악을 통한 적절한 수준의 고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었던 만큼, 이들 고용통계의 단기적 폐지보다는 보완차원으로 개선될 여지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전국 및 시도단위의 기초고용통계를 생산하는 것에 더해 부가조사를 통해 고령자, 청년,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하는 것과 같이 이들 지자체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부가조사형태로 전환하는 것도 한 방안이라 판단된다.

나. 인력수급분석 및 전망

인력수급전망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을 각각 전망하여 향후 예상되는 노동부족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들 노동부족분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의 고용정책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

정이라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은 아니나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를 통해 사업체 단위에서 현원, 부족인원, 채용예정인원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추가로 훈련수요조사를 통해 노동부족분에 대한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가 단기 인력수급전망치로 주로 활용되는 반면,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산업직업별 고용조사가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산업직업별 고용조사의 활용도가 높는데 이는 보다 정교한 전망을 위해 세분화된 산업, 직업분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 있어서 산업별직업별고용조사의 또 다른 장점은 보다 세분화된 산업, 직업 분류가 가능하다는 점뿐만 아니라 인력수급전망이라는 정책목표에 적합한 직업 분류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즉, 유사직종을 기초로 작성되는 한국고용직업분류를 사용함으로써 특정 기능을 가진 인력이 어떤 직종에 취업가능한지를 보여 줄 수 있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표준직업분류가 활용되는데, 동 분류는 유사직종이라 하더라도 일차적으로는 직능수준별로 직종이 분류되어 가용한 인력공급풀을 확인하기가 다소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직업분류체계와 관련해 적어도 인력수급전망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사가 우위에 있고, 그래서 인력수급전망을 위해 특정 자료가 활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신 표준고용분류와 고용직업분류를 세부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연계표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일 것으로 판단된다.²⁹⁾

이상과 같이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는 단기인력수급전망을 위해 활용되고 중장기전망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나 산업직업별 고용조사가 활용되고 있어, 자료간 보완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진단대상 중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와 방송통신부문인력실태조사는 사업체

29)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고용직업분류는 2007년 개정 당시 세분류(4-digit)수준에서 매칭되도록 조정되어 있다. 따라서 두 분류 사이의 연계표를 온라인 등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두 분류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동향특별조사를 특정 산업과 업종별로 세분화한 조사로서 다소 중복의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여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료간 통합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주의할 점은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의 조사범위가 소분류 수준의 업종에 국한되기 때문에,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가 보다 세부적인 업종분류를 통해 인력수급동향을 분석해야 하는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로의 직접 대체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 실태조사 및 동태분석

고용사정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서 실업자규모를 꼽을 수 있다. 고용사정이 악화되었다면 실업자규모는 커질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줄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실업자규모(stock) 뿐만 아니라 취업자, 실업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유출입(flow)을 통해 노동시장 동향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실망실업자의 급증으로 인해 고용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공식실업률이 높지 않다거나, 실망실업자는 왜 급증하는지에 대한 비교적 복잡해진 노동시장의 현안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패널자료는 보다 복잡해진 고용사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며,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청년패널조사, 여성관리자패널조사 등 다양한 종류의 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각각의 패널자료가 특정 대상이나 목적을 위해 작성된 만큼 패널자료간 중복성 문제는 제기되기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대표적 패널자료라 할 수 있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경우 패널규모가 제한되어 다양한 고용정책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패널자료를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최근에는 한국노동패널조사를 대표 패널자료로 확대하고 기타 특정 계층에 대한 패널조사는 부가조사화하자는 의견 등 패널조사에 대한 통합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이상과 같은 논의는 비용효율성에 초점을 둔 나머지 특정 계층에 대한 조사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지속성 측면에서 추가로 노동패널에 표본을 더 붙일 것이고 이를 기초로 여성과 청년 고령자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적정규모를 산출하다 보면, 계층별로 조화를 이루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의도와는 반대로 전체적인 규모만 커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현행 패널조사의 한계는 미국의 CPS와 같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패널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차선책일 것으로 보인다.

3. 이용편의성

이용편의성 문제는 메타데이터 및 조사표의 온라인 제공 여부, 통계의 온라인 제공여부 및 이용자들의 원자료에 대한 접근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진단한다.

가. 메타데이터 및 조사표의 이용편의성

최근 KOSIS를 통한 메타데이터 제공방식에서 이용편의성의 현저한 개선이 나타났으며, 통계활용에서 통계에 대한 설명을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고용분야 진단대상 통계의 모든 통계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10년 현재 KOSIS에는 진단대상에 해당하는 23개 모든 통계들에 대한 메타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진단대상 모든 통계들의 조사표가 제공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가공통계인 사업체노동실태현황과 보고통계인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및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을 제외한 20개 통계 중 16개 통계의 조사표만이 제공되고 있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경기도 시군별고용조사, 방송통신부문인력실태조사, 이공계인력국내외유입및유출실

태조사 등 4개 통계에 대한 조사표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³⁰⁾

[표 4.2] KOSIS 통계별 메타정보 및 조사표 제공 유무 현황

(2010년 8월 1일 현재)

통계명칭	메타정보 제공유무	조사표 제공유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o	x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o	o
사업체노동실태현황	o	해당없음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o	o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o	o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o	o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치우등에관한실태조사	o	o
청년패널조사	o	o
한국노동패널조사	o	o
경기도시군별고용조사	o	x
경제활동인구조사	o	o
방송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	o	x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o	해당없음
위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	o	해당없음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o	o
경상남도창원시경제활동인구조사	o	o
군산시경제활동인구조사	o	o
전주시경제활동인구조사	o	o
강원도취업여성실태조사	o	o
대구경북여성인적자원개발실태조사	o	o
여성관리자패널조사	o	o
이공계인력국내외유입및유출실태조사	o	x
지역별고용조사	o	o

나. 통계의 온라인 제공 여부

진단대상 23개 통계 중 통계청 KOSIS 포털을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한 통계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업체노동실태현황,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치우등에관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방송통신부문인력실태조사, 외국인근로자고용동향, 지역별고용조사 등 7개 통계이다. 그 외 16개 통계 중 대졸자

30)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조사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직업이동경로조사, 청년패널조사, 한국노동패널조사 등 3개 패널통계와 산업
직업별고용구조조사 및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는 해당 기관의 웹사
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경기도시군별고용조사, 워크넷구인구직및취
업동향,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강원도취업여성실태조사, 대구경북
여성인적자원개발실태조사, 여성관리자패널조사 등 7개 통계는 통계 자료를
웹페이지에서 직접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지 않지만,
작성기관의 웹페이지에서 결과보고서를 구할 수 있다.

경상남도창원시경제활동인구조사, 군산시경제활동인구조사, 창원시경제활동
인구조사 등 3개 지자체 고용조사와 이공계인력국내외유입및유출실태조사는
결과보고서는 온라인으로 결과보고서를 얻을 수 없다.

[표 4.3] 통계별 통계자료 공표 여부 및 경로

통계명칭	통계자료 제공 경로		
	통계청 포털	자체 제공	미공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	
사업체노동실태현황	○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	
이공계인력육성활용과처우등에관한실태조사	○		
청년패널조사		*	
한국노동패널조사		*	
경기도시군별고용조사		△	
경제활동인구조사	○		
정보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	○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		△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	
경상남도창원시경제활동인구조사			○
군산시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주시경제활동인구조사			○
강원도취업여성실태조사		△	
대구경북여성인적자원개발실태조사		△	
여성관리자패널조사		△	
이공계인력국내외유입및유출실태조사			□
지역별고용조사	○		

* - 원자료 형태로 제공

△ - 기초분석보고서 상에만 공표하여 다운로드 불가능

□ - 보고서는 존재하지만 작성기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음

데이터가 KOSIS를 통해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 작성기관의 홈 link 등을 통해 데이터를 취득하는 데 있어 기관마다 작성 방법이 달라 통계이용자들에게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KOSIS의 링크를 통해 해당 웹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통계 원자료 제공

이용자 편의성과 관련하여 통계 원시자료의 공개 여부 및 사용 편의성은 중요한 사항이다. 분석 보고서 및 발표된 통계자료 외에 이용자가 직접 통계 자료를 다루고 원하는 통계량을 얻어내려면 원시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가공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통계에서의 피조사자의 개인 정보 등과 관련하여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고 또 통계를 잘못 가공하여 사용할 경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원시자료의 공개는 매우 주의 깊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 원시자료의 공개가 갖는 유용성은 정책 및 학술적 수요 측면에서 매우 크다고 생각되어 현재 고용분야에서 작성되는 통계의 원시자료가 얼마나 공개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현재 직, 간접적으로 원시자료를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통계는 진단 대상 통계 22종 중 6종이다.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통계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 데이터 시스템을 통하여 유료로 얻을 수 있는데 이에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가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연간자료 기준으로 1986년부터, 지역별고용조사는 2007년부터 이용가능하다. 이 외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작성하는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청년패널조사,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작성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얻을 수 있다. 원시자료를 공개하는 위의 통계자료들의 경우 모두 개인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별한 처리를 하여 제공되고 있다. 나머지

16종은 원시자료에 대한 공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³¹⁾

원시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한 가지 요청되는 사항은 통계청에서 제공되는 메타 데이터 상에 원시자료가 공개되는지 여부와 그 자료를 얻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통계청 메타 데이터의 '자료제공' 항목에 간행물 및 보도자료가 제공되는지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실제 원시자료가 공개되는 통계라 하더라도 공개 여부 및 자료를 얻기 위한 절차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원시자료가 공개되는 통계 외에도 향후 원시자료 공개가 확대될 경우나 제한적으로 원시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메타데이터 상에 이를 언급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신뢰성

고용 통계의 신뢰성은 정책적 신뢰성과 기술적 신뢰성으로 구분해서 검토할 수 있다. 정책적 신뢰성이 고용 관련 통계가 고용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고용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의 문제라면, 기술적 신뢰성은 통계기술적 차원에서 정확하고 엄밀하게 통계가 생산되고 유통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술적 신뢰성은 통계의 조사 방법, 추정 절차의 적절성, 현장 조사 관리 정도와 이러한 방법들이 기초 분석 보고서 등에서 얼마나 사용자에게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는지에 달려 있다.

가. 정책적 신뢰성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고용 문제가 매우 복잡해졌고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고용 통계가 이러한 복잡하고 새로운

31)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는 온라인상에서 원자료가 제공되지는 않지만 요청시 대부분의 경우 원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현실의 고용 문제를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고 관련 고용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자주 언론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국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실업과 취업의 문제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실업률 사이의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물론 통계기술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실업률 관련 통계는 이미 국제적인 수준의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의 구조가 외국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즉 실직을 할 경우 바로 실업으로 진입하기보다는 비경제활동인구 등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 비경제활동인구에 사실상의 실업자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통계청도 나름대로 비경제활동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구직단념사유 등도 파악하고 있지만, 체감 실업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지표 등을 개발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이미 2008년에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의 대표적인 조사인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고용 통계에서 정책적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은 지역 관련 고용 통계의 정확성 문제이다.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만으로 지역 단위의 신뢰성 있는 통계를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별고용조사를 2008년부터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다만, 양 조사 간에 광역 단위의 수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지역별고용조사에서 광역단위의 통계 수치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지역 단위의 고용 정책이 확대되고 있고, 지역이 고용 정책의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 단위 고용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별고용 실태를 조사하면서,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사이에 광역단위의 통계수치를 일치시키지 못하거나, 광역단위의 통계수치를

공개하지 못한다면, 고용 통계로서의 신뢰성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고용 정책에서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의 문제이다. 비정규직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첨예한 대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관련 통계는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통계로 구축되지 않으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루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표적인 비정규직 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 형태로 이루어지는 고용형태부가조사와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 조사가 하나는 가구 조사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체조사이기 때문에 두 조사를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만, 고용형태 분류에서는 두 조사가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경우 고용형태가 상호 중복이 가능한 형태로 조사되고 있는 반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상호배타적으로 조사설계가 되어 있다. 양 조사가 비교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설계 구조를 바꾸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찰 부가조사에서 배타적으로 설계하는 조사를 한 번쯤은 시도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나. 기술적 신뢰성

기술적 신뢰성의 부분에서는 많은 고용 관련 통계들이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본관리나 조사방법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많은 조사들이 다음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응답에 대한 처리가 대부분 무시되고 있는 문제, 표본오차와 표본조사의 과정에 대한 부분은 기술되어 있지만, 개별 변수들의 표본오차에 대해서는 수치가 공개되지 않는 문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나 최저임금적용효과에관한실태조사 등 일부 실태조사들과 지역 단위의 경제활동인구조사들(경기도, 창원, 군산, 전주 등)의 경우 표본설

계의 정밀성이나 조사의 엄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대표성 있는 전국 단위의 조사와 여타 부문이나 지역 단위의 실태조사 사이의 통계적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실태 조사에 대한 조사 방법 상의 정교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고용분야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발전전략

1. 통계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고용분야 통계시스템 발전전략

우리나라 고용통계는 국제수준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정책 수요가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여 다양한 고용통계 조사들이 신설되거나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하는 수요에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노동패널을 시작으로 하여 고용 관련 각종 패널 조사들이 시작되었으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나 고용노동부의 기존의 고용관련 조사들도 부가조사를 실시하거나 조사내용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고용문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비정규직 등의 분야에서는 외국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통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고용통계가 고용정책의 필요성에서 발생하는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장단기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가. 신규통계의 필요성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 우리나라의 고용통계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개별 부처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정책수요에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통계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는 몇 가지 분야가 존재한다.

1) 비임금근로자

우리나라의 고용 주체의 통계시스템에서 자영업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 자료가 부재하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자영업의 경우, 일반 임금근로와는 다른 근로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고용조사 틀 속에서 이루어진 표본이나 설문 문항에서 독립된 형태로 조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제활동인구 비임금근로자 부가조사에서 자영업자 및 가족근로자에 대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비임금근로자들의 경우 근로자로서의 특성뿐만 아니라 사업주로서의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가계조사를 확대하거나 표본수를 확장하는 것만으로는 그 특성을 모두 파악하기 어렵다. 산업정책, 고용정책, 그리고 사회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이들 비임금근로자들의 세부적인 특성과 노동시장에서의 동태적 속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구체화된 실태조사와 패널조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여성 및 가족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여성 및 가족관련 통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가정양립’, 경력단절 등 노동시장에서 여성근로자들의 동향 및 경력이동, 그리고 장애요인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들이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현재로서는 다소 산발적이고 분산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특히 이러한 주제들과 관련된 대표성 있는 실태조사가 부재하다는

점은 이러한 느낌에 확신을 더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일-가정양립 및 경력단절 등 여성고용의 핵심 이슈들에 대한 대표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여성(가족)부가조사를 추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타 현존하는 여성 및 가족 관련 통계를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 조사와 연계하여 역할분담을 강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외국인근로자 및 기타

노동시장에서도 국제화가 진전되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 및 실태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외국인 고용통계에 대한 정확한 규모의 추정에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공식적 고용통계의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취약계층으로서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존하는 외국인 관련 통계 중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제)고용동향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규모만을 법무부의 행정통계로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의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지역별고용조사 등 가구조사는 가구조사로서의 한계로 인하여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실태를 조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문제의 주요한 이슈가 되는 나라들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가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에 준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맥락에서 통일에 대비해서 탈북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이미 탈북자에 대한 고용정책적 대응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탈북자 조

사를 위해서는 탈북자의 모집단에 대한 통일부의 조사 협조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통계청의 조사기법이 적용되는 대표성 있는 조사가 되려면 정부 부처 간 협의와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탈북자 조사의 경우 신규조사도 필요하지만, 불법이주자 파악을 위해서는 기존 행정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안도 동시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귀화노동자도 우리나라의 인구-고용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나 귀화노동자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귀화노동자들의 경우 제2세대-3세대가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을 추적하는 조사가 필요하다.

4) 고용서비스산업 통계

정부는 (가칭)‘고용서비스촉진법’의 제정을 통하여 선진국형 종합인력회사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다. 이 법은 민간 고용중개회사를 지원 대상으로 삼아 고용서비스 시장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촉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공공고용서비스만으로는 증대하는 고용서비스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고, 고용서비스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 모델 구축이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취약한 민간고용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고용서비스업에서 이루어지는 취업알선은 대부분 건설일용직, 간병인, 파출부 등 임시직과 일용직에 집중되어 있으며, 직업소개사업이 파견사업이나 직업정보제공사업과 결합한 종합인력서비스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민간고용서비스의 전문화, 대형화는 불가능하고, 현실을 무시한 정책들은 자칫 시장을 더 왜곡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매우 크다. 따라서 고용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개발과 검증은 위해서는 민간고용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실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기존 통계의 활용성 제고

소지역별 고용통계의 보강, 통계의 시의성의 확보 등의 문제들은 기존 통계를 보강하거나 통계 간, 그리고 조사통계와 행정자료와의 연계 등을 통하여 보다 정책수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통계간 연계분석 확대

고용 문제와 고용 정책은 특정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한 시점을 두고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자료의 패널화가 중요하다. 또한 고용 문제는 복지나 산업 등 다른 주제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즉 자료를 연계시킬 수 있을 경우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더 많은 정책 수요에 부응할 수 있기 된다. 따라서 기존의 조사 자료를 패널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기존 자료를 패널화하거나 다른 자료와 연계하는 방법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정책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패널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별로도 패널로 연결할 수 있고 가구별로도 패널화할 수 있다. 물론 3개월마다 표본이 바뀌는 문제가 있지만, 이는 통계적인 방법을 연구해보면 패널화하는 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미국의 CPS의 경우에도 이미 패널로 자료를 연결해서 연구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와 가계실태조사는 동일한 가구 표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 자료를 연계할 경우, 보다 풍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당장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사업체자료나 행정자료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의 경

우, 이를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어 지난 10여년 간 연구해온 것으로 알려졌
있다. 피용자-사업체 동시 패널 자료를 구축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편으
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사업체를 확인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
체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 시스템(Business Register)을 구축해야 한다.

더 나아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개인 데이터를 행정자료(예를 들어 고용보
험의 개인 자료)와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주로 덴마크나 스웨덴
등 북구형 국가들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정책 과제
로 검토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행정자료 활용 확대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 등 행정자료가 점차 커
버리지를 높이면서 확대되고 있고 이것이 DB로 구축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
한 기존 조사들을 행정자료와 연계시키는 것도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정책 수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DB의 직업력 자료나 고용정책 관련 자료들이 기존의
패널조사나 사업체 수준의 조사들에 결합될 경우, 고용사정에 대한 더 풍부
한 분석과 고용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더 정확한 자료가 구축될 수 있
을 것이다. 실제 미국, 유럽,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조사통계 이외에
노동행정자료의 활용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가령, 미국에서는 기업체 조
사(Current Employment Survey: CES)의 표본추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하며, 사업체의 창업과 폐업 등이 일자리 흐름(job flow)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 지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행정자료 활용의 이점은 단순히 기존 조사자료와의 연계할 때 뿐만 아니라
조사자료의 대체재로 활용할 때도 나타난다. 비록 행정자료가 법률의 개정
에 따라 시계열적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고, 행정내용에 따라 특정 집단에 대한
정보만을 수록하여 자료의 대표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약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행정자료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조사비용과 응답부담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전수조사로서 표본추출시 선택편의(selection bias)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상과 같은 행정자료의 장점에 기초하여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행정자료의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용관련 행정자료로 비교적 자주 언급되는 자료는 주로 고용보험DB, 워크넷 구인구직 DB와 함께 HRD-Net과 외국인근로자 고용동향 등으로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고용관련 대표적 행정자료인 고용보험DB를 활용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고용보험DB는 2010년 8월 현재 천만명 이상의 피보험자 정보를 수록하고 있고, 1998년 10월 이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적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고용보험DB의 활용은 산업 소분류별, 시군구별 고용동향분석을 가능케한다. 또한 1995년 이후 자료가 축적되어 피보험자나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의 장기이력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동 자료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김준영(2010)의 연구는 고용보험DB의 강점을 이용한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김준영은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실업률과 고용률의 한계를 지적하며, 고용보험DB를 활용한 신규 노동시장지표를 제안하였다³²⁾. 이 연구의 차별성은 경제활동인구조사나 지역별고용조사와 같은 조사자료가 횡단면 자료로서 근로자의 이력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과 조사범위나 조사주기의 한계로 시의성 있는 시군구 단위의 고용동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군구 단위의 월간 고용지표를 작성했다는 점에 있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는 고용유지관련지표로서 피보험자격유지율과 피보험자 평균근속일과 함께 입직 및 이직 관련지표로서 피보험자격 상실자의 평균 유지율 등을 개발하였으며 또한 기존 실업률의 대체지표로서 고용

32) 김준영(2010), 고용보험DB를 이용한 신규 노동시장 지표 개발 및 활용, 한국고용정보원.

보험실업률도 소개하고 있다³³⁾. 개발된 지표는 시군구 단위까지 활용되었는데, 주목할 점은 전주시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고용동향 파악을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이다.

다만 고용보험DB를 활용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고용보험자료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근로자)의 직업력을 분석할 때 피보험자 이력의 기본적 응답주체가 근로자 자신이 아니라 사업체라는 점이다. 이는 사업체 인사담당자의 고의 혹은 실수로 피보험자의 직업력이 자료로서 부정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가령, 한 근로자가 이직을 했을 때 이에 대한 정보는 3년 이내에 소급하여 보고될 수 있어, 자료의 시의성과 정확성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두 번째, 소멸 사업장의 경우 실제 사업체가 폐업을 하더라도 고용보험DB에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자료가 삭제된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장 소멸이 폐업에 의한 것인지, 혹은 업종변경에 의한 것인지, 그리고 소유권의 이전을 통해 해당 사업장이 지속가능한지 등의 문제를 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로 인해 고용보험DB가 자료로서의 정확성이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³⁴⁾.

또한 고용보험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고용보험DB의 정보는 주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중심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가구조사와의 연계 보다는 사업체조사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행정자료의 활용도가 높은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자료생성과정 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보험자료의 연계를 사업체조사에 집중하고 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기존의 가계 단위 조사에 고용보험DB를 비롯한 여타 행정자료(예를 들어 건강보험자료)의 정보를 결합하는 방법은 있다. 가계 단위의 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가계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체(즉 가구주 등이 취업해 있는 사업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가계 단위 조사에서 개인ID가 파악될 수 있다면, 가계 단위 정보와 행정자료의 결합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33) 고용보험 실업률=(실업급여 신청자수 + 수급자 수) / (피보험자수 + 신청자수 +수급자수)

34) 사업체의 생성과 소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Stamas, Goldenberg, Levin, and Cantor(1997) 참조

는 통계법 상의 보안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할 것이다.

또한 현재 고용보험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다. 일반 연구자들은 행정자료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전체 자료의 1%만이라도 공개하는 방안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용보험에는 가계 관련 자료가 부재하기 때문에 또한 고용보험만이 연계되는 것이 아니라 4대보험 자료가 연계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과부에서 대학률 취업률 조사를 할 때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하는 사례를 고용 분야에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3) 소지역단위 고용통계 보강

지역별고용조사가 확대되고 그 조사주기의 단축이 계획됨에 따라 앞으로 소지역별 고용통계는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의 단계에서도 지역통계는 전국 158개 시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역시 구단위의 통계는 발표되지 못하고 있다. 소지역단위의 통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구단위 통계의 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 새로운 지표의 개발

고용형태가 다양해짐으로 인하여 공식 고용통계와 체감 고용기회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경제적 사유의 추가취업희망자 등 유사실업지표를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홍보부족, 혹은 통계 발표의 체계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편으로는 노동력 저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고용의 안정성, 지속성, 보상의 적정성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고용의 질”에 대한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1) 실업률 보조지표의 개발

실업률 보조지표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U1-U6 지표를 참조할 수 있다.

- U1: 15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력의 비율
- U2: 실직, 혹은 기간제 계약이 종료된 노동력의 비율
- U3: ILO 정의 상의 실업률
- U4: U3 + "실망근로자"
- U5: U4 + 기타 "한계적 고용(marginally attached workers)", "느슨한 고용(loosely attached workers), 혹은 일을 원하고 할 능력이 있지만 최근 구직을 하지 않은 근로자
- U6: U5 + 경제적 이유로 전일제 직장을 원하지만 구하지 못한 시간제 근로자

2) "고용의 질" 지표 개발

"고용의 질" 관련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ILO "Decent Work Indicators"와 UNECE "Quality of Work" 지표를 참조할 수 있다.

[표 4.4] ILO "Decent Work" 지표

분야	주요 통계지표		노동권 및 법률들에 대한 정보
고용 기회	M	고용율, 실업률, 청년실업률, 자영/가족근로자 비중, 비공식고용비중,	- 완전고용을 위한 정부정책 - 실업보험
	A	교육수준별 실업, 비취학/비고용 청년 수, 종사상 지위별 고용, 비농임금근로자비중, casual/daily workers비중	
	E	경활참가율, 청년경활참가율, 비공식부문 고용 비중	
	O	장기실업률(NM), 비자발적 파트타임(NM), 파트타임 비중(NM)	
철폐되어야 할	M	임노동/자영업 아동 비율	- 아동노동

노동	C	미취학아동비율 (or E),	강제근로
	O	위험아동노동(A), 기타부당아동노동(F), 강제노동(F)	
적정한 수입과 생산적 노동	M	근로빈곤층, 저임금고용	법정 최저임금
	A	직종별평균임금, casual/daily workers 수 및 임금, 제조업 임금지수	
	E	부적합고용율(과소수입), 평균실질임금	
	F	피용자 직업훈련 비중	
	L	실질최저임금	
적정한 노동시간	M	장시간 고용 비율	최대 근로시간
	A	통상근로시간, 1인당 연간근로시간, 부분고용비율 (시간 관련)	
	O	불규칙/비사회적 근로시간(NM)	
고용안정성	E	근속 1년 미만 임금근로자 비율, 한시근로비율	고용보호법제
일가정의 양립	E	유자녀(의무교육 연령 이하) 여성 취업률	출산휴가
	L	출산휴가	
	O	출산연령 여성 노동시장 참가율(NM), 보육제도(NM)	
고용평등	M	성별 직종 분화, 경영·행정직종 여성고용비율	성차별 방지법
	A	이민근로자 부문간 분산도	
	E	여성고용비율	
	O	여성전문기술직근로자 (NM), 인종, 민족, 종교, 정치적 견해, 추방 및 사회적 출신 등에 의한 차별(NM), 장애인 및 여성근로자에 대한 동등한 고용기회 및 대우 (NM)	인종, 민족, 종교 및 국적에 기초한 차별 방지법
안전한 작업환경	M	산재율(치명적)	산재보험시스템 근로감독
	A	산재율(비치명적)	
	E	근로감독관 비율(or L)	
	L	산재보험적용율	
	O	근로스트레스, 질병, 장애(NM)	
사회보장	M	정부사회보장지출, 연금수혜자비율	연금 질병 및 장애로 인한 근로 불능자에 대한 사회보장 및 범위
	A	사회보험(연금/의보)적용율	
	E	현금소득보전지출, 현금소득보전수혜자비율, 월평균연금	
	F	연금기여자 비율	
	O	비가구의료비지출 비중(M)	
사회적 대화	M	노조가입률, 유노조기업 수, 단체교섭적용율	결사 및 조직의 자유 단체교섭권 노사정 협의
	A	파업 및 직장폐쇄 일수	
	L	결사의 자유	
경제사회적 맥락	C	노동생산성, GNI, 소득불평등, 인플레이션율, 부문별 고용, 산업별 여성고용비율, 교육수준, 임금소득비율	

[표 4.5] UNECE "Quality of Work" 지표

1. 고용 안전 및 윤리(Safety and ethics of employment)	
1-a. 작업장 안전	치명적 산재율

(Safety at work)	비 치명적 산재율 직업병 발생율 “위험” 산업 및 직종 종사율 직무상 고 스트레스 근로자 비율
1-b.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Child labor and forced labor)	법정 최소연령 근로자 비율 위험 산업 및 직종 종사 18세 이하 근로자 비율 18세 이하 과다 근로시간 근로자 비율 과다 근로시간 아동 가족 근로자 비율 고용주 또는 브로커에게 속은 취업 이주근로자 비율 강제 또는 강압에 의해 근로한 경험이 있는 이주 근로자 비율
1-c. 정당한 처우 (Fair treatment in employment)	성, 소수민족, 이민자, 원주민, 장애인, 고령자, 지역 등 관련 다양한 고용 통계
2. 근로소득 및 급부 (Income and benefits from employment)	
2-a. 근로 소득 (Income from employment)	근로자 평균 지급 저임금 근로자(시간당 중위임금 2/3 이하) 비율 주당 소득의 분포(10분위)
2-b. 비임금 금전적 급부 (non-wage pecuniary benefits)	연차 휴가 가능 근로자 비율 연간 사용가능 평균 휴가일수 병가 이용 가능 근로자 비율 연간 사용가능 평균 병가 일수 부가 의료보험 적용 근로자 비율
3. 근로시간 및 근로생활의 균형 (Working hours and balancing work and non-working life)	
3-a. 근로 시간 (Working hours)	1인당 주별 평균 실근로시간 주별 49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 비율 비자발적으로 주당 30시간 이하 근무 근로자 비율 실근로시간 분포 부업 종사 근로자 비율
3-b. 근로 시간의 조정 (Working time arrangements)	주로 야간 또는 저녁 근무 근로자 비율 주말 또는 휴일 근무 근로자 비율 탄력근무 근로자 비율
3-c. 근로생활의 균형	모성·부성·가족휴가 급여 수급 근로자 비율 가구별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 20-49세 전체 여성고용률 대비 의무교육 연령대자녀를 둔 여성고용률의 비율 평균 출퇴근 시간
4. 고용의 안정성 및 사회적 보호 (Security of employment and social protection)	
4-a. 고용의 안정성 (Security of employment)	25세 이상 임시직 근로자의 비율 비법인 자영업자 비율

	25세 이상 근속기간별 근로자 비율(1년 이하, 1-3년, 3-5년, 5년 이상)
4-b. 사회적 보호 (Social protection)	실업보험 적용 근로자 비율
	평균 주급 대비 주당 실업급여 비율
	GDP 대비 사회보장 지출 비율
	연금 기여 경제활동인구 비율
5. 사회적 대화 (Social dialogue)	
	단체 임금협상 적용 근로자 비율
	사용자단체 소속 기업 비율

라. 패널데이터의 개선

고용의 심층적이고 동태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로 패널자료가 활용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고용분야에 다양한 패널조사가 작성되고 있으나 장기추적조사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사의 연속성 확보 등에 더욱 커다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Menard(1991)는 종단면 조사 수행의 가장 큰 중요한 두 가지 목적에 대해, 첫 번째는 응답의 변화 패턴을 기술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변수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방향과 크기를 수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패널조사는 장기추적을 기본적으로 진행해야 응답의 패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향성이 계속 증가추세인지 또는 증감이 반복되는지 알 수 있고 연도가 지남에 따라 그 크기가 일정한지 또는 증가되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일 첫 조사를 포함해 약 2~3회 정도 진행되는 패널조사가 있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패널조사의 목적에 대한 기본적 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패널조사에서 조사주기는 패널조사의 조사목적에 따라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 격년단위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패널조사에서 몇 회 추적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런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총 12회가 조사된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국내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사회관련 패널조사로서 중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본질의 목적을 잘 살리고 있는 조사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청년패널조사(YP)의 경우, 최초 5,000명 규모의 패널 응답자로 시작된 YP2001은 6년을 추적한

후 종료되었고, 10,000명 규모로 시작된 YP2007은 2010년 현재 4차 추적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YP2007은 YP2001에 비해 좀 더 긴 추적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청년패널에 비해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는 패널조사로 보기에 비교적 짧은 추적을 실시하고 있다. 약 26,000명 규모로 시작된 2005GOMS는 연 단위 추적조사를 실시했지만 3회 추적 후 종료되었고, 18,000명 규모로 시작된 2007GOMS부터는 격년단위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2회 추적 후 종료하고 있다. 패널분석 기법중의 하나인 잠재성장모형(LGM Latent Growth Model)은 변인의 차수별 변화형태(증감 또는 감소)가 선형(linear)인지 비선형(non-linear)인지 뿐만 아니라 그 추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데, 2차 추적조사만을 가지고는 이에 맞는 분석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조사주기의 규칙성까지 충족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조사주기의 불규칙성은 시계열 조절 등을 통해 일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패널 조사는 궁극적으로 장기추적이 이루어져야만 본래의 조사목적에 맞는 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조사가 가능한 시스템 확보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조사의 중복성과 비효율성과 측면에서 관련해서 기존 패널조사 간 중복성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의 평가 대상인 노동, 청년, 대졸자, 여성 인력 패널뿐만 아니라 고령자, 복지, 중소기업 등 다양한 패널조사들이 추진되고 있다.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이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성이 있다고 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표본수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는 사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가능한 한 대표성 있는 가구패널과 사업체패널을 하나씩 확실하게 확보하면서 나머지 패널들을 정책 수요에 부응하도록 편재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한국노동패널조사가 2010년에 조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조사기관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패널자료를 만드는 사람이나 활용하는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모두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노동패널조사가 대표성 있는 패널로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통계생산기관과 통계청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도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기존 패널조사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방대한 양의 설문문항이 자칫 패널의 효과적 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내 패널조사 설문지의 문항수는 수백 문항에서 수천 문항에 이르고 종이설문지 규모로 보면 수십 페이지에서 수백 페이지에 해당된다. 물론 분기 형태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응답해야 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 초창기에 시작된 패널조사의 경우에는 유사한 외국의 설문지를 근간으로 하여 국내 상황에 맞도록 재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지만, 중간단계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학문적 성향과 의지에 따라 과도하게 추가된 경우가 종종 있다. 특별한 시기의 정책적 목적이나 연구 목적에 따라 추가된 경우, 응답자의 거부감은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때론 특정 문항 하나로 인해 패널 탈락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특별한 상황이라면 부가조사 형태로 특정한 연도에만 부가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설문 문항의 빈번한 변경 및 추가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때론 설문 문항의 범주 조정이 이루어질 때도 있다. 물론 분류체계의 변경이나 기준의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연히 이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조사 초기에 범주의 정확한 구분이 필요한데, 대부분은 사전조사 등을 통해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문 문항 및 범주의 변경은 자료의 연도별 비교 및 패널 분석에서 제한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국내 패널조사의 설문의 양은 응답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이다. 때론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이 1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는데, 불필요한 문항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마.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 진단대상 23개 모두에 대하여 통계청 KOSIS에서 메타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지만, 조사표 제공, 원자료 제공 및 온라인 통계

다운로드 등에 있어서는 아직 개선될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1) 온라인 통계의 제공

온라인 통계를 KOSIS를 통해 완전히 제공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 KOSIS에서 링크를 통하여 해당 작성기관의 통계제공 사이트로 직접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통계들은 작성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데이터를 다운로드받을 수 없고 보고서만을 활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통계들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통계제공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창원시, 군산시, 전주시 등 3개 지자체 고용조사와 이공계인력국내외유입및유출실태조사 등 4종의 통계는 온라인에서 통계 다운로드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고서도 구하기 어려운 상태로 있다. 보고서가 존재하지만 작성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찾을 수 없는 이공계인력국내외유입및유출실태조사의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으로 보고서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 고용조사의 경우,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지역별고용조사와의 잠재적 불일치 문제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다 바람직한 해결방안은 이들 조사 사이의 조율 혹은 통합을 통하여 통계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비공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2) 원자료 제공

현재 진단대상 23개 통계 중 6개 통계에 대해서만 원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 원자료 제공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보보호 등 다양한 어려움이 따르지만, 정보보호를 위한 세심한 준비를 통하여 가급적 원자료 공개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3) 통계의 활용도 조사

마지막으로 조사된 통계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통계를 활용하여 사용된 논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된 통계를 논문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식 등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진단 대상 통계의 학술적 활용도를 자동적으로 집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바. 국제비교성 제고

현재 우리나라 고용통계는 OECD 및 ILO에서 제공하는 거의 대부분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비교성의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제비교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상용/임시근로자 구분에 있어 OECD의 정의에 맞는 임시근로자(temporary workers)에 대한 지표를 공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규모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항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제통계와 국내통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따라서 OECD에 제공되는 자료의 원천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때로는 OECD 통계와 국내 통계 수치 사이에 차이와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통계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고용분야 통계시스템 발전전략

가. 고용동향 통계에서 중복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및 기타 지자체 고용조사 간의 중복성

문제는 조사주기에 따른 시의성과 표본규모 및 조사항목 수에 따른 분석편의성 사이에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의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 여기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별고용조사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고용조사의 중복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

1) 지역별고용조사의 조사주기 확대 및 지자체 고용조사 폐지/변경

먼저 고용동향 자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지역별고용조사의 조사주기 확대를 통한 현행 지자체 고용조사의 폐지이다. 반기 단위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생산하는 군산시를 제외하고 여타 지자체 고용조사는 분기별 자료로서, 만약 지역별고용조사가 현행 반기에서 분기로 확대 조사된다면 자연스럽게 지자체 단위의 고용조사의 생산은 불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지자체 고용조사의 기능을 지역별고용조사가 흡수하되, 지자체 고용조사는 해당 지방의 특수한 고용 상황을 반영하는 더 구체적인 조사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지자체 수준의 조사를 폐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자체의 잠재적인 고용 조사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지자체 수준에서 부가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고용 조사 역량을 높이고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는 조사들을 오히려 통계청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의 전문성의 부족은 통계청이나 관계 기관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지역별고용조사 유지, 소지역추정법을 이용한 자치구 고용정보 생산

최근의 고용정책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단위의 범용한 고용정책보다 지역,

그것도 시군구 단위의 고용정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필요성은 일자리매칭이 지역단위에서 일어난다는 점에 기초하고 있으며 실제 2008년 이후 고용정책기본법이 지역단위의 고용정책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개정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정책 필요성에 대응하여 통계청에서는 2008년 이후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기본으로 하는 각종 고용동향 지표를 작성하고 있다. 지역별고용조사의 시행은 기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만으로는 지역단위의 주요 고용지표를 산출할 수 없다는 가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역단위 세분화된 통계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통계, 즉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한 소지역추정법(small area estimation)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소지역추정법은 세분화된 통계를 얻기 위해 조사를 확대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나 시간 측면의 비효율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조사와 행정통계 등 보조자료를 활용하여 일정 신뢰수준을 갖춘 통계를 생산하는 방법이다(김수택·고석남·김상대, 2008; 통계청, 2000, Statistics Canada, 1998)³⁵⁾.

소지역추정법은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나 지역별고용조사가 생산하지 못하는 광역시의 자치구에 대한 고용사정을 확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자국의 특수성을 반영한 소지역추정법을 개발하여 일부 적용되고 있다.

나. 인력수급통계에서 중복성 해결을 위한 방안

인력수급통계에서는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사이의 중복성 문제와, 현 진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와

35) 김수택·고석남·김상대(2008), 소지역 노동통계의 효율적 추정방안 실업률을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18(10), 53-76.

통계청(2000), 소지역 추정법 연구, 통계청 조사관리과
Statistics Canada(1998), Guide to the Labour Force Survey.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 및 방송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 사이의 중복성 문제가 존재한다.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사이의 문제는 2010년부터 지역별고용조사로 통합조사하는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중복성 문제 그 자체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별고용조사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사용하는 반면,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는 한국고용직업분류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고용직업분류가 인력수급에 있어 유사직종 인력공급풀에 대해 보다 편리한 지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과거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와의 연계성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두 직종분류 사이에 연계표를 작성, 보급하는 것이 연속성과 이용편의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직업별 인력수급 전망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상당 기간의 추세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의 두 조사를 통합한다고 해서 기존의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를 폐기할 수 없다. 인력수급 전망을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를 지역별고용조사로 무리 없이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와 방송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는 상당 부분 그 조사 목적과 조사항목에서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합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세 통계 사이의 중복성은 모두 작성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 힘들 수 있다. 또한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는 사업체 성격에서 부품업체 여부를 조사한다는 점, 그리고 산업기술인력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가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측면도 있으며, 이미 상당 기간 조사가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연속성의 문제도 발생한다. 따라서 산업기술인력수급동향실태조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정보를 살리는 방향에서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와 통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다. 고용통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안

개별 고용통계 조사 및 공표 상의 기술적 문제를 제외하고 본다면, 현재 고용통계의 신뢰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체감고용율과 실제 고용율 사이의 괴리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와 다양한 고용통계들 사이의 일관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고용통계의 신뢰성의 문제는 또한 통계 그 자체가 아니라 통계의 활용 방식으로부터 발생하기도 한다.

1) 체감고용율과 실제고용율 사이의 괴리

현재 통계청은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불완전취업자' 등 다양한 보조지표를 작성, 공표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조지표들에 대한 홍보 강화와 동시에 체계적인 종합지표를 구성하거나 혹은 여러 보조지표들과 공식 실업률 지표를 동시에 발표함으로써 통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여러 고용통계 사이의 일관성

우리나라 고용통계가 당면하고 있는 딜레마는 대표 고용통계인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사이에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일치의 문제이다. 비정규직 통계에 있어서도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부가조사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사이에 조사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괴리가 종종 이용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잠재적 비일관성의 문제는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공표하는 광역지자체 단위의 고용통계에 대해서는 지역별고용조사의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임시방편적인 해결책이며 향후 원자

료의 공개수준이 점차 확대되면 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충분한 홍보 및 설명과 함께 두 조사의 결과를 동시에 발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보다 장기적으로는 두 조사 사이의 일치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간 비정규직통계의 불일치 문제는 하나는 가구조사인 반면 다른 하나는 사업체조사인 만큼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두 통계를 함께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앞에서 지적하였듯 두 조사 모두에서 고용형태를 배타적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통계 활용에 있어서의 신뢰성 제고

언론이나 기타 사용자들이 고용통계를 오용하는 문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문제는 고용, 실업률, 비정규직 규모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한 통계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 정부기관들이 그때그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기준이 되는 통계를 바꾼다면, 스스로 고용통계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요 통계들에 대해서는 정부 자체의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용어통일성의 확보

제3장에서 살펴보았듯, 고용이나 취업 등에서 존재하는 용어 상의 문제는 조사방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반면, 종사상지위별 상용근로자/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의 구분과 고용형태별 정규직/비정규직의 분류가 몇몇 통계에서는 다르게 정의되거나 혹은 분류방식 자체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이들 통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규모와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지만, 정의의 차이에 의해 분석결과가 달라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이들 개별 통계의 용어 정의와 분류를 보다 엄밀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분류에 있어 많은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에 기초하고 있는 반면,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와 워크넷은 한국고용직업분류를 택하고 있다. 이들 두 분류 중 어느 하나가 반드시 더 우월하다고 정의할 수 없는 만큼, 두 분류 사이의 연계표를 제공하는 방식을 통하여 통계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³⁶⁾

3. 협력 및 통계관리방안

앞에서 논의되었던 고용통계시스템 개선 방안의 많은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는 통계작성기관들 사이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과적인 통계관리방안의 마련이 없이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통계가 정책의 수요에 적절하게 부응하기 위해서는 항시적인 통계수요 발굴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통계 간 유사·중복성의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작성기관들 사이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고용정책은 매우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되며, 그 결과 다양한 기관이 고용관련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차적으로는 통계간 유사·중복성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유사·중복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조사대상이 비슷한 통계들 사이에 조율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여성·가족관련 통계의 예에서 볼 수 있듯 통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36)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고용직업분류는 2007년 개정 당시 세분류(4-digit)수준에서 매칭되도록 조정되어 있다. 따라서 두 분류 사이의 연계표를 온라인 등을 통하여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두 분류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재하는 통계작성기관들 사이의 조정메커니즘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통계시스템은 분산형과 집중형의 혼합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의 문제는 국가통계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고용통계시스템의 협력 및 조정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존하는 전문가자문회의를 확대·보강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즉, 현재 통계청은 통계별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이러한 회의를 상설화하여 고용분야 내 소주제별로 상시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통계시스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소주제는 고용분야 진단대상 통계에만 한정한다면, 고용동향 및 구조, 인력수급, 이공계, 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기타 취약계층(고령, 외국인, 저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통계청, 관계작성기관의 통계전문가, 해당분야 학계 전문가 등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용분야 통계의 전반적인 설계, 새로운 수요에 따른 통계의 개발, 통계간 유사·중복성 조정, 중장기 과제발굴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상기와 같은 고용분야 통계 협력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데 있어 현존하는 국가통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국가통계위원회는 현재 정책분과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품질분과위원회, 지역분과위원회 등 5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용분야를 포함한 노동관련 통계는 주로 사회분과위원회에서 다루어진다. 국가통계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는 현재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후적인 심의를 통하여 통계 간 조정을 하고 있지만, 기획 및 실무 차원에서의 조정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서술된 협력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 국가통계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도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실무자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조정기구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는 향후 많은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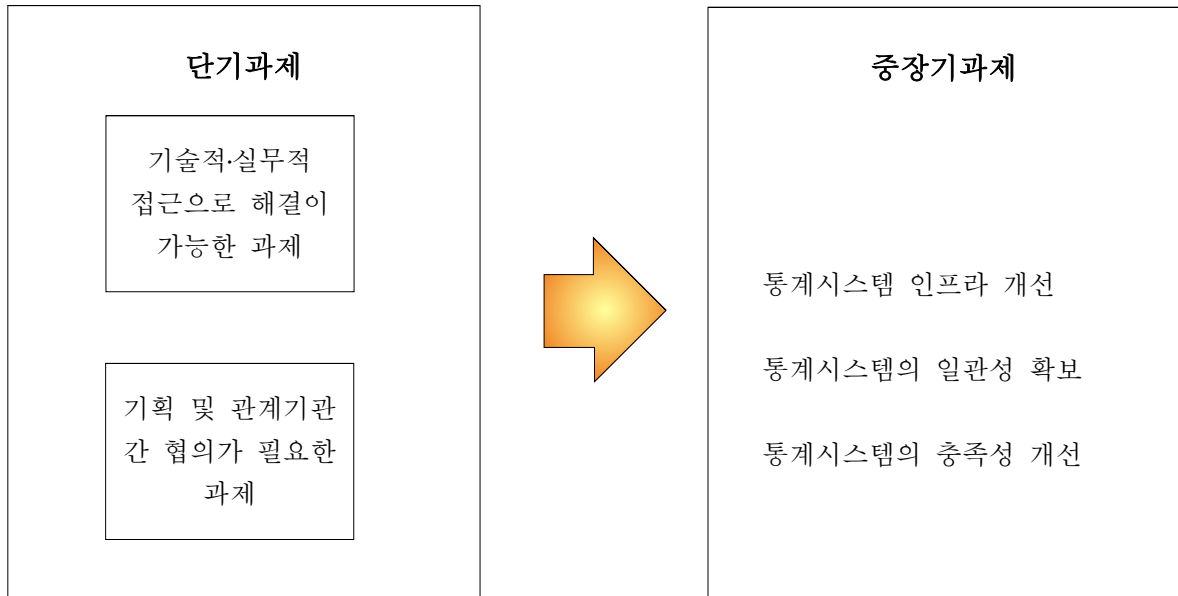
제 3 절 고용분야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

앞에서 제시되었던 고용분야 통계시스템의 개선 방안들을 종합하면, 일부는 즉시 실현가능한 과제들인 반면, 다른 과제들은 관계기관들 간의 협의, 제도 실행 상의 보완적 조치들의 마련, 사전 연구 및 검토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행할 수 밖에 없는 과제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 과제들에 대한 향후 로드맵을 구축하는 기본적인 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먼저, 단기과제들 중 현재 고용분야 통계시스템이 지닌 문제점들과 한계들 중에서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신규통계 수요 중 외국인근로자 고용실태나 고용서비스산업에 대한 통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통계청 내부에서 상당히 논의가 진전되어 왔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계 이용편의성에 있어 온라인 통계 제공의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혹은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OECD 통계와 비교가 가능한 임시근로자 지표를 제공한다든지, 혹은 공공부문 조사항목을 도입한다든지 하는 문제들은 기술적이고 실무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별 어려움 없이 개선될 수 있는 사항들로 보인다.

둘째, 단기과제에 포함되어 있지만, 어떤 과제들은 기획이나 관련 기관들 사이 조정 및 협의가 필요한 과제들도 있다. 예를 들어 신규통계를 도입함에 있어 여성-가족 관련 신규통계나 비임금근로자 관련 신규통계에 대해서는 기존 통계와의 연관성이나 필요한 조사항목 등과 관련하여 사전적인 합의의 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고용통계 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중복통계 폐지/변경과 관련된 과제들도 관계기관들 간의 협의와 조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4.1] 고용분야 통계시스템 로드맵의 작성



셋째, 중장기과제는 고용분야 통계시스템의 전체적인 체계를 보완하면서 동시에 개별 통계들 사이의 일관성 및 충족성을 강화시켜나가기 위한 과제들이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과제들은 기술적이고 사무적인 조치들을 넘어서 고용분야 통계의 지형도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 될 것이며, 따라서 고용 통계 전반을 포괄하는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통하여 실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통계작성에 있어서의 협력 및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제들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분야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4.6] 고용분야 통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

	단기과제		중장기과제
수요친화적 통계 구축	기술적 해결이 가능하거나 기획·협약이 진행 중인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통계의 도입 (외국인, 고용서비스산업) - 소지역 단위 통계 보강 - 새로운 지표 개발 - 온라인 통계 제공 범위 확대 - 경제활동인구조사 임시근로자 지표 제공, 공공부문 조사 항목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동인구조사와 행정자료의 연계 - 패널데이터 개선 - 원자료 제공 범위 확대 방안 마련
	기획·협약이 필요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통계의 도입 (여성, 비임금근로자) -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화 방안 마련 - 행정자료 활용확대 	
효율성/신뢰성 제고	기술적 해결이 가능하거나 기획·협약이 진행 중인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통계 사이 불일치 원인에 대한 홍보 강화 - 정부기관 통계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통계 간 용어의 통일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지역추정법을 이용한 자치구 고용정보 생산 - 고용통계 간 일치성 제고 위한 방안 마련
	기획·협약이 필요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고용조사 폐지/변경 - 방송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 중복성 검토 (사업체고용동향(특별)조사와 관련하여) 	
협력 및 통계관리	기획·협약이 필요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자문회의 확대·보강 및 상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권이 있는 상시적 고용통계 협의체 구성

부록 - 2010년 주제별 진단 기간 중 변경된 통계

1. 중지, 명칭 및 작성기관 변경, 진단대상 제외

통계명칭	내용
대구경북여성인적자원개발실태조사	2010.4.23일자 중지승인, 진단에서 제외
사업체고용동향조사	미공표 중인 통계로 진단 대상 통계에서 제외
방송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	“정보통신부문인력동향실태조사”로 통계 명칭 변경(2010.7.7일자)
한국노동패널조사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작성기관 변경(2010.7.6일자)

2. 조사기간 및 조사항목 변경

가. 여성관리자패널조사

변경일: 2010.7.16

구분	변경 전(2008)	변경 후(2010)	변경사유
조사기간	▪ 8~11월	▪ 8~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녀 관리자의 경력에 대한 종단적 비교를 통해 성별차이 가시화 다양한 근로형태의 도입여부와 성과분석, 중복성, 모호성 최소화를 위한 항목 수정
조사대상	▪ 남성관리자 - 일반표본	▪ 남성관리자 - 패널관리	
조사항목	▪ 남성관리자 조사표(1종)	▪ 남성관리자 조사표(2종) - 신규자, 근속자로 구분 ▪ 유연근무제 관련 문항 추가 등	
	▪ 여성관리자 조사표 -	▪ 여성관리자 조사표 - 유연근무제 관련 문항 추가 등(붙임 자료 참조)	

나. 여성과학기술인력활용실태조사

1) 조사기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 7~9월	◦ 6~8월	◦ 연도내 보고

2) 조사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 신규채용 교원의 성별, 계열별 평균 연봉금액	◦ 신규채용 교원의 성별, 계열별 평균 연봉 금액단위별 인원 수	◦ 연봉 절대금액산정의 어려움 반영, 대외비인 경우가 많아 조사표 회수율에 영향을 주고 있어 연봉 금액 단위별 인원수 문항으로 변경
◦ 신규채용 교원의 경력별 인원 수	◦ 신규채용 교원 중 '경력없음'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먼저 작성하고, 각 경력별 인원 수 작성	◦ 응답자의 편의를 고려, 경력자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경력이 있는자들에 대해 각 인원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구조 변경
-	◦ 이·퇴직자들의 이·퇴직 사유별, 성별 인원 수	◦ 성별에 따라 이·퇴직사유는 자의적인지 혹은 타의적인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퇴직 인원에 대하여 성별로 전직, 정년, 계약만료, 기타 등 각 이·퇴직사유별 해당 인원수 조사
-	◦ 전임교수의 논문수 현황	◦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지표 확대. 논문 총수를 성별로 비교하고, 논문의 게재 종류에 따른 인원수를 파악하여 여성 과학기술인의 연구의 양과 질 파악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 (1,000인 이상/미만)에 따른 민간기업연구기관 유형 구분	◦ 민간기업연구기관 유형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	◦ '중소기업'여부에 따라 정부지원시책 및 각종 세제혜택에 대한 차이가 있어 R&D지원 및 연구환경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구분 필요
◦ 기술직(연구보조자 포함)	◦ 기술직(기술원)	◦ 민간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반영하여 '기술원'이라는 단어 포함
◦ (과제구분) - 기관 고유과제, 수탁과제	◦ (과제구분) - 기관 자체과제, 수탁/위탁/공동/기타과제	◦ 민간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 반영. 민간기업의 경우 수탁받는 과제 뿐만 아니라 위탁이나 공동과제 등 다양한 형태의 과제유형이 있어 혼돈이 없도록 모든 용어 포함
-	◦ (공공연구기관)연구개발인력의 논문수 현황 ◦ (민간기업연구기관)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	◦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지표 확대. 논문 총수를 성별로 비교하고, 논문의 게재 종류에 따른 인원수를 파악하여 여성 과학기술인의 연구의 양과 질 파악. 민간기업연구기관의 특허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기술개발 활동 등 조사

다. 지역별 고용조사

1) 조사시기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 10월	◦ 9월	◦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실시 등으로 변경

2) 조사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	현 직업 총근무년 수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통합 실시에 따른 항목 추가
[교육정도] ▪고등학교 계열 : 3개 ▪전문대 이상	▪고등학교 계열 : 6개 ▪전공학과 추가	산업직업별고용구조조사 통합 실시에 따른 항목 보완
[희망직업] ▪5개 분류	▪10개 분류(대분류 기준)	
[고용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1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1년 미만	

참고문헌

-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2007, 『강원도 취업여성실태조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2009년 이공계 유출입 수지와 실태』,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09, 『2008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 보고서』
- 김대일·남재량·류근관(2000). 「한국노동패널 표본의 대표성과 패널조사 표본 이탈자의 특성 연구」, □□노동경제논집□□, 3.
- 김성중·성제환, 2005, 『한국의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김수곤·이주호, 1989, 「인력개발과 고용정책」, 『노동경제 40년사』, 한국경영자총협회.
- 김수택·고석남·김상대, 2008, 소지역 노동통계의 효율적 추정방안 실업률을 중심으로, 산업관계연구, 18(10), 53-76.
- 김준영, 2009, 고용보험DB를 이용한 신규 노동시장 지표 개발 및 활용, 한국고용정보원
- 남재량, 2007, 고용통계의 발전방안과 노동패널의 역할. 『노동리뷰』, 33호, 한국노동연구원.
- 류제복·유정빈·김선웅, 2003, 『통계품질평가지표 개발: 통계작성절차를 중심으로』, 연구수행기관: 한국조사연구학회, 통계청 학술연구용역.
-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2009, 『2009 방송통신부문 인력동향 보고서』
- 배무기, 1981, 『노동경제학』, 경문사.
- 심상완·정성기, 2007, 지역노동시장정보의 빈곤 극복을 위하여, 구·시·군 고용통계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7(4), 한국노동연구원.
- 어수봉, 2007, 고용서비스 선진화 - 민간 고용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발표문, 2009.3.11.

이지연·김진, 2006, 횡단조사자료 종단화의 가치와 한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도시가계조사, 『한국인구학』 29(3).

정진호·남재량, 2003, 가구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매월노동동향』 5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남재량, 2003, 노동통계 개선방안, 『매월노동동향』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남재량, 2003, 사업체조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매월노동동향』 6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 외, 2003, 『노동통계 개선방안: 고용과 임금』, 한국노동연구원.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0, 『2009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보고서』

최저임금위원회, 2008,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분석보고서』

통계청(2000), 소지역 추정법 연구, 통계청 조사관리과

통계청, 2009, 『인구분야 2009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통계청, 2010, 『주제별 통계품질관리 이렇게 합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2009 이공계인력 육성·활용과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교육과학기술부.

ILO, 1982, Resolu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Employment,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Adopted by the Thir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r Statisticians.

ILO, 1987, Resolution Concerning the Revision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Adopted by the Four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r Statisticians.

ILO, 1993a, Resolu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ICSE), Adopted by the Fif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r Statisticians.

ILO, 1993b, Resolution Concerning Statistics of Employment in the Informal Sector, Adopted by the Fif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r Statisticians.

ILO, 1998, Resolution Concerning the Measurement of Underemployment and Inadequate Employment Situation, Adopted by the Six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r Statisticians.

ILO, 1998, Resolution Concerning the Measurement of Underemployment and Inadequate Employment Situation, Adopted by the Six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r Statisticians.

Menard, Scott(1991), Longitudinal Research, Sage Publications

OECD, 2003, Quality Framework and Guidelines for OECD Statistical Activities, STD/QFS(2003)1.

Stamas, Goldenberg, Levin, and Cantor(1997), Sampling for Employment at New Establishments in a Monthly Business Survey, Proceedings of the Section on Survey Research Methods,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Statistics Canada(1998), Guide to the Labour Force Survey.